

최 종
연구보고서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New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 of TRQ
System in Kore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경상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농 림 부

제 출 문

농림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4년 7월 일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총괄연구책임자 : 서진교

연 구 원 : 김상현

연 구 원 : 임소영

연 구 원 보조원 : 남숙경

협동연구기관명 : 경상대학교

협동연구책임자 : 임정빈

연 구 원 : 김성용

연 구 원 보조원 : 김두나

요약문

I. 제목

TRQ 관리제도의 효율적 개선 방안

II. 연구개발 목표 및 중요성

우리나라의 TRQ 관리제도는 UR 농업협정문의 이행과정에서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한 생산자 피해의 최소화 및 저율관세 수입에 따른 수입차액환수 차원에서 운용되어 왔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농산물 관세체계의 문제로 인해 TRQ 대상품목과 유사 및 대체, 또는 가공품이 이미 낮은 세율로 개방되어 있어 TRQ 관리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경우가 있어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1996년 이후 각국의 UR 협상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국제논의과정에서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TRQ 관리방식과 쿼터 미소진의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TRQ 관리의 한 방식인 현행 수입권 공매제도가 WTO규정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이들 국가는 농협, 제주감협, 산림조합 등 소위 생산자단체로 볼 수 있는 기관에 TRQ 수입독점권을 주는 것은 UR 농업협정의 이행약속상 양허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 제도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 2001년 출범한 DDA에서도 TRQ 관리방식과 관련하여 TRQ 물량이 미소진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권의 주체 및 관리 방식에 대하여 UR 경우 보다 대폭 강화된 규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논의 추세는 DDA 최종 합의문에 상당 부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향후 예상되는 DDA 농업협상의 결과 및 관련 WTO규정과 일치하고 국내 수급 및 수입차익 환수차원과 제도자체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우리나라 TRQ 관리제도의 새로운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뜻 깊은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III.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DDA 농업협상의 결과와 일치하고 국내 수급관리 및 수입차익 환수차원과 TRQ 관리제도 자체의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현행 우리나라 TRQ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을 수립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주요한 연구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적인 TRQ 관리실태의 파악 및 시사점 도출, 둘째, DDA 농업협상에서 TRQ 관리에 대해서 논의되고 있는 현황과 관련 쟁점 그리고 향후 타결 방향, 셋째, TRQ 관리와 관련된 WTO 관련 규정의 분석과 시사점 도출, 넷째 우리나라 TRQ 관리실태 및 문제점 도출, 다섯째, 주요 TRQ관리방식의 비교 및 경제적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TRQ 관리제도의 개선방향 제시 등이다.

IV.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전의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TRQ관리와 관련하여 WTO규정에 일치하면서 국내수급관리 및 수입차익의 환수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TRQ 관리방식을 수립 제시하는 것이고, 따라서 연구 결과는 향후 전개될 WTO 규정과 일치하는 국내 TRQ 관리제도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TRQ 물량의 급증으로 초래될 수 있는 국내시장의 무질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내수급안정은 물론 생산자 보호측면에서도 궁정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미소진 쿼터에 대한 운용방안을 통해 수입차익의 환수문제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농업부문으로의 재투자 재원마련을 제공하고, 현행 TRQ제도의 예상 가능한 비효율성 문제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국민경제 전체 차원에서도 TRQ 관리제도의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SUMMARY

The TRQ system emerged in the proc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URAA as a new policy mechanism. In Korea, most of the domestically sensitive products are currently subject to the TRQ administration, particularly such as a state trading or au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issues related to administering the TRQs, including economic analysis of various TRQ systems which are notified to and classified by the WTO and to propose the new directions for the improvements of TRQ system in the view point of Korea's perspectives.

For the study of the market access administrative methods, this study employs available data and background papers published by WTO Secretariats and member countries's notifications in the field of market access. In addition, the literatures on tariff quotas which are primarily provided international symposium and international agencies such as USDA and OECD are used to perform the economic analysis of TRQ system. In particular, economic theories and empirical results related to auction are utilized for the study.

The study is constituted from as following. The previous literature review is accomplished in Chapter 2. In Chapter 3, the basic concept of TRQs is examined and current international situation of TRQ systems is reviewed and compared by administration methods and fill-rates, as well as countries. Some discussion at the agricultural negotiation in DDA is added and analyzed in terms of future direction of agreements.

In Chapter 4, current TRQ system in Korea is reviewed and the basic economics of TRQs is discussed along with a summary of inefficiencies that can be generated from alternative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in Chapter 5. Chapter 6 provides a new direction for the efficient TRQ system in Korea's perspectives.

Taking into account of efficient direction of import administration and judging better tariff quota administration, the important criteria are both efficiency and equity. Market oriented method such as an auction is the better method rather than discretionary methods such as state trading in terms of efficiency. The choice of administrative method on TRQs should b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a commodity such as domestic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homogeneity between local goods and imported goods, the number of importing and exporting agencies, and the possibility of trade debate with interesting parties.

In the case of a rice, if the private imports is allowed, a double auction which is similar to current Japanese TRQ system in administrating a rice imports, is one of best mechanism in Korea, considering a stable rice market as well as efficient rent-seeking of the Korean government, including the conformity of WTO regulations. In the case of soy-beans and corn, which almost of all domestic demand in Korea is met from abroad, the current method is appropriate but is properly adjusted to reflect a better fair competition in domestic markets.

CONTENTS

Chapter 1. Introduction	12
1. Backgrounds of the study	12
2. Objectives of the study	14
3. Substance and methodology of the study	14
4. Literature Review	15
Chapter 2. The Concept of TRQ and the WTO	17
1. The Concepts of TRQ	17
2. TRQ Administration and the WTO	23
Chapter 3. International TRQ systems and the DDA	32
1. Current Situation of International TRQ system	32
2. Comparison of International TRQ system	35
3. Issues related with TRQ administration in DDA	47
Chapter 4. Status and Problems of TRQ system in Korea	57
1. Introduction	57
2. Current Situations	62
3. Issues and Problems	69
Chapter 5. Economic Analysis of TRQ Administration	74
1. Price Stabilization and TRQ	74
2. Tariff Reduction and TRQ	79
3. Economic efficiency and TRQ	81

Chapter 6. Directions of Improvements for TRQ systems	89
1. Introduction	89
2. Common Directions	89
3. Directions of Improvements for Major TRQ products	93
References	105
Appendix 1	112
Appendix 2	116
Appendix 3	123
Appendix 4	126
Appendix 5	131
Appendix 6	135
Appendix 7	144

목 차

제1장 서 론	12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2
제2절 연구목적	14
제3절 연구내용과 방법	14
제4절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15
제2장 TRQ 개념 및 WTO 조항	17
제1절 TRQ의 개념	17
제2절 TRQ의 관리와 WTO 조항	23
제3장 TRQ 관리의 국제실태와 DDA 농업협상에서의 논의	32
제1절 TRQ 관리방식별 특징	32
제2절 TRQ 관리의 국제 실태	35
제3절 DDA 농업협상에서의 논의 동향	47
제4장 우리나라의 TRQ 관리제도 현황과 문제점	57
제1절 TRQ 품목 현황 및 수입관리방식	57
제2절 TRQ 수입관리 현황 및 실적	62
제3절 우리나라 TRQ 관리의 문제점	69
제5장 TRQ 관리와 정책 목표	74
제1절 TRQ 관리와 국내가격의 안정성	74
제2절 TRQ 확대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와 수입차익 변화	79
제3절 TRQ 관리의 경제적 효율성	81

제6장 TRQ 관리제도의 개선방향	89
제1절 기본전제	89
제2절 공통의 개선 방향	89
제3절 TRQ 관리의 개선방향	93
 참 고 문 헌	 105
 부록 1. TRQ관련 GATT 13조 및 17조	112
부록 2. WTO 농업협상에서 관세할당제(TRQ)에 대한 주요국 제안	116
부록 3. 하빈슨초안에서의 TRQ관리 관련 주요 내용	123
부록 4. 경매제도에 대한 WTO 사무국 배경문서	126
부록 5. 공개 상향식 경매제도와 이중경매제도의 효율성	131
부록 6. 일본의 동시매매입찰방식(SBS) 운용 사례	135
부록 7. 우리나라의 TRQ품목 수입현황	144

표 목 차

표 3-1.	WTO에 통보된 TRQ 관리방식	36
표 3-2	주요국의 TRQ 관리방식과 해당 품목 수(2001년)	38
표 3-3	TRQ 관리방식별 TRQ 소진율	40
표 3-4	국별/TRQ 관리방식별 TRQ 소진율	42
표 3-5	주요 품목별 TRQ 관리방식	43
표 3-6	주요 품목별 TRQ 소진율	44
표 3-7	TRQ내 수입을 위한 주요 부가조건의 유형	45
표 3-8	국별 TRQ수입에 따른 부가조건 현황 (2000년)	46
표 3-9	TRQ관련 주요국의 기본 입장	50
표 4-1	우리나라의 TRQ 관리대상 품목	57
표 4-2	우리나라의 TRQ 관리방식	59
표 4-3	TRQ 관리방식별 소진율((2002/2003년)	63
표 4-4	고추의 수입이행실적	64
표 4-5	마늘의 수입이행실적	65
표 4-6	양파의 수입이행실적	66
표 4-7	참깨의 수입이행실적	67
표 4-8	수입관리방식별 수입이익금 징수내역(2002년)	68
표 6-1	수입관리방식별 효율성 비교	91
표 6-2	TRQ 관리의 필요성이 의문시되는 품목	93
표 6-3	TRQ 관리를 보다 시장지향적 방식으로 고려해야 품목	95
표 6-4	품목별 대체.유사품목간 관세(상당치) 비교	97
표 6-5	참깨의 수입이행실적	100
표 6-6	쌀의 Mark-up 시산	103

그 림 목 차

그림 2-1	TRQ와 수입수요	18
그림 2-2	TRQ제도와 TRQ 수입이행율	20
그림 2-3	TRQ의 경제적 후생 분석	22
그림 2-4	TRQ제도와 무역의 배분	27
그림 3-1.	TRQ 관리방식 변화 추이(1995~2001년)	37
그림 4-1	수입권 공매절차	61
그림 5-1	TRQ제도와 국내가격의 관계: 수입수요의 변동	75
그림 5-2	TRQ제도와 국내가격의 관계: 수출공급의 증가	76
그림 5-3	TRQ제도와 국내가격의 관계: 수출공급의 증감	78
그림 5-4	시장접근물량 확대의 효과	79
그림 5-5	시장접근물량 확대의 효과	80
그림 5-6	가치 1인 재화의 수요와 공급	83
그림 5-7	이중경매제의 평균 효율성	87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농산물 TRQ(Tariff Rate Quota)제도는 지난 1994년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상의 결과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신설·운영되어 왔다. UR 농업협상 결과 포괄적 관세화(comprehensive tariffification)가 시장 개방의 기본 원칙으로 채택되면서 그 동안 수입을 제한해 왔던 품목들은 관세화로 전환되었다. 동시에 기준기간(1986~88년) 동안의 수입실적에 기초하여 ‘현행시장접근(CMA: Current Market Access)’과 ‘최소시장접근(MMA: Minimum Market Access)’이 설정되었으며¹, 이를 통하여 수출국들은 수입국 국내시장에 접근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TRQ내 수입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높은 관세(상당치)(TE: Tariff Equivalents)가 아니라 당시 실제 적용되는 실행관세 중심의 낮은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TRQ내 수입으로 인하여 단위 물량당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차이만큼의 수입차액(mark-up)이 발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의 귀속 문제가 대두된다. 아울러 TRQ물량의 국내 유입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국내 유통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TRQ내 수입권을 가지고 있는 수입업체가 국내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의 초과이윤을 일정 부분 줄이고 저가 물량공세를 취할 경우 시장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994년 TRQ 설정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UR 농업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TRQ 관리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였다. 현재 TRQ 대상 품목은 실품목 기준으로 63개 품목(군)(HS 10단위로는 190개)이며, 쌀, 보리, 감자, 고추, 마늘, 양파, 오렌지, 인삼, 분유, 연유 등 주요 농축산물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TRQ품목에 대한 수입추천 및 수입이익금 징수의 법률적 근거는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안법 등 6개의 개별 법률이며, 이에 따르면 TRQ의 구체적인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에게 위임토록 되어 있다.

¹ 기준기간(1986~88년 평균) 실제수입이 같은 기간 국내소비량의 3%를 초과한 품목의 경우 현재의 수입수준을 현행시장접근(CMA)으로 설정하였고, 3% 이하 품목에 대해서는 3%를 최소시장접근(MMA)으로 설정하고 이행 기간에 이를 5%까지 확대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TRQ 관리제도는 전반적으로 UR 농업협정의 이행에 따라 예상되는 생산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TRQ내 수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차액을 농업부문 투자재원으로의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운용되어 왔다고 평가되며, 나름대로의 일정한 성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울러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먼저 TRQ 관리대상 품목과 직·간접으로 대체되는 혼합품, 대체품, 1차 가공품 등이 이미 낮은 세율로 개방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동안 수입실적이 전무하여 TRQ 관리의 실질적 의미가 없는 품목이 존재한다. 이 경우 TRQ 관리의 필요성 자체가 의문시되며, 국민경제 전체측면에서 소비자 후생과 경제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도 있다.

시장진입에 대한 장애문제도 있다. TRQ내 수입에 대한 수입추천권은 주로 기존 기득권자인 관련 농어업단체나 협회 중심으로 배정·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장 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거나 시장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수입추천권을 가진 단체나 협회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의 소지도 TRQ 제도 개선시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현행 TRQ관리제도는 WTO의 관련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국내산 사용 규정’이라든지 혹은 최종소비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WTO의 공정 무역거래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며, 특히 생산자단체나 국영무역에 의한 관리는 상업적 고려를 배제할 가능성이 높아 WTO 규정위반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경험적으로도 1996년 이후 WTO주관 아래 진행되어온 UR 협상결과의 이행상황 점검과정에서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TRQ 관리방식과 TRQ 미소진의 문제를 강력히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미국, 호주, EU 등은 우리나라가 농협, 제주감귤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소위 생산자 단체로 볼 수 있는 기관에 TRQ 수입허가권을 주는 행위에 대하여 이행계획서상의 양허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TRQ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 농업협상에서도 그대로 지속되고 있어 향후 DDA 농업협상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TRQ 관리제도의 상당한 개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농산물 수출국들은 우리나라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수입권 공매제도가 관세이외의 추가적인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WTO 규정에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²

2 1994 GATT 2조 1항은 관세양허품목에 부과되는 ”그 밖의 관세 혹은 과징금(other duties or charges)“의 성격과 수준을 1994 양허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진행중인 DDA 농업협상에서도 TRQ 관리방법의 개선과 관련하여 설정된 TRQ 물량이 미소진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권의 주체 및 관리방법에 대하여 UR 보다도 대폭 강화된 규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향후 이러한 논의 결과는 DDA의 최종 합의문에 상당 부분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미소진 TRQ 발생시 일정기간 이내에 이를 자동적으로 재배분하는 방안이라든지, TRQ 이행률을 낮추는 다양한 직·간접 제약요인(예: 국내산 구매조건, 재수출조건, 최종소비용 판매 불가 등)을 철폐하고, TRQ 관리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 투명성 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TRQ 관리제도가 개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TRQ 관리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DDA 농업협상 최종결과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예상되는 DDA 농업협상의 결과에 합치하고 동시에 그 동안 나타난 TRQ 관리상의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내 수급 및 시장 안정, 제도자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존 TRQ 관리제도의 종합적인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특히 현재 진행중인 쌀 협상과 관련하여 그 동안 국영무역형태로 관리되어온 MMA 쌀의 일정 부분이 민간 수입의 형태로 전환될 경우 이에 대한 관리방식에 대한 제안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2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DDA 농업협상의 결과와 일치하고 국내 수급관리 및 수입차의 환수차원과 TRQ제도의 경제적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현행 우리나라 TRQ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제시하는데 있다.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 품목은 쌀을 중심으로 가능할 경우 주요 TRQ 대상품목을 포함하며,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TRQ 관리방식에 대한 국제적인 비교 분석이다. WTO에 통보된 국가별 TRQ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TRQ 관리의 국제적인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우리의 개선방향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어떠한 국가들이 어떠한 품목을 TRQ대상품목으로 선정하고, 어떠

한 관리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리방식별로 실제 TRQ 수입 이행률을 비교 검토 하는 데서 우리나라 TRQ 관리제도 개선방향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두 번째는 DDA 농업협상에서의 TRQ 관련 논의 현황과 그 타결방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제기된 쟁점에 대한 분석과 주요국의 입장을 평가하여 향후 타결방향을 전망 한다. 물론 현재 DDA 농업협상의 진척 속도가 매우 느려 타결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TRQ 관리제도 운영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는 것으로 TRQ 대상품목의 확인부터 그 관리방법 및 실태, 수입차익의 환수실적 및 문제점 등이 주요 분석대상이다.

네 번째는 WTO에 통보된 다양한 TRQ 관리방식별 경제적 특징과 합축성을 분석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TRQ 관리제도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위에서 제시된 연구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간된 TRQ 관련 문헌 및 통계자료를 검토 분석하였다. 미국 농무성(USDA)과 OECD, WTO 등에서 발간된 TRQ자료를 중심으로 주요 국가의 TRQ 품목을 확인하고 관련 제도의 운용 및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쌀의 MMA 관리를 위해 경매제도를 중심으로 한 경제 이론 및 TRQ 이행률 관련 WTO 자료의 실증 분석을 검했다.

한편 WTO 규정의 해석과 판례분석을 통한 시사점을 얻고자 했으며, 우리나라의 TRQ 관리 대상 품목의 확인과 실제 관리실태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하여 실제 수입담당 기관인 농수산물 유통공사의 기초 자료 협조 및 현지방문 조사를 병행하였다.

제4절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TRQ 관리제도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영무역기업이 갖고 있는 수입제한 효과 및 수입차익(mark-up)의 분배 문제에 집중되어 왔으며, 구체적인 품목을 들어 실제 해당품목의 소비 특성이나 국내 수급조건을 고려하여 수입국의 입장에서의 이루어진 실증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대표적인 국내 연구로는 UR 농업협상의 타결이후 수입관리제도의 개선의 일환으로 TRQ운용 및 관리방안을 연구한 이재옥외(1994, 1997)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수입차익의 환수나 국내수

급관리에 중점을 둔 연구로서 UR 결과에 따라 국제적인 TRQ 운용현황 및 그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등 국제적 TRQ 관리의 비교 분석은 연구시점이 다르고 이에 따른 자료의 제약 때문에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TRQ 관리 및 실제 운용상 드러난 문제점의 국제간 비교를 통해 TRQ관리의 정책적 함축성을 제시한 국내연구 결과로는 임정빈외(2000)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다만 연구가 이루어진 시기상 최근 DDA 농업협상에서의 논의 핵심인 미소진 TRQ 발생에 따른 민간부문으로의 자동적 수입권 할당이나 공매제도의 논의 등을 적절히 분석되지 못한 미흡한 점이 있다.

외국의 연구는 주로 이론적인 연구에 치중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행 WTO에 규정되어 있는 TRQ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것이 현행 DDA 논의의 이론적 기초가 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대표적인 연구는 『국제 농산물 무역 연구 협의체(IATRC: 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Research Consortium)』에의 한 결과이다. IATRC(2001)은 TRQ제도의 경제 분석과 함께 TRQ관련 GATT규정분석 및 주요 선진국의 TRQ제도를 분석하고 있다.

개별 연구로는 Abbott와 Morse(2000), Abbot와 Paarlberg(1998) 및 Skully(1999, 2001)이 대표적이다. Abbott와 Morse는 14개 개도국을 중심으로 TRQ 관리와 이행을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현행 UR 농업협정문 아래서 TRQ 관리규정이 TRQ 미소진과 수출 공급국가간의 차별성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Abbot와 Paarlberg는 TRQ제도가 갖는 가격불안정 효과가 일반 관세제도나 또는 쿼터제도아래서 보다 훨씬 복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kully는 TRQ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후생효과를 자세히 분석하여 향후 DDA에서 논의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기타 EU와 캐나다 등 선진국의 TRQ제도를 검토 분석한 연구가 있다(Bureau와 Tangermann(2000), Barichello(2000))

이 연구의 목적인 TRQ 관리제도의 개선방향 모색은 기본적으로 WTO 관련 규정과 최근 DDA에서의 규제 방향 등과 같은 새로운 외부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더하여 국내 수급관리의 정책적 필요성 및 수입차익의 환수 등과 같은 내적인 요구도 감안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는 TRQ 관리품목의 국내 수급상황과 관리에 있어서 정보의 소유자(수입주관기관)와 미소유자(수출국/수출업체/수입업체) 또는 정보획득의 시간상의 차이를 활용할 경우 수입국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TRQ 관리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어,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2장 TRQ 개념 및 WTO 규정

이 장에서는 TRQ제도가 무엇이며, 실제 국제무역 이론상 어떠한 경제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 등 TRQ의 기본 개념을 알아보고 GATT 및 WTO 관련 조항을 검토한다.

제1절 TRQ의 개념³

1. TRQ의 경제적 개념

TRQ제도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이다. 어떤 품목의 수입이 설정된 쿼터물량(이것을 TRQ 물량이라고 한다)이내일 경우 낮은 쿼터내세율(in-quota tariff)이 적용되고 그를 초과한 수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쿼터밖세율(out-quota tariff 또는 over-quota tariff)이 적용되는 이중 관세구조가 TRQ제도이다.

TRQ제도는 일반 쿼터제도(수량제한제도)에 비해 보다 무역자유화를 지향하고 있는 제도이다. 일반 쿼터제도 아래서는 설정된 쿼터를 초과한 수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TRQ 제도 아래서는 설정된 쿼터를 초과한 수입에 비록 높은 쿼터밖세율이 적용되기는 하지만 수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차이로 해서 TRQ제도는 이론상 일반 쿼터제도보다 무역 제한 효과가 적은 제도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쿼터밖세율이 매우 높아 사실상 정상적인 시장 조건 아래서 수입이 불가능하다면, TRQ제도는 사실상 수량을 제한하는 일반 쿼터제도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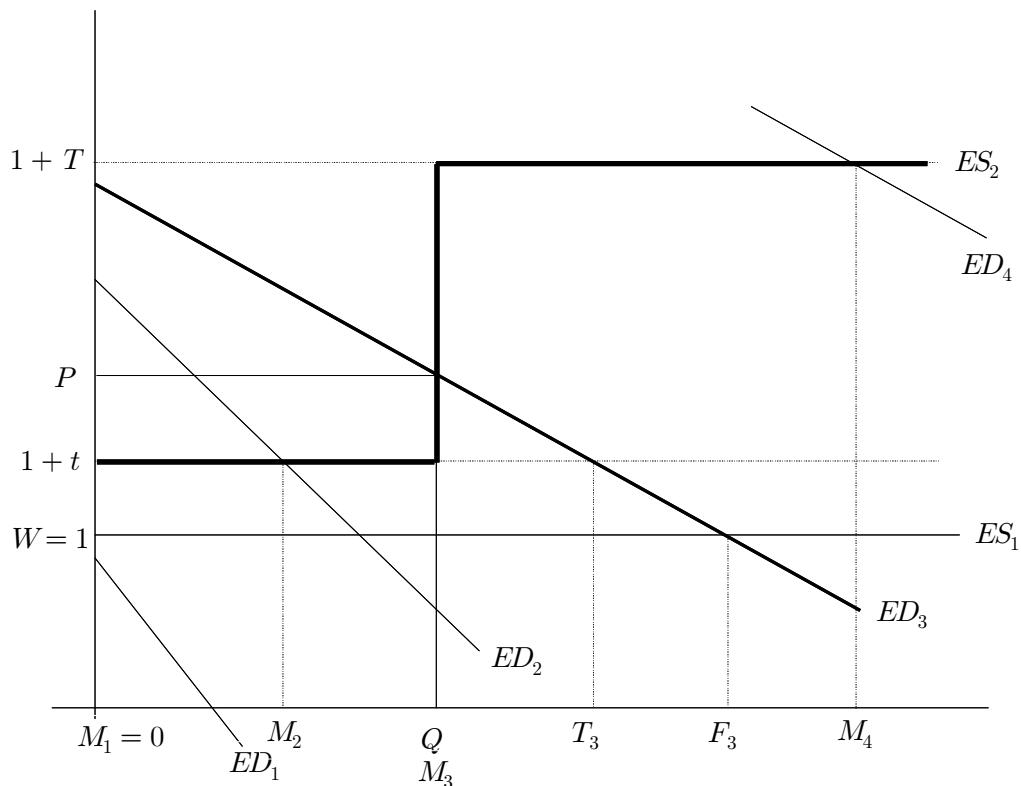
<그림 2-1>은 TRQ제도가 수입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수입국이 소규모 개방경제임을 가정했기 때문에 수입국의 입장에서 본 수출공급곡선은 두개의 수평선이 된다.⁴ 세계시장가격을 $W (=1)$ 라고 할 때 설정된 TRQ물량($=Q$)까지는 쿼터내세율($=t$)이 적용되고, 그 이상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보다 높은 세율인 쿼터

3 이 부분은 Skully (2001)을 주로 인용하였다.

4 국제시장이 경쟁적이고 TRQ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수입국이 소규모 국가(small country)라고 가정할 경우 수입국의 수입량 변화가 국제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수출공급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밖세율($=T$)이 부과된다. 이 때 하단에 있는 수평선(ES_1)은 완전한 자유무역시(관세=0) 해당 품목의 수출공급곡선을 의미하며, 상단의 수평선(ES_2)은 수입량이 TRQ 률량을 초과하여 쿼터밖에 고율관세(T)가 부과되는 경우 초과공급곡선이다. 수입량이 설정된 TRQ 률량과 동일한 $Q (= M_3)$ 일 경우 수출공급곡선은 수직선이 된다.

그림 2-1 TRQ와 수입수요



TRQ제도가 무역(수입)에 미치는 효과는 수입국의 수입수요(ED)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수입수요곡선이 ED_1 일 경우, 주어진 세계시장가격 아래서는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M_1=0$). 해당 품목의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낮은 경우(혹은 국내외 가격차가 미미한 상태에서 국내 공급이 국내수요에 충분한 경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국내외 가격차가 존재하고 수입수요곡선이 국제가격에 쿼터내세율 부과시의 수출공급곡선상에 위치하는 경우(수입수요곡선= ED_2) 수입량은 설정된 TRQ량보다 적어지고($0 < M_2 < Q$) 해당 수입량 전체에 쿼터내세율이 적용된다. 이 때 TRQ제도는 사실상 낮은 관세만 존재하는 단일의 관세제도와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된다. 국내가격은 세계시장가격에 쿼터내관세를 더한 수준($=1 + t$)이 되며, 관세수입이와 TRQ제도의 운영에 따른 수입차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수입수요곡선이 두 개의 수출공급곡선, ES_1 과 ES_2 사이에 위치할 경우 수입량은 설정된 TRQ물량($M_3 = Q$)과 정확히 일치한다(수입수요곡선= ED_3). 이 때 TRQ제도는 무역제한효과를 갖는다. TRQ제도 아래서의 수입량은 설정된 Q 이지만 일반관세제도 아래서 수입량은 그보다 많은 T_3 가 된다.(물론 관세마저 없는 자유무역시 수입량은 F_3 가 된다)

수입차익은 관세만을 부과할 경우의 수입수요에 비해 적은 양이 수입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며, 해당품목의 수입기회와 수입량의 국내판매에 대한 분배 문제를 초래한다. 낮은 쿼터내세율이 적용되는 TRQ물량의 수입권을 조건없이 배분할 경우 수입권을 보유한 기업은 단위 수입물량당 $R = P - (1 + t)$ 만큼의 위험이 없는 수입차익(Quota Rent)을 갖는 혜택을 누린다. 국내가격은 P 에서 결정되며, 설정된 TRQ를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인 쿼터밖관세가 부과되고 그 수준은 국내가격보다 높기 때문에($1 + T > P$) 이러한 상황에서 쿼터밖관세는 수입금지적 관세로 작용하게 된다.

자유무역시를 포함해서 수입량을 비교해 보면 자유무역시 수입량은 F_3 가 되고, 관세만 부과되는 관세제도 아래서 수입량은 T_3 , 그리고 TRQ제도 아래서는 M_3 가 된다. 따라서 TRQ제도는 T_3 (또는 F_3)의 수입수요를 놓고 이보다 적은 M_3 가 수입되어 차별화되며, 이것이 TRQ제도의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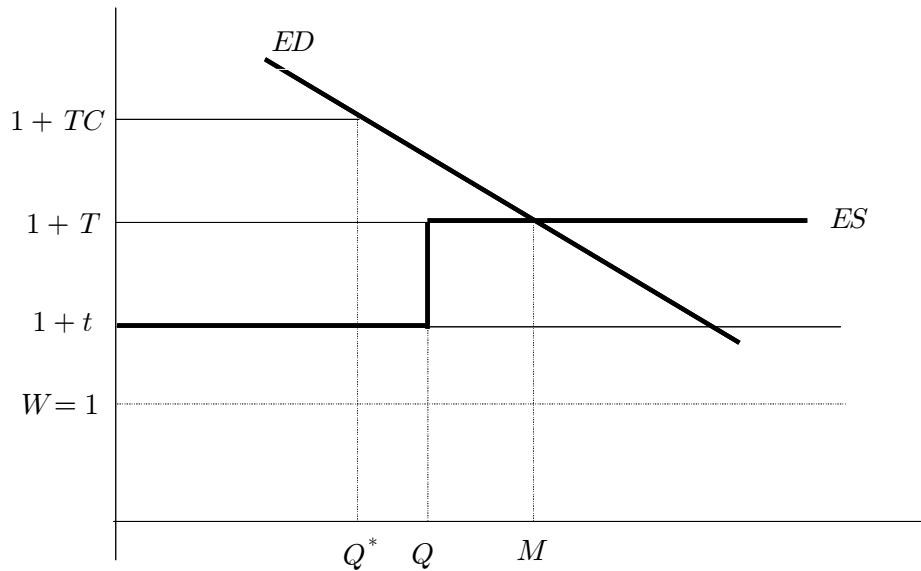
한편 수입수요가 매우 커 수입수요곡선이 설정된 TRQ를 초과하여 상단의 수출공급곡선(ES_4)상에 위치할 경우(수입수요곡선= ED_4) 수입량은 TRQ를 초과한 M_4 가 되며, 해당 품목의 국내가격은 세계시장가격에 쿼터밖관세를 더한 $(1 + T)$ 가 되고, TRQ물량에 대한 단위 수입물량당 수입차액은 $R (=T - t)$ 가 된다.

그러나 TRQ제도 아래서 실제 수입은 위에서 언급된 이론적 수입과는 달리 TRQ내 수입에 따른 다양한 부가조건으로 인해 국내외 가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종 설정된 TRQ물량 가운데 일부만이 수입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TRQ 물량의 수입에 부가적인 행정요건이 요구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TRQ내 물량에 대한 수입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부가적인 행정 요건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한다면(또는 거래 자체의 불확실성과 잠재적 위험을 고려한 거래비용이 발생한다면) 비록 TRQ내 수입에 낮은 쿼터내관세가 부과된다고 해도 TRQ제도 운용에 따른 실제 수입은 설정된 TRQ 물량보다 작아질 수 있다.

<그림 2-2>에서 쿼터내세율을 적용한 수입가격이 $(1 + t)$ 이고 수입수요가 충분하여 국내가격은 이 보다 높은 $(1 + T)$ 에서 결정된다고 할 때 이론상 수입량은 설정된 TRQ물량, Q 를 초과하는 $M(>Q)$ 이 되어야 하나, 수입에 따른 거래비용(TC)이 매우 커 $(T - t)$ 를 초과한다면 실제 수입량은 설정된 TRQ물량보다 작은 Q^* 가 될 수 있다.

그림 2-2 TRQ제도와 TRQ 수입이행율



극단적인 경우이긴 하지만 만일 TRQ내 수입권을 얻기 위한 거래비용이 $(T - t)$ 를 초과한다면 낮은 쿼터내관세가 적용되는 TRQ내 수입은 완전히 이행되지 않은 채 상대적으로 높은 쿼터밖 세율이 적용되는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녹차, 땅콩, 생강, 고추 등 일부 품목의 경우 쿼터내관세가 적용되는 TRQ물량의 수입 이행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세율인

쿼터밖관세가 적용된 수입 경험이 있다. 한편 위와 같은 상황은 소비자들이 수입 농산물과 국내 농산물을 동일한 상품으로 보지 않고 차별화하여 국내 농산물에 일정한 프레미엄을 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2. TRQ의 후생 효과

일반적으로 시장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균형점을 기준으로 왼쪽 부분에 있는 영역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를 할 때 최대의 사회적 잉여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구매자 즉 시장의 균형점 좌측에 위치한 구매자를 내부구매자(intra-marginal buyer)라고 하는데, 그들의 지불의사는 시장균형가격 보다 높다. 반대로 시장 균형점 우측에 있는 구매자를 외부구매자(extra-marginal buyer)라고 하며 당연히 그들의 지불의사는 시장균형 가격보다 낮다. 이와 같은 개념은 공급자 또는 판매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내부공급자(intra marginal suppliers)는 생산성이 높아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판매할 용의가 있으며, 반대로 외부공급자 (extra marginal suppliers)는 시장균형가격보다 더 큰 수준에서만 판매할 의사가 있는 것이다.

TRQ 관리에 있어서 비효율성의 일차적 근원은 외부거래자(extra marginal traders)에 의해서 내부거래자(intra marginal traders)가 구축되는 경우이다. TRQ에 의한 수입차익의 획득 가능성이 외부거래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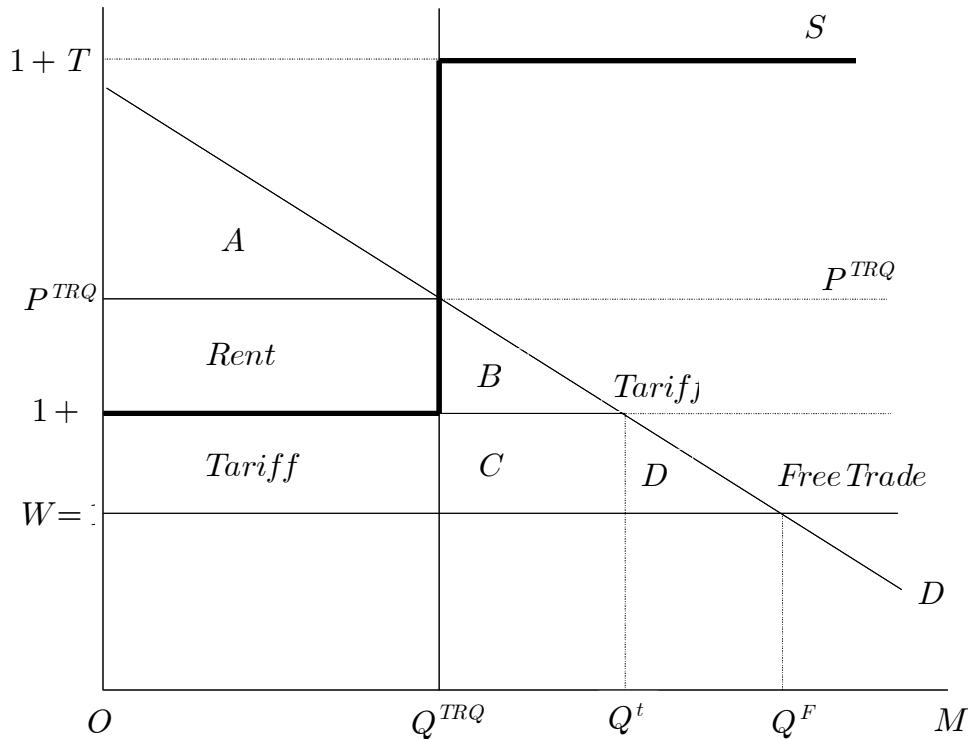
TRQ 대상품목의 세계시장가격을 전과 동일하게 $W(=1)$ 라고 하고, 이를 기준으로 TRQ 제도 아래서 정규화된(normalized) 국내가격을 P 라고 하자 (단 $P = P_d/W$, P_d 는 정규화 이전 국내가격). <그림2-3>에서 쿼터내관세는 t 이고 설정된 TRQ물량은 Q^{TRQ} 이다. 설정된 TRQ를 초과하여 수입되는 경우 적용되는 쿼터밖관세는 T 이다.

수입수요가 TRQ를 소진시키기에 충분한 수준이나 쿼터밖관세가 높아 TRQ를 초과할 정도는 아닌 경우를 생각해 보자. 관세가 없는 완전한 자유무역의 경우, 수입량은 세계시장 가격 1에서 결정되므로 Q^F 가 되고, 이 때 국내가격은 세계시장가격과 동일한 1이 된다. ($P = W = 1$) 마샬리안(Marshallian) 잉여를 구해보면 수요곡선과 공급곡선 사이의 부분이 자유무역시의 후생이므로 그 크기는 면적 A 와 TRQ에 따른 쿼터지대인 $Rent$, 그리고 관세수입($=Tariff$)과 면적($B + C + D$)를 합친 것이 된다.

한편 관세 t 가 부과될 경우, 수입량은 Q^t 가 되고, 국내가격은 국제가격에다 관세를 추가한 $(1 + t)$ 가 된다. 이 때 소비자 잉여는 $(A + Rent + B)$ 가 되고 정부의 관세수입은 $(Tariff + C)$ 가 된다. 완전 자유무역시와 비교하면 D 만큼의 후생손실이 나타난다.

TRQ 관리제도 아래서는 수입금지적으로 높은 관세 T 와 수입수요의 크기로 인해 수입량은 Q^{TRQ} 에 머물게 된다. 이 때 국내가격은 P^{TRQ} , 그리고 국제가격은 전과 동일한 1이 된다. 이 경우 소비자 잉여는 A 이고 정부의 관세수입은 $Tariff$, 그리고 수입관에 따른 수입차익(또는 쿼터렌트는)은 $Rent$ 가 된다. 따라서 TRQ제도의 운용에 따른 사회적 후생은 $A + Rent + Tariff$ 으로 표현된다.

그림 2-3 TRQ의 경제적 후생 분석



TRQ제도 운용에 따른 사회적 후생변화를 보면 자유무역시와 비교할 때 면적 $(B + C + D)$ 만큼 후생손실이 있으며, 관세만 부과되는 경우는 면적 $(B + C)$ 만큼 후생손실이 발생한다.

TRQ제도하의 수입차익은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격차를 해소할 기회가 부분적으로 상실되는데서 비롯된 것으로, 존재 자체만으로 이 차익을 획득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 수익차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따라 무역의 패턴이 변하게 된다.

제2절 TRQ 관리와 WTO 조항

TRQ 관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쿼터내관세가 적용되는 TRQ내 수입권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 핵심이다. 일반적으로 수입수요가 TRQ보다 작을 경우 TRQ 관리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수요가 TRQ 보다 클 경우, TRQ내 수입과 TRQ초과 수입에 적용되는 수입관세가 상이하기 때문에 TRQ 관리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TRQ관리는 쿼터내관세가 적용되는 TRQ물량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근본적으로 차별(rationing)의 문제로 볼 수 있다.

TRQ내의 수입권을 어떻게 할당하는가는 수입차익의 크기와 배분은 물론 수입량 자체의 크기와 배분에도 영향을 준다. 즉 TRQ내 수입권의 배분방식에 따라 수입차익의 크기와 배분이 달라지고 이는 실제 수입량과 수입량의 배분, 즉 수출공급 국가들간의 수입국 시장 점유율도 직접 영향을 주게된다. 이 중에서 WTO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실제 교역물량의 크기와 교역물량의 배분에 한정되어 있으며, 수입차익의 크기나 또는 배분은 WTO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그러나 수입차익이 어떻게 배분되는가에 따라 수출국간 수입국의 시장점유율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차익의 배분도 WTO의 간접적 고려 대상이다.

UR 농업협상의 타결 및 관세화로의 전환에 따라 GATT의 수량제한조치는 모두 철폐된다. 따라서 TRQ관리와 관련된 UR 농업협정문상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TRQ 관리방식을 직접 규제하고 있는 GATT나 WTO 조항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량제한조치(쿼터제도)의 관리방식을 관장하고 있는 GATT 13조가 TRQ관리와 직접 연관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GATT 13조를 TRQ 관리에 원용하는 이유는 TRQ를 초과하는 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할 경우(예를 들어 쿼터밖관세가 금지적으로 높아 사실상 정상적인 시장조건아래서 TRQ 초과수입이 어려울 경우) TRQ제도는 곧 쿼터제도와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DDA에서 TRQ관리와 관련해서 새로운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는 한 GATT의 13조가 TRQ관리와 관련된 핵심적인 WTO 규정인 셈이다.

GATT 13조 또는 관련 다른 GATT 조항을 검토·분석한 연구결과, 쿼터제도 또는 TRQ 관리제도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판단은 쿼터 소진(quota fill)과 무역 배분(distribution of trade)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⁵

1. 쿼터 소진(Quota Fill)의 특성

쿼터소진은 시장조건이 허락할 경우 쿼터내수입이 가능한지에 대한 것으로 쿼터내관세 이외 수입을 방해하는 어떠한 조치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근본 취지이다. 이를 판단하는 두 단계 기준은 ① 쿼터(또는 TRQ) 100% 소진 여부 ② 쿼터(또는 TRQ)가 100% 소진되지 않았을 경우 시장조건이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여기서 시장조건이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의 판단은 쿼터가 100% 소진되지 않았을 경우, 그에 대한 적법한 상업적 이유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

쿼터가 미소진되는 적법한 상업적 이유의 가장 좋은 예는 국내 생산이 갑자기 증가하여 초과 수요가 줄어든 경우이다. 이 때 국내가격이 국제시장가격에 쿼터내관세를 적용한 수준보다 낮아졌다면, TRQ 물량 보다 적은 양이 수입될 것이다. 이 때 TRQ이행률은 100% 미만이지만, 현행 시장조건아래서 수입수요가 충분하지 않다는 적절한 이유는 합법적인 미소진의 이유가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국내 생산의 증가가 단순히 자연적인 것인지 아니면 생산기술의 변화로 인한 것인지 혹은 국내 정책에 따라 생산이 증가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복잡한 사안이다. 따라서 WTO는 관행상 두 번째 기준으로 실제 국내가격과 수입가격(국제 시장가격+쿼터내관세)을 비교한다.

만일 국내가격 P 가 수입가격 $(1 + t)$ 보다 낮다면 TRQ 미소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높은데 불구하고 TRQ가 미소진된다면, 일단 그 이유를 조사하게 된다. 관세이외 적법한 거래비용이 수반되어 TRQ가 미소진되거나, 또는 소비의 차별화가 이루어져 가격비교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그 이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TRQ 관리방법이 정상적인 상업적 수입을 어렵게 하여 TRQ 미소진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TRQ 관리제도를 의심하게 된다.

5 Skully(2001) 참조

한편 쿼터 소진율 통계로 TRQ 관리방식의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WTO의 TRQ 자료를 조사해 보면 국영무역 또는 과거실적에 의해 TRQ를 관리하는 방식의 쿼터 소진율이 경매방식이나 실행세율에 의한 관리방식 보다 오히려 높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TRQ 관리방식의 선택이 각국의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정치적으로 보다 민감한 품목일수록 수입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국영무역이나 생산자단체에 의한 수입관리가 선호되어 수입을 엄격히 관리하는 경향이 있다. 대신 TRQ관리와 연계된 예상 가능한 통상마찰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쿼터 소진율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경향이 있다. 반대로 국내 정치적으로 수입이 그리 큰 관심을 받지 않는 품목의 경우 보다 시장 지향적 방법으로 TRQ가 관리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관리방식의 쿼터 소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 무역 배분(Distribution of Trade)

무역 배분이란 쿼터제도아래서의 수입국 시장배분은 쿼터제도가 없었을 경우 수출국들 사이에서 형성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국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에 가능한 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⁶ 이를 위해서는 쿼터제도 아래서 무역을 왜곡시키는 요인을 가능한 한 최소화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즉 주어진 TRQ물량안에서 어떻게 하면 무역 왜곡을 최소화하여 수출국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에 의해서 시장점유율이 형성되는가가 핵심이며, GATT의 규정도 수출공급 국가간 상대적인 효율성에 의해서 시장 점유율이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무역의 배분은 시장점유율 문제로 귀착되며, TRQ관리와 관련해서는 ① 어떤 TRQ 관리방법이 TRQ 미소진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가장 큰 가와 ② 어떠한 TRQ배분이 수출업체(국)간에 시장점유율에서 무차별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가 핵심이다.

TRQ 관리에 의하여 무역의 배분이 왜곡되거나 편향될 위험은 공급측면에서의 시장차별문제를 검토하면 보다 명확해진다.

6 GATT 13조 2항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2. In applying import restrictions to any product, contracting parties shall aim at a distribution of trade in such product approaching as closely as possible the shares which the various contracting parties might be expected to obtain in the absence of such restrictions... ”

<그림 2-3>은 생산성이 높아 생산비용이 낮은 수출국, L 과 이 보다는 생산비용이 높은 수출국, H 를 상정하여 TRQ 관리방식에 따라 어떻게 수입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바뀌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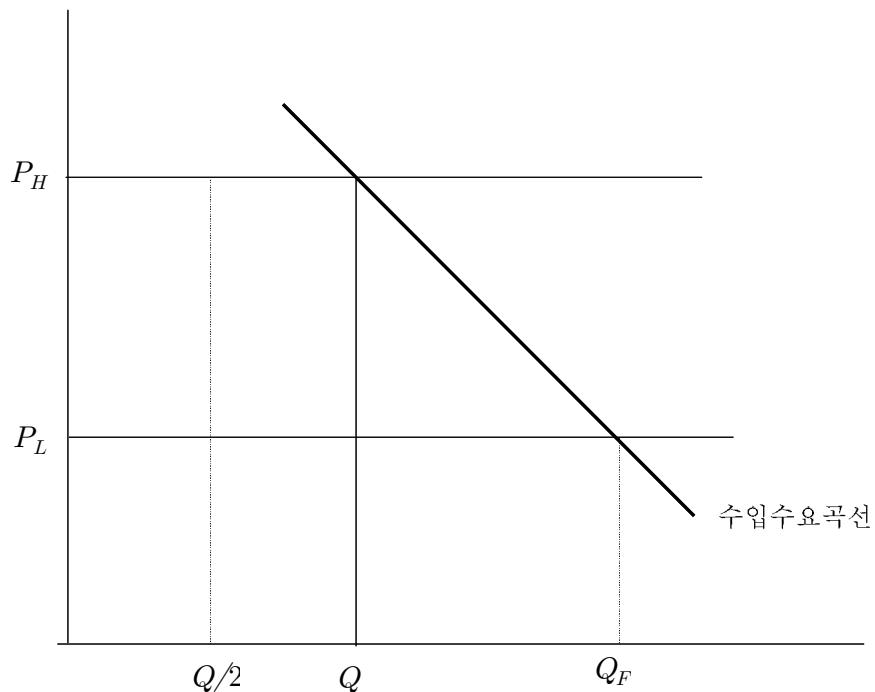
자유무역 조건 아래서 수입국 시장은 생산비용이 낮은 수출국, L 에 의해서 100% 점유되고, 이 때 수출량은 Q_F , 그 때의 가격은 P_L 로 형성된다. 이 경우 생산성이 떨어지는 수출국 H 는 경쟁에 뒤쳐져 국제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다.

이제 쿼터물량이 Q 로 설정되었다고 하자. 수입수요에 의하여 가격은 P_H 로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생산성이 낮은 수출국 H 에게도 수출 유인이 생긴다. 이 때 쿼터관리제도가 수입국 시장의 점유율에 영향을 준다. 만일 쿼터관리제도가 생산성이 높은 국가에게만 시장접근이 가능하도록 운용된다면 수입국 시장은 여전히 수출국 L 에 의해서 100% 점유되며, 이 때 수출국은 L 은 단위 물량당 ($P_H - P_L$)의 차익을 획득하게 된다.

그러나 쿼터의 관리가 선착순으로 운용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수입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생산성이나 효율성 보다는 누가 먼저 쿼터물량을 획득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없다면 생산성이 낮은 국가나 높은 국가 모두 수입국 시장에 접근할 확률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출국 L 과 H 공히 $Q/2$ 만큼을 수출하고, 결국 두 나라의 시장점유율은 50%로 동일해 진다. 그러나 생산성이 낮은 고비용 수출국가로부터 $Q/2$ 만큼이 수입되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가 초래된 결과로 상대적인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이 때 쿼터제도 대신 ($P_H - P_L$)만큼의 관세(t)를 부과하여 수입량을 Q 로 제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관세부과로 인해 수출국의 실제 수출가격은 $P_L (= P_H - t)$ 이 되고 이 가격수준에서는 내부 공급자(여기서는 수출국 L 을 의미)만이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쿼터의 자유스러운 거래를 가능하게 허용하는 경매제도를 운용한다고 해도 이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난다. 효율적인 공급자만이 P_H 수준의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TRQ 관리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따라 외부공급자(여기서는 수출국 H)의 수출 공급 유인이 생길 수도 있고, 반대로 없어질 수도 있다.

그림 2-4 TRQ제도와 무역의 배분



3. TRQ관리 관련 WTO 규정과 논의

UR 농업협정문 제4조는 협상의 3대 쟁점 중 하나인 시장접근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다. 제4조 2항은 “회원국들은 일반관세로 전환하도록 요청된 조치를⁷ 유지 또는 재원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나 동시에 UR 농업협정문은 비관세장벽을 일반관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회원국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했다. 회원국은 관세 및 TRQ에 관한 이행계획서를 WTO에 제출

7 본 협정문에서 언급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조치에는 수입물량규제, 가변수입부과금, 최소수입가격, 자의적인 수입허가증 발급, 국영무역을 통한 비관세조치, 수출자율규제, GATT 1947 규정하에 인정된 국별의무면제를 막론한 일반관세이외의 유사 비관세조치를 모두 포함한다. 단 국제수지규정 또는 GATT 1994내지 기타 다자무역협정(the other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MTO) 부속서 1A하의 일반적/비농업 특정적 규정하에 유지되는 조치는 제외한다”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융통성을 적용하여 허용된 수준 이상으로 높은 관세를 설정하였다. 당시에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시점과 농업협정문의 실제 이행시점 사이에 시간상 물리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일부 회원국이 너무 높은 관세나 너무 낮은 TRQ 물량을 제시했을지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여유가 없었고, 일단 농업협정문의 일부로써 받아들여졌다. TRQ 관리에 대한 논의와 WTO 관련 규정의 해석도 이러한 농업협정문의 발효와 실제 이행 등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먼저 GATT 제13조가 TRQ관리와 관련된 대표적 조항이다. 13조는 TRQ를 포함해 일반적인 수량제한의 시행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13조는 기본적으로 무차별의 원칙(non-discrimination)을 언급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과거 기준에 근거해 차별적인 TRQ 배분을 허용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상호 모순되는 개념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GATT 제13조는 4개의 세부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항은 수량제한의 일반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2항은 수량제한의 경우 무역량의 분배에 관한 규정으로 수량제한이 없었을 경우에 가능한 한 균접하도록 무역량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수입허가에 의한 수량제한의 경우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회원국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이며, 마지막으로 4항은 무역량 배분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예를 들면 과거의 특정한 기간 및 무역량에 영향을 주는 특수한 요인들에 대한 사항)이 기술되어 있다⁸.

TRQ 관리의 핵심은 앞 절에서 본바와 같이 TRQ물량내 관세수준은 물론 TRQ물량의 수입권이 어떻게 분배되는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리고 이러한 TRQ물량의 수입권리를 배분하는 방법은 해당 품목의 무역량은 물론 무역량 분배, 수입차액의 분배 등에 큰 영향을 준다.

지금까지 나타난 TRQ관리에 관한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혜국대우 규정은 각 회원국에게 쿼터량의 몫을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사실에서 수량규제는 본질적으로 최혜국대우(MFN)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고,

둘째, 그러나 최혜국대우 규정은 동시에 쿼터량을 현행 수출국들의 무역비중에 비례하여 할당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수량규제 관리는 선착순 배정방식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8 부록 1을 참조할 것.

그러나 무차별성에 대한 해석은 일반적으로 WTO 회원국들 사이에서 상당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리적으로 이점을 갖고 있거나 혹은 운송체계 및 기술이 발달된 회원국이 GATT 제13조 규정을 이용하는 경우 보다 자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동안 GATT에서 논의된 결과는 TRQ 물량의 배분문제를 해결할 명시적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가 결국 TRQ 관리에 있어서 회원국에게 어느 정도의 유통성을 주는 기초가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무역배분과 관련하여 GATT 제13조 2항에는 “상품에 대하여 수입규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규제가 없을 경우에 여러 체약당사자가 얻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뜻에 가능한 한 균접하도록 동 상품의 무역량을 분배할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TRQ의 배분은 관세할당제 아래 제약된 무역량의 분배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분배에 어떻게 밀접하게 균접할 수 있는가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역량 분배 기준에 의한 경제원칙은 TRQ제도에서 가능한 한 무역왜곡을 최소화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GATT의 무차별성 원칙은 무역비중이 차별적 기준이 아닌 수출국의 상대적인 효율성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GATT 제13조 2항 (c)와 (d)는 무차별성과 차별성의 허용한도를 주장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모순되고 있다. 즉 13조 2항 (c)와 (d)는 TRQ의 국별 할당(supplier tariff quota)을 허용하고 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국이나 특정 공급원으로부터 해당 품목의 수입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곧 수입국들이 GATT 규정에 일치하는 차별화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GATT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공급국간의 TRQ 뜻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GATT 제13조 2항 (d)는 모든 이해 당사국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런 방법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하지 않을 경우 ‘체약당사자는 동 상품의 공급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체약당사자에게 뜻을 배분하되 동 상품 수입의 총량 또는 총액 중 과거의 대표적인 기간 체약당사자에 의해서 공급된 비율에 기초한 동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거나 미치고 있을 수도 있는 특별한 요소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GATT 해석상 전통적으로 대표기간은 제약이 부과되기 이전 3개년 평균이 사용되어 왔다. 한편 제13조에서 언급하는 특별한 요소의 의미와 관련하여, GATT는 대표기간 이후 여러 외국 생산자간에 발생될 수 있는 ‘상대적인 생산효율성의 변화(changes in relative productive efficiency)’를 포함하고 있다고 본다. 즉 경쟁우위의 변화는 공급국의 뜻을 재

배분하는 적절한 이유로써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제13조 2항 (c)와 (d)는 회원국들에게 TRQ 권리를 현재의 수출국에게 이전하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동시에 특별요소를 설명하는 위 규정들은 수출국의 뜻이 경제조건의 변화에 따라 재 배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제13조에 일치하여 이런 종류의 재배분이 발생하는 경우를 찾기는 힘들다. 제13조 2항 (d)는 ‘해당 품목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실질적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기타 당사국과의 협정을 모색하기 위해서 쿼터를 부과하는’ 국가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쿼터 뜻의 재분배가 쿼터 보유국의 관점에서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간의 협정은 불가능하다. 쿼터를 부과하는 정부가 ‘공급자 쿼터를 배분하는 주요 이유는 쿼터에 의해서 손해를 입는 공급국을 달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쿼터가 부여된 수출국으로부터 쿼터렌트의 이전을 통해 부분적으로 보상을 받는 자발적 수출제한과 유사하다. 따라서 쿼터가 부과될 경우, 이런 보상이 합리적으로 그리고 비차별적으로 배분될 수도 있지만, 시간의 흐름이나 잠재 공급국의 상대적인 비교우위의 변화에 따라 쿼터 뜻은 불공평하게 배분될 수 있다. 국가별 특정 TRQ에 의한 수출권의 배분 또한 수출기업이 교섭력, 불완전 경쟁관행, 수출허가권 발행을 통해 가용 수입차액(rents)을 얻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 특정 수출쿼터가 배분되는 방법에 대한 대표적인 패널사례는 “바나나 분쟁”이다. 바나나 수출국들은 EU가 수출쿼터를 분배하는 방법이 차별적이고, 최근의 무역상황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실제 EU의 바나나 수출쿼터는 과거 무역을 기준으로 수준이 동등하거나 심지어 큰 국가들이 아닌 소수 국가들에게 많은 쿼터가 배분되고 있었다. EU가 과거 대표적인 기간의 수출량과 일치하는 쿼터를 배정하지 않았던 것은 로메협약(Lome convention)에 근본 원인이 있다. 로메협약에 의해서 EU는 자국과 특혜적 무역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지역의 77개 국가에게 추가적으로 바나나 TRQ 할당량을 제공하였고 이는 결국 WTO 비회원국에게 수출쿼터를 배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바나나 분쟁은 특히 수입허가의 배정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수입허가의 유효기간, 허가의 규모, 수입허가의 자격요건, 미사용된 허가권의 재배정, 허가권 사용요건 등에 관해서는 회원국간 의견이 여전히 분분한 실정이다. 전반적으로 남미로부터 수입하는 기업들은 아프리카·카리브·태평양 연안국(ACP)으로부터 수입하는 기업과 비교하여 수입허가 절차가 매우 복잡하여 불필요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차별적이고, 무역 제약적이며, 무역 왜곡적 방식이란 인식하에 해당 기업들은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다. 패널은

‘수출입과 연계된 규정과 절차.’를 언급한 GATT 제1조가 수입허가 규정도 포함한다고 보고, EU가 GATT 제 1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결하였다.

WTO의 수입허가절차에 대한 협정에 의하면, 수입허가권의 취득과 갱신에 대한 신청절차는 가능한 한 단순화시켜야 하고, 절차와 관련된 제반 규정과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입허가협정(Licensing Agreement)은 수입허가를 자동(automatic) 및 비자동적(non-automatic)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입국은 신청과정에서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공정하고 균등한 방식으로 이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동시에 어떠한 수입허가절차도 무역을 왜곡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수입국은 스스로 어떤 방식이 공정하고 공평하며, 그리고 행정상 최소 부담이 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수입허가협정은 막연한 지침만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국은 이 지침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EU의 수입허가절차는 GATT 제1조와 제3조(내국민대우), 제10조(무역규정의 공표 및 시행)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을 위반했다고 최종 판결되었으며, GATT 제13조가 수입차액(rent)의 분배와 관련이 없다는 EU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수입차액은 차별적인 방식으로 기업의 경쟁조건이 바뀌도록 임의적으로 배분될 수 없다고 판결한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패널결정에 의하면, 수입차액은 수입제한품목의 공급과 연계된 서비스분야에서 차별적인 방식으로 경쟁조건을 변경시키도록 자의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국가별 특정 수출쿼터, 수출기업허가, 수입허가절차와 관련된 협안들은 차별성 문제를 강조하고 있고, 비효율성 문제에 대해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제3장 TRQ관리의 국제실태와 DDA 농업협상에서의 논의

제1절 TRQ 관리방식별 특징

세계무역기구(WTO)는 각국이 제시한 시장접근이행계획서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7가지 방식으로 TRQ 관리방식을 구분하고 있으며, 각각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실행관세(applied tariff)에 의한 TRQ관리

실행세율에 의한 TRQ관리는 수입량이 설정된 TRQ물량을 초과하여 수입이 이루어져도 상대적으로 낮은 쿼터내 관세만을 적용하는 TRQ 관리방식이다. 따라서 사실상 단일의 쿼터내 관세만이 존재하는 일반 관세제도와 무역에 미치는 효과면에서 차이가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TRQ제도라기 보다 관세제도에 가깝고, 실제 TRQ관리의 의미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아래서 TRQ가 미소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설령 미소진된다고 해도 이러한 TRQ 관리제도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TRQ 미소진에 대해서는 수출국의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는 실정이다. 수출국간의 시장 점유율 배분에 있어서도 무차별하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TRQ 관리방식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WTO에 통보된 전체 TRQ 관리대상품목 가운데 약 50%가 실행관세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들의 대부분은 필요시 높은 쿼터밖 세율을 적용할 권리를 유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선착순 배정방식(FCFS: First-come, first-served)

수입통관시의 순차적 순서에 따라 설정된 TRQ물량까지는 낮은 쿼터내 관세가 적용되고, 그 이후의 수입량에 대해서는 고율의 쿼터밖 관세(out-quota tariff)를 적용하는 관리방식이다. 정부의 개입 감소를 통해 무역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행정적으로도 수입관리의 간편성이 선착순 배정방식의 장점이다. 그러나 해당품목의 수입수요가 설정된 TRQ물량 보다 클 경우 수입시 쿼

터내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TRQ 수입개시공고 초기에 일시적인 수입급증으로 시장 교란을 초래 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한편 수입업자 측면에서 볼 때, 수입시 낮은 쿼터내관세(In-quota tariff)가 적용될지 혹은 상대적으로 높은 쿼터밖관세(out-quota tariff)가 적용될지 불확실하여 수입업자의 수입에 대한 위험부담을 가중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시장상황에 대한 예측성, 안정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반면 통관 및 관세평가 절차가 정비된 체계를 갖춘 경우에 효과적 사용이 가능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WTO에 통보된 TRQ자료에 기초하면 전체 TRQ 관리방식중 선착순배정은 실행관세에 의한 관리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전체의 약 11% 점유)

3. 수입허가제도(Licences on demand)에 의한 TRQ 관리

수입허가제도는 해당품목의 수입시 낮은 쿼터내 관세가 적용되는 TRQ물량의 수입권한을 적절히 배분하는 제도이다. 수입허가제도는 해당품목의 수요가 설정된 TRQ 보다 작을 경우에는 대부분 선착순에 의해 수입권을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품목의 수입수요가 설정된 TRQ 보다 클 경우, 수입권 신청자가 요청한 수입물량을 비례적으로 감소시켜 TRQ에 일치시킨다.

수입허가제는 다른 TRQ 관리방식에 비해 수입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수입허가권 발급을 통한 정부의 개입으로 시장이 왜곡되거나, 공정한 경쟁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시에 수입권에 확보시 예상되는 수입차익이 클 경우 이를 획득하기 위한 비효율적 거래활동(예: rent seeking activity)을 유발할 수도 있다.

4. 과거 수입실적에 따른 배분(Historical importer)

TRQ에 대한 수입권을 과거 교역 실적에 기초하여 비례적으로 수입업자 혹은 수출국에 할당하는 배분방식을 뜻한다. 단기적으로 수출입국(업자)간에 안정적이고 일정한 거래관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 있는 새로운 수출국(업자)의 시장진입 저해 등 시장구조의 왜곡 가능성이 존재한다. WTO에 통보된 전체 TRQ 관리방식중 약 9% 점유하고 있다.

5. 경매(Auction)방식

경쟁입찰방식에 의해 TRQ내 수입권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식으로 간주되고 있다. TRQ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렌트(rent)를 정부가 회수할 수 있다는 점과 시장에서 경쟁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에 기초하여 TRQ 수입이 관리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수입업자가 TRQ물량을 배당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비생산적 이윤추구행동(Non-productive rent seeking behavior)에 의해 오히려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 WTO에 통보된 전체 TRQ 관리방식중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6. 국영무역(State trading enterprises)방식

독점적이고 배타적 권한을 갖는 국영무역기업을 통해 TRQ물량을 수입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서 WTO에 통보된 전체 TRQ 관리방식중 약 2%를 점유하고 있다. 수입물량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가격 안정화 및 수입차액 회수를 통한 정부재원으로의 활용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 수입관리방식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수출국으로부터 국영무역기업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 부족, 생산자보호 측면, 비상업적 고려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입선 결정이 정부로부터 수입권을 부여받은 배타적 기관에 의해 결정됨에 따라 여타 상업적 개인기업에 비해 상업적 고려가 무시되고 정치적 고려에 의해 수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7. 생산자단체(Producer group)에 의한 TRQ 운영

TRQ내 수입권이 해당 품목과 관련된 생산자, 가공업자, 혹은 유통업자들을 대표하는 단체에 부여된 경우를 말하며, WTO에 통보된 전체 TRQ 관리방식중 약 1% 미만을 점유하고 있다. 시장개방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그룹에 대한 보상이라는 형평성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생산자단체의 특성상 그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여 수입량과 수입품종, 수입시기 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시장접근기회의 보장이 저해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한편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TRQ 관리방식은 위에서 언급한 7가지 방식 이외 두 가지 이상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혼합방식(Mixed allocation)이 있으며, WTO에 통보된 전체 TRQ 관리방식 가운데 약 4%가 해당한다.

제2절 TRQ 관리의 국제 실태

1. 국제적인 TRQ 관리 방식

가. TRQ 관리방식의 분류 및 특징

UR 농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WTO에 통보된 국별시장접근자료에 따르면 2001년 기준으로 TRQ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는 38개 국가이며, 대상품목은 총 1,377품목에 이르고 있다. WTO는 통보된 시장접근자료에 기초하여 TRQ 관리방식을 다음과 같이 총 7가지로 분류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실행세율(applied tariff)에 의한 관리는 수입량이 TRQ물량을 초과하든 초과하지 않든 관계 없이 모든 수입에 대하여 쿼터내관세만을 부과하는 관리방식으로 사실상 TRQ제도를 운영하는 효과가 없다. 선착순배정(FCFS: first-come, first-served)에 의한 TRQ관리는 말 그대로 TRQ물량이내의 수입량에 대하여 먼저 수입항구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쿼터내관세를 부과하며, 이후의 모든 수입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인 쿼터밖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수입허가(license on demand)는 TRQ물량을 수입할 때 사전 허가가 필요한 제도이다. 수입요구량이 TRQ물량을 넘지 않는다면 실행관세에 의한 TRQ관리와 동일해지나, 수입요구량이 TRQ물량을 초과한다면 수입요구량을 TRQ물량과 일치시키기 위해 요구된 물량을 비율적으로 줄인다.

과거 수입실적에 따른 관리는 TRQ물량의 수입을 과거 시장점유율에 기초하여 비율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경매는 말 그대로 TRQ물량의 수입권을 경매로 배정하는 방식이고, 국영무역이나 생산자단체에 의한 관리는 TRQ물량의 수입권을 국영무역기업 또는 생산자단체에 배타적으로 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혼합방식이란 위에서 언급된 TRQ 관리방식을 2~3개 혼합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말하며, 기타는 위에서 분류한 7에 속하지 않는 TRQ 관리방식을 의미한다.

TRQ 관리방식별 분포를 보면 1,377개 품목 가운데 약 46%인 631개 품목이 실행관세(applied tariff)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TRQ 관리대상 품목은 746개 품목에 한정된다고 볼 수 있다.(표 3-1 참조)

표 3-1 WTO에 통보된 TRQ 관리방식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실행관세	654 (51.9)	642 (50.4)	673 (49.2)	665 (48.8)	656 (47.7)	639 (46.8)	631 (45.8)
선착순	101 (8.0)	103 (8.1)	147 (10.8)	147 (10.8)	146 (10.6)	153 (11.2)	153 (11.1)
수입허가	290 (23.0)	299 (23.5)	302 (22.1)	298 (21.8)	310 (22.5)	297 (21.8)	324 (23.5)
경매	41 (3.3)	39 (3.1)	59 (4.3)	59 (4.3)	59 (4.3)	52 (3.8)	52 (3.8)
과거수입실적	68 (5.4)	82 (6.4)	88 (6.4)	97 (7.1)	97 (7.0)	119 (8.7)	100 (7.3)
국영무역	22 (1.7)	22 (1.7)	20 (1.5)	19 (1.4)	20 (1.5)	20 (1.5)	21 (1.5)
생산자단체	8 (0.6)	8 (0.6)	7 (0.5)	7 (0.5)	7 (0.5)	9 (0.7)	8 (0.6)
혼합방식	54 (4.3)	55 (4.3)	58 (4.2)	59 (4.3)	60 (4.4)	60 (4.4)	60 (4.4)
불특정방식	9 (0.7)	10 (0.8)	6 (0.4)	6 (0.4)	14 (1.0)	7 (0.5)	20 (1.5)
기타	12 (1.0)	13 (1.0)	7 (0.5)	7 (0.5)	7 (0.5)	9 (0.7)	8 (0.6)
총계	1259 (100.0)	1273 (100.0)	1367 (100.0)	1364 (100.0)	1376 (100.0)	1365 (100.0)	137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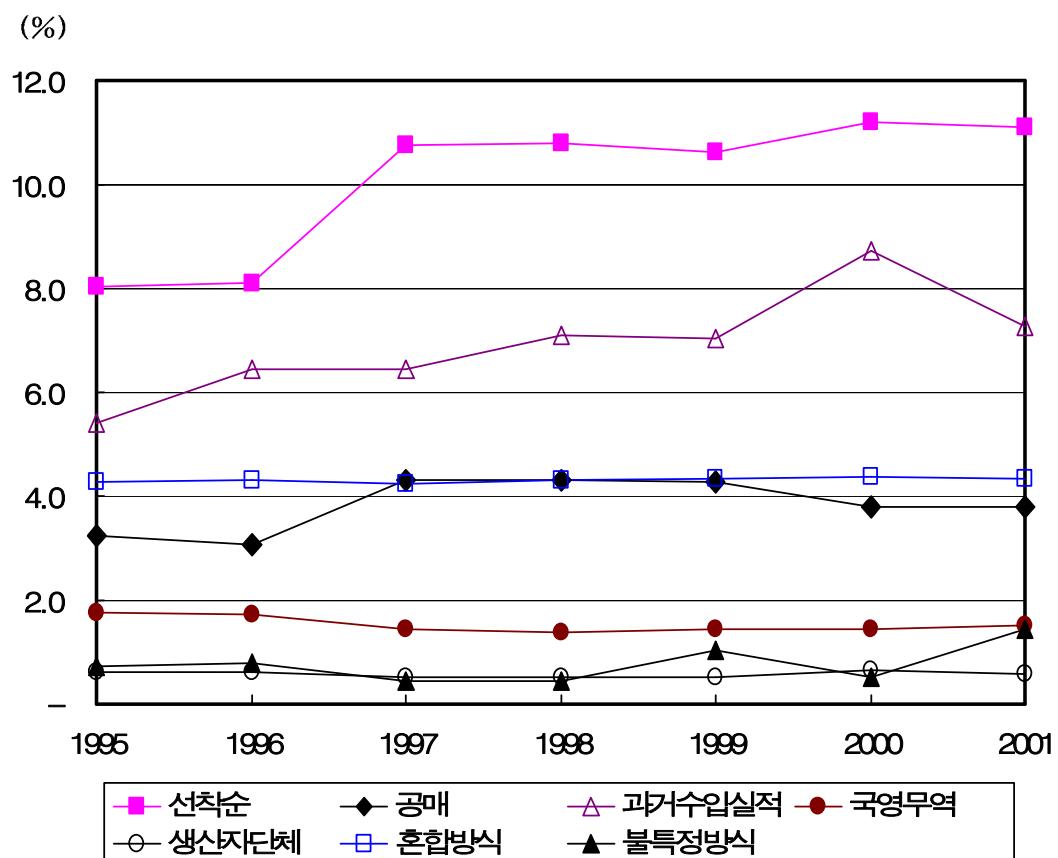
주: ()의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WTO(2002), TN/AG/S/6,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Tariff Quota Fill

실행관세에 의한 관리를 제외한 746개 품목을 기준으로 할 때 수입허가제(License on demand)가 324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TRQ 관리제도이며(34%), 그 다음은 선착순배정방식(FCFS) 153개 품목(21%), 과거 수입실적에 의한 배분 100개 품목(13%), 혼합방식 60개 품목(8%), 경매(Auction)에 의한 관리 52개 품목(7%) 등이다.

연도별 TRQ 관리방식의 변화를 보면 실행관세에 의한 TRQ 관리방식은 다소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52% ⇒ 46%), 선착순 배정(8.0%⇒11%)이나 과거 실적(5.4%⇒7.3%), 그리고 경매(3.3% ⇒ 3.8%)에 따른 TRQ 관리방식은 증가하고 있으며, 기타 다른 방식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 TRQ 관리방식 변화 추이(1995~2001년)



나. 주요 국가의 TRQ 관리방식

국가별 TRQ 관리를 보면 EU가 가장 많은 품목에 TRQ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EU이며, 우리나라와 미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표 3-2 참조). TRQ 대상 품목 수에 있어서 노르웨이가 최고이나 그 대부분은 실행관세에 의한 TRQ 관리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EU의 자료가 15개 회원국의 합산된 자료임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품목에 TRQ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표 3-2 주요국의 TRQ 관리방식과 해당 품목 수(2001년)

	실행 관세	선착순	수입 허가	공매	과거 실적	국영 무역	생산자 단체	혼합 방식	기타	계
호주	1				1					2
브라질	1							1	2	
캐나다	1	4	6		5	1	3	1	21	
EC-15		20	60		6					86
이스라엘	2		3		1		2	4	12	
일본			13			4	1	2	20	
한국	1		21	4	16	10	3	9		64
멕시코	10				1					11
뉴질랜드	3									3
노르웨이	213		1	11	7					232
스위스	7	5	2	4			10			28
미국		32						17	5	54
기타	392	92	218	33	63	6	5	18	15	842
전체	631	153	324	52	100	21	8	60	28	1377

자료: 전개서

노르웨이가 전체 TRQ 대상품목의 약 92%에 해당하는 213개 품목을 실행관세에 의한 TRQ 관리를 하는 주된 이유는 다른 회원국들과 달리 설정된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쿼터내관세율이 TRQ물량을 초과한 수입량에 부과되는 쿼터밖관세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진다.⁹ 또한 부분적으로는 노르웨이가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의 회원국으로서 TRQ 관리대상 품목 가운데 상당수 품목이 이미 지역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회원국들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노르웨이 이외에 EEA의 다른 회원국인 아이슬란드 및 중미공동시장(Central America Common Market)의 회원국들인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과테말라 등과 안데스공동체(Andean Community)의 회원국인 콜롬비아,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등도 상당수의 TRQ관리대상품목에 대해 단일의 실행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은 언제든지 필요에 의해 그들이 여타 수입관리방식을 채택할 권한을 유보하고 있기도 하다.

EU는 TRQ 관리방식으로 주로 수입허가제(License on demand)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선착순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로 수입추천이 요구되는 21개 품목이 WTO 사무국에 의해 수입허가제로 분류되고 있다. 이외에도 중유럽자유무역연합(Central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회원국들인 평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바니아 등이 TRQ 관리방식으로 수입허가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주로 선착순에 의한 TRQ관리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EU, 캐나다, 스위스 등이 선착순에 의해서 TRQ를 관리하고 있다. 특히, 체코와 모로코는 그들의 모든 TRQ에 대해 100%는 선착순배정방식을 취하고 있다.

일본은 수입허가제와 국영무역에 의한 TRQ관리를 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입허가제도와 과거실적에 의한 배분, 국영무역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개도국 중에서 태국이 수입허가제와 국영무역, 그리고 생산자단체에 의한 관리방식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필리핀은 주로 과거실적에 의한 배분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 콜롬비아, 루마니아, 노르웨이 등은 100%이상의 쿼터내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TRQ물량에 부과되는 쿼터내관세율은 OECD 평균 수준인 36%보다 낮은 21%이다. 그러나 TRQ물량을 초과한 수입에 부과되는 쿼터밖관세율 평균은 OECD에서 가장 높은 366%로 분석되었다(OECD(1999)).

2. TRQ 소진률(Fill-up rate)의 국제 비교

가. TRQ 관리방식별 소진율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낮은 세율로 수입이 보장된 TRQ물량은 과거실적에 의한 할당이나 국영무역 또는 수입허가제 등과 같이 비시장지향적 TRQ관리방식 보다는 실행관세나 경매 또는 선착순 배정 등과 같이 시장지향적 TRQ관리 아래서 소진률이 높을 것이다. 그러나 WTO 사무국이 제시한 TRQ 관리방식별 소진률 자료를 보면 오히려 비시장지향적 TRQ 관리방식인 국영무역과 과거실적에 의한 배분, 그리고 생산자단체에 의한 TRQ 관리방식 아래서의 TRQ소진률이 시장지향적 TRQ관리방식 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표 3-3 참조)

표 3-3 TRQ 관리방식별 TRQ 소진율

단위: %

관리 방식	단순평균 이행률 (%)						TRQ 해당품목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995	1996	1997	1998	1999
실행관세	71	65	65	70	70	68	489	489	525	502	383
선착수	56	61	47	51	64	60	87	95	144	144	76
수입허가	58	57	54	54	51	51	266	289	277	273	251
공매	26	32	51	34	23	32	39	36	55	43	35
과거실적	91	77	73	69	63	58	62	79	84	93	60
국영무역	81	83	90	91	71	72	22	22	20	19	8
생산자	74	53	85	78	86	83	8	8	7	7	4
혼합방식	74	83	84	84	73	44	44	45	43	43	23
불특정	100	44	57	44	41	86	1	7	6	5	5
기타	56	61	93	91	99	95	10	11	5	5	4
총계	66	63	62	63	62	60	1028	1081	1166	1134	849
											700

자료: 전계서

TRQ 소진률(Fill-rate)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TRQ 관리방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외에도 이행기간 동안의 품목별 시장조건, 그리고 각 회원국정부가 채택하는 TRQ관리방식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서 크게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TRQ 관리방식의 결정은 개별 회원국의 독자적 권한으로,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품목과 국내외 가격차가 커 수입 가능성이 높은 품목은 자국내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대부분의 회원국 정부가 TRQ관리방식 선택에 정치적 고려를 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민감품목들은 대개 정부의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영무역이나 과거실적에 의한 배분 등의 주로 비시장지향적 TRQ관리방식을 통해 관리되어 왔으며, 예상되는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의도적으로 TRQ 소진률을 높이기도 한다. 반면 국내외 가격차가 적어 수입으로부터 국내 농업에 대한 위협이 적거나 정치적으로 덜 민감한 품목의 TRQ관리는 오히려 실행판세나 또는 선착순배정과 같은 시장지향적 TRQ 관리방식을 사용하여 실제 국내외 시장조건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어 TRQ 소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Skully, 1999, 2001)

나. 국별 TRQ 소진율

TRQ 소진율이 높은 국가는 브라질, 인도네시아, 멕시코(100%), 호주(91%), 스위스(90%), 이스라엘(88%), 캐나다(85%)이며, 우리나라를 전체 WTO 회원국의 해당연도 단순 평균 소진률(63%)를 초과하는 70%수준이다. 반면에 루마니아(1%), 불가리아(40%), 체코(45%), 폴란드(41%), 슬로바키아(43%), 슬로베니아(38%) 등 시장경제 이행국가와 태국은 TRQ 소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설정이다.(표 3-4 참조)

표 3-4 국별/TRQ 관리방식별 TRQ 소진율

단위: %

	실행 관세 (AT)	선착순 (FC)	수입 허가 (LD)	공 매 (AU)	파거 실적 (HI)	국영 기업 (ST)	생산자 단체 (PG)	기 타 (OT)	혼합 방식 (MX)	미통보 (NS)	총 계
호주	100	-	-	-	81	-	-	-	-	-	91
브라질	100	-	-	-	-	-	-	-	-	-	100
캐나다	-	53	82	-	100	100	-	100	100	-	85
체코	-	45	-	-	-	-	-	-	-	-	45
콜롬비아	84	-	73	-	-	-	-	100	-	-	79
EU	-	70	65	-	94	-	-	-	67	-	69
일본	-	-	56	-	-	100	-	85	100	-	88
한국	49	-	49	33	83	93	81	-	83	-	70
노르웨이	65	-	98	44	83	-	-	-	-	-	65
필리핀	70	-	-	-	39	100	-	-	-	-	50
폴란드	-	-	44	-	-	-	-	-	0	-	41
태국	100	-	28	-	-	50	75	-	100	-	48
미국	-	62	-	-	-	-	-	-	80	44	66
전체평균	71	51	54	39	71	91	78	45	84	44	63

자료: 전계서

다. 품목별 TRQ 소진율

2000년 기준 주요 TRQ 대상품목은 과일 및 채소류로서 전체 TRQ 대상품목 가운데 약 26%에 해당하는 351개를 차지하고 있으며, 육류, 곡물류, 낙농품, 유지류가 주요 TRQ 관리대상 품목이다. 이러한 품목에 적용되는 TRQ 관리방식은 대부분이 실행관세에 의해서 TRQ 관리이며, 그

외에도 수입허가제가 많이 적용되고 있다. 특히 낙농품이나 육류의 경우 선착순배정, 수입허가, 경매 등 다양한 TRQ 관리방식이 사용되고 있다.(표 3-5 참조)

표 3-5 주요 품목별 TRQ 관리방식

	곡물	유지	설탕 및 제제	낙농품	육류	계란 및 관련품	음료	과채	담배	섬유	커피	기타	총 계
실행관세	109	63	20	51	93	7	10	214	7	7	20	38	639
선착순	20	13	14	16	26	-	11	29	1	7	14	2	153
수입허가	58	27	9	33	68	10	10	56	3	2	13	8	297
공매	1	-	-	24	17	2	2	6	-	-	-	-	52
과거설적	17	11	7	29	32	-	2	17	1	1	2	-	119
국영무역	7	3	-	2	-	-	-	6	1	-	-	0	20
생산자	1	3	-	-	-	-	-	3	-	-	1	1	9
기타	-	-	-	6	2	-	-	1	-	-	-	-	9
혼합방식	4	3	1	20	8	2	-	14	-	1	3	4	60
미통보	1	-	-	1	-	-	-	5	-	-	-	-	7
총계	218	123	51	182	246	21	35	351	13	18	54	53	1,365
품목별 비중(%)	15.9	9.0	3.7	13.3	18.0	1.5	2.6	25.7	1.0	1.3	3.9	3.9	100

자료: 전계서

품목별 TRQ 소진율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으나 2000년 기준으로 담배, 과채류, 낙농품 등은 평균 소진률을 웃도는 반면 계란, 음료 등은 비교적 낮은 TRQ 소진률을 나타내고 있다.(표 3-6 참조)

표 3-6 주요 품목별 TRQ 소진율

단위: %

	곡물	유지	설탕	낙농품	육류	계란류	음료	과채	담배	섬유	커피	기타	단순 평균
실행관세	53	79	74	74	66	22	100	73	100	100	85	47	68
선착순	59	62	80	53	36	-	40	69	NA	NA	NA	100	60
수입허가	59	50	57	53	50	35	14	53	54	50	47	26	51
공매	NA	-	-	39	43	8	NA	-	-	-	-	-	32
과거실적	66	50	25	67	49	-	100	60	NA	NA	NA	-	58
국영기업	100	-	-	100	-	-	-	-	78	-	NA	-	72
생산자	95	68	-	-	-	-	-	99	-	-	NA	100	83
기타	-	-	-	93	100	-	-	100	-	-	-	-	95
혼합방식	100	NA	NA	NA	100	2	-	-	-	18	NA	NA	44
미통보	NA	-	-	86	-	-	-	NA	-	-	-	-	86
단순평균	59	61	61	65	54	25	38	67	71	55	58	48	60

자료: 전계서

3. TRQ 수입에 따른 부가조건

WTO에 통보된 각국의 시장접근이행계획서에 따르면 TRQ 대상 품목의 수입시 다양한 추가적인 부가조건이 요구되고 있다. 품목 수로는 전체 TRQ 대상품목의 약 18%에 해당하는 246개 품목이, 국가별로 보면 TRQ 제도를 운영하는 38개 국가 가운데 71%에 해당하는 27개 국가가 TRQ 품목의 수입시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부가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요구되는 추가적인 부가조건은 수입할당량의 제한, 과거무역경험, 국내산 구매조건, 수출증명 등이 있으며, 종종 동시에 두 가지 부가조건을 요구하기도 한다.(표 3-7 참조)

표 3-7 TRQ내 수입을 위한 주요 부가조건의 유형

부 가 조 건	TRQ 품목		국 가 수		이 행 률(%)	
	1995	2000	1995	2000	1995	2000
국내산 구매규정	50	48	5	6	87	73
수입할당량 제한	106	106	6	7	50	47
수 출 증 명	26	24	2	2	75	69
과 거 무 역 경 험	60	63	8	9	66	53
과거무역경험+수출증명	3	4	2	2	100	85
국내산구매+수입할당량제한	-	1	-	1	-	NA
총 계	245	246	23	27	67	62

자료: 전계서

한편 주요국별 부가조건 현황을 보면 호주, 필리핀, 코스타리카 등 11개국은 TRQ 수입에 부가조건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다. 반면 TRQ물량 수입시 반대급부로 국내산 구매를 추가적인 부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콜롬비아(33개품목)와 스위스(11개 품목)등이며, 수입할당량에 제한을 부가하는 국가는 헝가리(54개 품목), 폴란드(31개 품목), 노르웨이(10개 품목) 등이다. EU와 미국은 TRQ 수입시 수출 증명을 부가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1

개 품목)와 일본(18개 품목), EU(15개 품목) 등이다.(표 3-8 참조) 또한 국내산 구매조건과 수입 할당량 제한을 동시에 요구하는 국가로 스위스(1개 품목)가 있으며, EU도 3개품목, 캐나다는 1 개 품목에 대해 수출증명과 과거 무역경험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한편 부가조건별 TRQ 소진률을 비교해 보면 일반적으로 과거무역경험과 수출증명 동시 충족, 국내산 구매조건, 수출증명의 순으로 TRQ 소진률이 높은 반면 과거 무역경험이나 수입할당량 제한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TRQ 소진률을 보이고 있다.

표 3-8 국별 TRQ수입에 따른 부가조건 현황 (2000년)

국 가	국산 구매 규정	수입 할당량 제한	수출 증명	과거 무역 경험	국산구매 + 수입할당량 제한	수출증명 + 과거무역경험	조건 없음	총 계
호 주	0	0	0	0	0	0	2	2
캐나다	0	1	0	2	0	1	17	21
도미니카	0	0	0	7	0	0	1	8
콜롬비아	33	0	0	0	0	0	34	67
E U	0	0	22	15	0	3	47	87
헝가리	0	54	0	0	0	0	5	59
일 본	0	0	0	18	0	0	2	20
한 국	0	0	0	1	0	0	63	64
노르웨이	0	10	0	0	0	0	222	232
스위스	11	3	0	0	1	0	13	28
폴란드	0	31	0	0	0	0	78	109
태 국	0	0	0	4	0	0	19	23
미 국	0	0	2	1	0	0	51	54
국가전체	48	106	24	63	1	4	1119	1365

자료: 전계서

제3절 DDA 농업협상에서의 논의동향

1. 개요

UR 농업협상은 1947년 GATT가 발족되고 7차례에 걸쳐 추진되어온 그 동안의 다자간 무역 자유화 협상과는 달리 농산물 교역에 만연하던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관세화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TRQ를 설정하고 이를 수입국의 수출국 시장접근기회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실제 UR 농업협정문의 이행에 들어가자 농산물 수출국들은 수입국들의 관세상당치의 과다 계상으로 인한 수입금지적 관세 부과, TRQ 물량의 저조한 소진률, 국영무역 등 다양한 TRQ 관리방식을 통한 수입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시장 개입 및 관리무역 등으로 UR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의 성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소위 농산물 수출국들은 새로운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의 제안을 통해 우선적으로 농산물 관세의 대폭적 감축을 주장하였다. 농산물의 평균적인 관세 수준이 공산품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관세를 대폭 낙감할 수 있는 공식에 의한 관세인하를 주장하였으며, 동시에 국영무역 등을 통한 TRQ 물량에 대한 수입관리가 무역을 왜곡하거나 제한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제정과 TRQ 물량의 대폭 확대를 요구하였다. 특히, 새로운 WTO 농업협상에서 농산물 수출국들은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을 통한 실의 확보를 위하여 시장개방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농산물에 대한 국가간, 품목간 관세 격차 문제, 주요 민감품목에 대한 수입국의 고율관세 문제, 가공단계에 따른 관세누진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추가하여 관세부과의 단순성과 투명성 확보, TRQ 물량의 낮은 소진률 제고 대책, TRQ 관리방식에 대한 규율 강화 등을 우선적 협상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일본, EU, 노르웨이, 스위스 등 농산물 수입국들은 관세감축이나 시장접근기회의 확대 등 시장개방의 폭과 방식은 각국의 농업여건과 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 등을 고려하여 모든 회원국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신축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수입국들은 UR 이후 비관세장벽의 철폐의 대가로 출현한 TRQ 제도가 농산물 교역 확대와 수출국의 이익에 크게 기여해 왔음을 전제로 각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TRQ 관리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각국의 시장여건과 품목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므로 이를 제약하는 엄격하고 획일적인 규범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상의 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현재 DDA 농업협상에서 수출입국간 의견 대립이 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핵심 논쟁의 하나는 TRQ물량의 확대 및 TRQ 관리방식에 관한 것이다. 특히 DDA 농업협상에서는 협약 TRQ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이 협상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첫째는 실질적 시장접근수준의 확대에 대한 것이다. 협약 TRQ제도하에서 보장된 TRQ물량의 증량 및 TRQ물량에 부과되는 쿼터내관세율의 감축 내지는 철폐, 그리고 TRQ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물량에 부과되는 쿼터밖관세의 감축에 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출국들의 기본 입장은 농산물 무역의 실질적인 자유화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TRQ물량 확대와 함께 낮은 TRQ 소진률을 보이는 품목에 대해서는 쿼터내관세의 대폭 감축 내지는 철폐, 그리고 TRQ물량을 초과하는 수입량에 부과되는 고율의 쿼터밖관세의 대폭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TRO 물량 확대와 관련하여 케언즈그룹은 선진국의 경우 소비량의 20%까지 TRQ물량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¹⁰, 미국은 모든 TRQ물량을 UR 이행최종년도 양허수준에서 20%까지 늘리고, 이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반해 수입국들은 각국이 처한 농업상황을 고려하여 소폭의 점진적이고 신축적인 시장접근개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둘째는 TRQ물량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TRQ관리에 대한 규율 강화에 대한 것이다. TRQ 관리방식과 관련하여 수출국들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이에 대한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EU 등 수입국은 규율 강화의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TRQ관리에 대한 규율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수출입국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나 모든 회원국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통일된 TRQ 관리방식의 규율 마련에 대해서는 의견이 크게 대립되고 있다. 특히, TRQ 관리방식 가운데 농산물 수출국에 의해 가장 무역 왜곡적 TRQ관리제도로 인식되고 있는 수입국영무역제도와 관련하여 규율강화 문제가 주요 협상쟁점의 하나인데, 농산물 수출국인 미국과 호주 등 케언즈그룹은 수입국영무역을 통한 독점적 수입권 철폐 및 규율 강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일본 등 수입국영무역을 운영하

10 케언즈 그룹국가를 대표하는 호주는 지난 2002년 9월 협상에서 선진국의 경우 TRQ는 국내 소비량을 기준으로 이행 첫해에는 10%를 증량(Down Payment)하고, 향후 5년간 10%를 더 증량하여 총 20%를 늘리되, 개도국은 Down Payment 없이 9년 동안 14% 늘릴 것을 제안하였음.

고 있는 수입국들은 이미 WTO 협정내에 효과적인 규범이 존재하므로 별도로 규율 강화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며, 오히려 수출국영무역에 대한 규율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2. TRQ 관련 주요국의 입장¹¹

가. 미국, 캐언스그룹 및 인도 등 수출개도국

미국과 캐언스그룹, 그리고 농산물 수출 개도국들은 기본적으로 TRQ 관리의 엄격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는 수출국의 공급자가 수입국의 최종 수요자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를 저해하는 각종의 장치를 철폐해야 하며, 이러한 입장에서 국영무역을 포함한 생산자단체에 의한 TRQ관리는 철폐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입국 시장에서 수출국의 공급자간 무차별 원칙과 국산과 수입산의 무차별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TRQ 수입시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각종의 요건, 특히 국내산 구매를 조건으로 TRQ물량을 배정하는 행위나 또는 수출을 조건으로 TRQ를 배정하는 추가적인 부가조건의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표 3-9 참조)

TRQ 미소진 문제와 관련하여 미소진시 자동적으로 이를 재분배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TRQ 소진률을 높이기 위하여 쿼터내관세를 대폭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TRQ관리의 전체적인 운영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 수출국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나. 한국,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EU 등 NTC국가 및 수입국

NTC국가 및 수입국들은 기본적으로 TRQ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어느 정도의 규제 필요성은 인정하나 확실적 규범마련 보다는 단계적 신축적인 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수출국에 비해 구체적인 제안은 없는 상태이며, 향후 마련될 TRQ 관리규범은 예측 가능성 · 투명성 · 공정성 및 무차별성 강화에 국한되어야 하며, 동시에 국제시장의 수급상황 및 수입국의 다양한 품목별 국내시장 상황(수급, 가격, 기존질서 등)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11 부록 2를 참조할 것.

표 3-9. TRQ관련 주요국의 기본 입장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Q 물량 확대: 최종 양허기준 20% 증량 · 시장접근세율: TRQ 소진률에 따른 자동적 감축 혹은 철폐 · 수입관리방식: 규율 강화
케언즈 그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Q 물량 확대: 소비량 기준 20% 증량 (개도국은 14%) · 시장접근세율: 관세철폐 · 수입관리방식: 규율 강화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관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Q 관리방식의 투명성, 신뢰성, 안정성을 높이는 일련의 규범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 그러나 다양한 관리방식 인정 필요(경매제 인정)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Q 물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수급동향과 국내소비변화를 고려한 신축적인 TRQ 증량 · 수입관리방식: 다양한 수입관리방식 인정
개도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Q 물량 확대: 선진국의 개도국 농산물에 대한 TRQ 물량 확대 필요 · TRQ 관세: 개도국산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에 특별대우 요구

3. 주요 쟁점별 세부 입장

가. 새로운 TRQ 관리 규범의 마련

TRQ 관리방식이 시장접근을 저해하거나 무역장벽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규범을 강화하거나 또는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과 호주, 캐나다 등 케언즈그룹과 수출국들의 입장이다. 미국, 호주 등 수출국들은 현재 각국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TRQ 관리방식이 잠재적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운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시장접근기회가 그들의 실질적 이익확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있는 규범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특히 미국은 수입허가 절차협정과 일부 WTO 조항의 명료화를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TRQ 관리방식의 투명성 제고를 전제로 각국에게 관리방식 선택의 신축성 및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수입국의 입장이다.

나. 낮은 TRQ 소진율의 제고

TRQ 소진율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미국과 케언즈는 일정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TRQ의 소진율이 일정 수준이하 일 때 자동적으로 발동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예를 들어 TRQ 소진률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쿼터내관세를 인하시켜 TRQ내 물량의 수입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케언즈그룹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여 TRQ 소진율이 낮을 경우 그 원인을 검토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특히 폴란드는 미소진된 쿼터에 대한 쿼터내관세를 50% 자동인하하는 제안을 표명한 바 있다.

다. TRQ 물량 수입시 추가적인 부가조건 문제

미국과 캐나다는 TRQ 관리방식에 추가적으로 부가되고 있는 다양한 조건들이 재검토 내지 철폐되어야 한다고 입장이다. 캐나다는 수입추천물량이나 유효기간의 제한, 특정국에 대한 쿼터 배분 등 부가적 조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미국은 최종사용용도를 지정한다든지, 혹은 국내산과의 혼합규정, 국산품 구매조건, 국내 생산자 통한 배분, 수출조건부 승인 등과 같은 부가조건을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수출 개도국들은 경제단위 미만(즉 수송의 가장 기초단위 이하)으로 TRQ물량이 배분되는 것은 철폐되어야 하며, 인위적인 TRQ 재배정을 제한하는 각종의 규제, 그리고 TRQ배분을 단계적으로 분할해서 배분하는 것은 모두 시장접근을 방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TRQ 물량설정의 세부 단위 문제(캐나다, 쿠바 등 11개 개도국 및 인도 주장)

캐나다와 쿠바, 인도 등 수출국들은 TRQ 물량 설정을 HS 4단위로 하고 그 이하의 세부 단위(예: HS 6단위 이하)에서는 TRQ를 일부러 배정하지 않음으로써 HS 6단위 이하에서는 특정 품목의 TRQ가 설정되지 않는 효과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모든 조치에 대해서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로 총량쿼터를 이용함으로써 특정 품목의 TRQ 수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효과를 지적하는 것으로 HS 세 번별 TRQ 배정이라는 주장에 까지 연결된다. 그러나 사실 모든 세 번별로 TRQ를 설정하기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획일적인 규정으로 만들어진다기보다는 이해당사국간의 양자협의에 의하여 협의 조정될 것으로 본다.

마. 수입국영무역

수입국영무역에 대한 규율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 ASEAN, 멕시코 등의 기본 입장이다. 미국은 수입창구가 하나인 단일의 독점 수입권은 폐지되어야 하며, 품질과 수입처에 대한 결정 등에 대한 단일 수입창구의 투명성 요건 강화를 제안한 바 있다. ASEAN은 국영무역기업의 운영에 대한 규율을 대폭 강화시켜 TRQ 배분과 관리의 무차별적 운영을 제안한 바 있다.

바. 경매에 관한 주요국의 견해

일부 수출국가에서 경매제도가 수출입과 관련하여 모든 수수료 또는 과징금 부과를 제한하는 GATT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특히 수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TRQ 관리의 방식으로 이용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매제 실시로 쿼터내관세와 낙찰가격을 합한 것이 양허표상의 양허관세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매가 자칫 무역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1) 경매제도 금지주장: 캐언즈그룹 중심 수출국

규범적인 측면에서 경매제도는 GATT 제1조(최혜국대우), 제2조(양허표), 제3조(내국민대우), 제8조(수입 및 수출에 관한 수수료절차)를 위반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수입국의 시장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이며, 수출국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없는 제도이므로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2) 경매제도 허용주장: 스위스, EU, 한국 등 수입국

경매제도는 경제이론적으로 시장 지향적인 제도이며, 관리방식 또한 투명하고, 최혜국대우(MFN) 원칙에 충실한(즉, 신규 수출·수입업자에 대한 차별이 없음) 방식으로서 예측가능성이 높은 제도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쿼터내관세율과 쿼터밖관세율의 차이가 클 경우 보다 경쟁적인 시장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정의에 부합하는 쿼터렌트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제도임을 강조하면서 쿼터렌트 또는 수입차익은 추가적인 부과금(levy)이 아니라 쿼터지대(quota rent)로서 이의 배분은 국내적 문제이므로 국제법적 측면에서도 문제없다는 지적이다.

4. 하빈슨 초안의 주요 내용

지난 8월 1일 DDA 농업협상의 골격이 147개 WTO 회원국에 의하여 채택되었으나, TRQ 관리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단계에서 TRQ 관리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자체의 특성상 기술적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델리티가 확정되는 단계에 가서도 구체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특정 TRQ 관리방식에 대해서 사용 유·무를 논의하여 설정하기 보다는 TRQ 미소진시의 일반 절차라든지 또는 TRQ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일반 규정의 제정 및 무역왜곡적 TRQ 관리관행에 대한 제재규정 등에 관한 논의가 핵심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논의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지난 2003년 7월 발표된 하빈슨초안에서의 TRQ 관리 지침이다. 비록 하빈슨초안이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TRQ 관리에 있어서 만큼은 그 이후의 논의에서도 가치있는 자료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타결될 TRQ 관리방식에 대한 논의도 근본적 하빈슨초안에 기초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가. TRQ 관리의 일반 요건 및 세부 요건¹²

하빈슨초안은 “TRQ 설정에 따른 시장접근기회가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9가지 일반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 ① TRQ 약속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함.
- ② TRQ 수입에 국내산 구매조건 또는 이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조건의 부과 금지
- ③ TRQ 수입에 있어서 계절적인 수입제한 부과 금지
- ④ TRQ 수입에 특정 품목의 수입을 배제하거나 최종 소비용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되어서는 안됨
- ⑤ 수입업자(체)가 상업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TRQ가 관리되어서는 안됨
- ⑥ 최혜국대우를 받는 수출공급국로부터의 TRQ수입만이 TRQ약속에 따른 수입으로 인정

12 WRO, ""Reported by the Chairman, Mr. Stuart Harbinson, to the TNC" TN/AG/10 참조

- ⑦ TRQ 수입에 있어서 수출 또는 재수출 조건 부과 금지
- ⑧ 수입업자의 차등대우 금지
- ⑨ TRQ 수입과 관련하여 GATT 1994에서 허용한 이외의 부과금, 예치금, 기타 재정상 의무가 부과되어서는 안됨.

또한 일반 요건에 추가하여 TRQ 관리방식을 크게 수입허가가 요구되는 방식과 수입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방식의 두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하여 다음과 특정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1) 수입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TRQ 관리

- ① TRQ는 연초부터 제공되어야 하며, 쿼터내관세가 적용될 기회가 유보될 경우 사전에 적절한 시간을 두고 공시해야 함

2) 수입허가가 요구되는 TRQ 관리

- ① TRQ는 연도초에 수입이 가능하도록 개도국과 지리적으로 먼 곳에 위치한 수출공급국을 위하여 사전에 충분히 일찍 공시해야 함
- ② 소매판매나 기타 다른 최종용도를 위한 실수요자의 TRQ 수입권에 대한 제한 금지
- ③ TRQ 수입권은 [8]개월간 유효하며 관리기관의 허가없는 TRQ 수입권의 이전 금지
- ④ 미소진 TRQ의 재할당(당해연도에 수입이 가능하도록)

마지막으로 TRQ에 대한 국별할당을 할 경우 특정 국가에 할당된 물량이 소진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미소진될 경우 미소진 또는 그 잔여분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에게 재배정되도록 제시하고 있다.

TRQ 관리에 대한 이와 같은 하빈슨초안의 지침은 우리나라의 TRQ 관리제도 개선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적으로 TRQ 수입에 추가적으로 부가되는 국내산 구매 또는 수출 및 최종용도 제한이라는 조건은 향후 더 이상 운용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위와 같은 추가적인 조건을 부가하여 TRQ를 관리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는 위의 일반 요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쌀의 경우 최종소비용이 아닌 가공용으로의 TRQ 수입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쌀 협상에 관계없이 현행 MMA 수입 및 관리는 개선이 요청된다.

한편 수입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세부요건에 따라 TRQ 수입권의 기간에 대해서도 제도적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수입국영무역에 관한 사항

하빈슨초안은 수입국영무역에 대하여 WTO 자체의 국영무역조항(GATT 17조)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조항의 제정을 의도하고 있다. 기존에 있는 농업협정문 4조(시장접근)에 한 개의 항(3항)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4조 3항

- (a) 회원국은 수입국영무역이 GATT 17조 및 GATT 1994, 그리고 관련 WTO 규정에 일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장해야 함. 이에 해당하는 국영무역에는 배타적 권리 또는 이에 준하는 권한을 향유하고 있는 정부 또는 비정부 수입국영기업(마케팅보드 포함)와 실제 그러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구매 및 판매행위를 통하여 수입가격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 및 행위가 포함됨.
- (b) 정부의 국영무역기업은 시장접근양허의 혜택과 농업협정문 4조 2항의 조치의 혜택을 침해하거나 무효화시키는 방법으로 운용되어서는 안됨
- (c) 정부의 국영무역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그 기업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농업위원회에게 통보해야 함
- (d) 정부의 국영무역기업은 개도국의 식량안보 및 생계안전, 농촌발전 등을 추구하는 목적을 침해해서는 안됨. 이에 대해 개도국의 우대조치가 적용됨.

수입국영무역에 대한 이러한 하빈슨초안의 움직임은 현재 국영무역형태로 운용되고 있는 TRQ 관리 방식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것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TRQ 관련 국영무역기업의 관리 및 운영 형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WTO에 통보하게 되어 사실상 수입국영무역에 의한 TRQ 관리는 기존의 GATT 17조에 추가하여 농업협정문의 조항에 직접적인 규제에 놓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5. 향후 협상 전망과 TRQ 관리에 대한 시사점

향후 TRQ 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논의는 상당부분 기술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TRQ가 가지는 시장접근기회의 실질적 확보라는 측면에서 상당 부분 수출국들의 이해에 맞도록 규제가 가해질 것으로 보이며, 기존에 허용되고 있던 TRQ 수입에 부가되는 추가적인 세부 요건들은 앞으로 활용 가능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관련 협상에서 우리나라의 TRQ 관리의 일반 요건 및 수입국영무역에 대한 규제조치들이 수입국의 입장에서 국내시장의 안정차원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배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적으로 협행의 TRQ 관리제도는 상당 부분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영무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품목과 수입허가제 형식으로 운영되는 품목, 마지막으로 최종소비 용도를 규제하는 품목과 국내산 구매라든지 수출조건을 부가하는 품목의 경우 DDA에서의 논의를 고려하여 적절한 개선방향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4장 우리나라의 TRQ 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TRQ 품목의 현황 및 수입관리 방식

1. TRQ 품목의 현황

우리나라는 UR 농업협상의 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국별 농산물 이행계획서를 통해 쌀, 보리, 고추, 마늘, 쇠고기 등 67개 품목(군)에 대해서 시장접근률량(CMA/MMA)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오렌지쥬스가 2004년에, 닭고기, 토끼고기, 쇠고기 등이 2000년부터 완전 개방되면서 TRQ내 세율과 TRQ밖 세율이 일치하게 되어 현재 우리나라에는 63개 품목(군), HS 10단위로 190개 품목에 대해 TRQ를 설정·운영하고 있다.(표 4-1 참조)

표 4-1 우리나라의 TRQ 관리대상 품목

수입관리방식	최소시장접근(MMA) 품목	현행시장접근(CMA) 품목	
지정기관(5)	쌀, 마늘, 양파, 잣(4)	참깨(1)	
수입권 공매(7)	오렌지, 감귤류, 연유, 전지분유, 밤, 대추(7)		
실수요 자배정 (41)	자격 제한 (22)	보리, 종우, 종돈, 골분, 녹차, 맥아, 변성전분, 고구마전분, 유당, 기타 배합사료, 보조사료 등(13)	종제, 유장, 버터, 맥주액, 생사, 옥수수 등(9)
	신청순 (19)	감자, 조란, 잠종, 묽류, 종자용 감자, 고구마, 조 등(10)	매니옥펠리트, 종자용옥수수, 감자분, 인조꿀, 누에고치(9)
혼합 방식 (10)	지정기관+ 수입권공매 (3)	생강(1)	땅콩, 메밀(2)
	지정기관+ 실수요배정 (3)	고추(1)	대두, 녹두/팥(2)
	수입권공매+ 실수요배정 (3)	천연꿀, 참기름(2)	탈지분유(1)
	자격제한+ 선착순 (1)	밀전분(1)	-
총계	63	39	24

주: ()내는 품목수

자료: 농림부 농업협상과, WTO 농업협상업무자료(2004)

TRQ 품목의 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근거 법률은 양곡관리법(제12조, 13조), 축산법(제24조, 25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15조), 종자산업법(제142조), 사료관리법(제6조), 인삼산업법(제20조), 산림법 등이며, 보다 구체적인 요령은 농림부 고시 제2003-56호(농축산물 시장접근률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요령)으로 매년 말에 이듬해 고시가 발표된다.

한편 TRQ가 설정된 63개 품목을 당초 UR 농업협정 기준에 따라 최소시장접근(MMA) 또는 현행시장접근(CMA)을 기준으로 재분류해 보면, 기준 기간¹³인 1988~90년에 수입이 전혀 없었거나 또는 있다고 해도 당시 국내 소비량의 3% 미만이었던 품목에 설정되었던 MMA는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39개가 있으며, 3% 이상 수입되던 품목에 설정했던 CMA 관련 품목은 나머지 24개 품목이다.

2. TRQ 품목의 수입관리 방식

우리나라가 사용하고 있는 TRQ 관리방식은 지정기관 배정방식, 수입권공매, 수입자격제한 및 선착순 배정방식과 함께 이들의 방법을 혼용하는 방식 등 총 5가지로 분류된다.(표 4-1 및 4-2 참조) 또한 우리나라는 총량쿼터를 기본으로 TRQ를 운용하고 있어 TRQ 물량은 대부분 용도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TRQ내의 세번별 혹은 용도별 물량배정은 주로 과거 수입실적이나 국내생산 실적 등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별수입 할당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공급국가별 쿠터를 사용하지 않고 총량쿼터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기준기간동안의 국별공급 비율을 고려하여 주요 품목에 대해 국별 수입쿼터를 인정하는 경우(예: 미국, EU)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WTO의 최혜국대우 원칙에 보다 적합한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가. 지정기관 배정방식(국영무역)

지정기관 배정방식은 정부가 지정한 기관만이 TRQ 수입권을 갖고, 해당 품목을 수입하여 국내시장에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차익을 정부에 납부하는 수입관리방식이다. 정부는 지정기관으로 설정된 기관에게 TRQ 물량을 배정하고 해당 기관에 TRQ의 독점적 수입권한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지정기관배정방식은 사실상 국영무역에 의한 TRQ 관리방식과 다름없다.

13 UR 농업협정문상의 기준기간은 1986~88년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행계획서 제출시 시장개방분야에서 1988~90년을 기준 기간으로 사용했다.

정부가 지정한 수입지정기관은 전문성과 경험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이전부터 해당품목을 수입하던 기관 내지 관련 단체들로 현재 정부(농림부, 조달청), 농수산물유통공사,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등 4개 기관이며, 이들 기관이 독점적으로 해당 품목을 수입하여 판매하고 이익금을 농안기금(또는 해당 생산자단체 적립금)에 적립하여 농업투자 재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국내 농산물의 수급안정 및 생산농가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¹⁴

표 4-2 우리나라의 TRQ 관리방식

총 계	품 목	수입관리기관	비 고
	63품목	21개 기관	
지정기관배정 (5품목)	쌀, 마늘, 양파, 잣, 참깨	농림부, 유통공사, 산림 조합	지정된 기관만이 수입 판매 및 수입 이익금 징수
수입권공매 (7품목)	오렌지, 인삼, 감귤류, 연유, 밤, 전지분유, 대추	농협, 유통공사, 산림조합, 유가공협회	수입권 경매 주관기관이 주최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 받아야 수입 가능
실 수요자 배정 (41품목)	자격 제한 (22품목)	보리, 종우, 종돈, 풀분 등	유가공협회, 사료 협회, 단미사료 협회, 종축개량협회 국내산구매, 가공시설확보, 수입실적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이 있는 자에게 배정
	신청순 (19품목)	고구마, 감자, 종자류, 묘목류	종자관리소, 대한참사회 신청순으로 물량배정
혼합 방식 (10품목)	지정기관+ 수입권공매 (3품목)	생강, 땅콩, 메밀	유통공사 국영무역방식이나 일부 물량은 공매제로 운영
	지정기관+ 실수요자배정 (3품목)	고추, 녹두/팥, 대두	유통공사 국영무역방식이나 일부 물량은 실수요자 배정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3품목)	천연꿀, 참기름, 탈지분유	유통공사, 농협 수입공매제방식이나 일부 물량은 실수요자 배정
	자격제한+ 신청순배정 (1품목)	밀전분	농협중앙회, 의약품수출입협회 수입실적기준 및 선착순 혼합운영

자료: 농림부 농업협상과, WTO 농업협상업무자료(2004)

14 오렌지, 감귤류, 인삼은 수입개방으로 직접 피해를 입는 생산자단체가 수입을 독점하다가 최근 수입권공매로 전환되었다.

대상 품목은 쌀(조달청, 농수산물 유통공사), 마늘(농수산물 유통공사), 양파(농수산물 유통공사), 참깨(농수산물 유통공사), 잣(산림조합)의 5개 품목으로 주로 시장개방에 따른 국내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이다¹⁵

나. 수입권 공매

수입권공매란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통해 TRQ 수입권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수입권공매를 주관하는 기관이 있고 이 기관이 주최하는 공매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아 수입업자(체)가 TRQ 물량을 수입할 수 있다. 대상품목은 지정기관배정방식이 아닌 품목 가운데 국내외 가격차가 커서 TRQ수입으로 상당한 수입차익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로 전지분유(3), 연유(4), 인삼류(19), 밤(2), 대추(2), 오렌지(1), 감귤류(3) 등 7개 품목이다.¹⁶

공매주관기관으로서 전지분유와 연유는 한국유가공협회가, 밤, 대추는 산림조합이 수입권공매를 주관하고 있다. 한편 인삼은 종전에 농협에 의한 지정기관방식으로 운영하다가 수입권공매로 바뀌었으며(공매주관기관: 농협중앙회), 오렌지와 감귤류는 제주감귤협동조합이 지정기관 배정방식으로 TRQ를 운영하다 2002년부터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수입권의 공매방식은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수입권의 전매는 금지되어 있다. 낙찰자가 낙찰 받은 물량을 전량 수입하지 않을 경우 수입이행보증금으로 제시된 낙찰대금 총액의 10%는 관련 기금에 귀속되며, 향후 3년간 수입권공매에 입찰을 금지시킬 수 있는 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다. 실수요자 배정

실수요자 배정방식은 해당 품목의 TRQ 수입권을 수입관리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순서별로 배정하거나 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가진 업체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수입차익의 환수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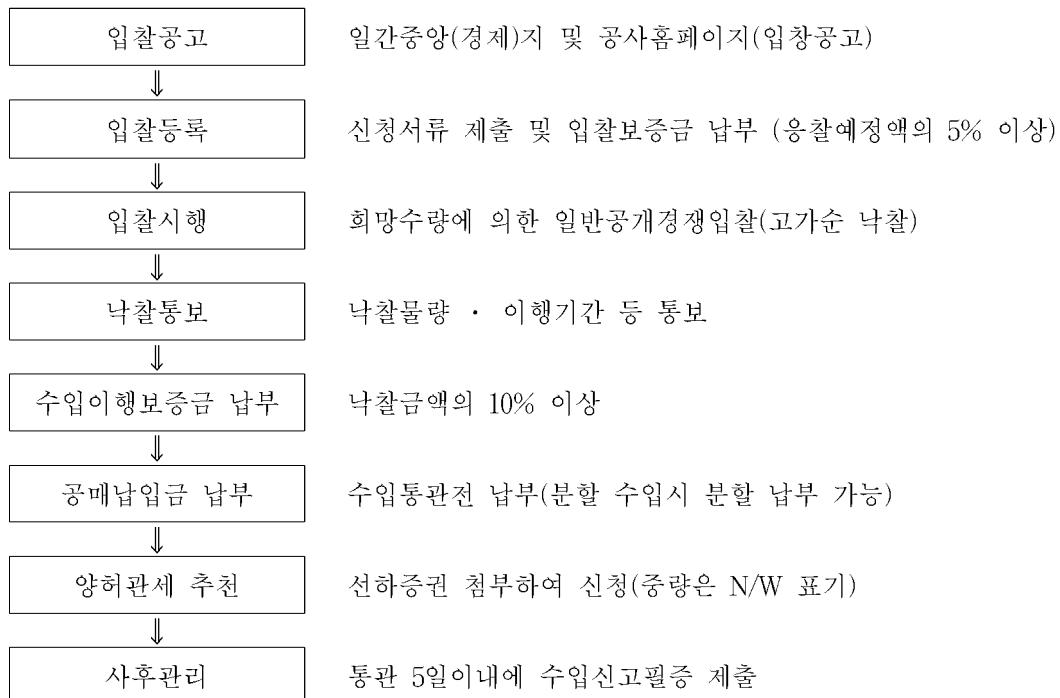
15 UR 이행 초기에는 총 18개 품목이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점차 줄어들어 있다. 대표적으로 쇠고기가 2001년부터 자유화되어 지정기관 배정방식에서 제외되었으며, 지정기관 배정방식에 의한 TRQ 소진율이 낮아 수출국으로부터 통상압력을 받았거나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권 공매제도(예: 오렌지)나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의 전환(예: 감자)되고 있으며, 순순한 지정기관 배정방식에서 다른 방식을 혼합 운영하는 품목(예: 생강, 고추)이 증가하고 있어 현재 순수한 지정기관 배정방식의 품목 수는 5개 이다.

16 ()안은 HS 10단위 기준 품목의 개수임.

대상 품목은 주로 최소 비용으로 수입함으로써 국내 농업의 생산성 증가(생산비 인하측 면에서) 및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품목들이 대부분이다. 수입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으로 보리(8), 종우(3), 종돈(1), 종계(3), 유장(7), 버터류(2), 골분(1), 녹차(2), 맥아(2), 맥주맥(1), 매니옥(4), 옥수수(7), 기타 가공곡물(11), 육·설분(1), 생사(4), 변성전분(8), 매니 옥전분(1), 고구마전분(1), 유당(2), 에틸알콜(1), 기타 배합사료(1), 보조사료(4) 등 22개가 있으며, 국내산을 구매한 실적 및 일정한 가공시설의 확보 등이 주요 자격제한 조건이다.

선착순으로 배정하는 것은(단 국내시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과거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배정 가능) 감자(종자용이 외), 조란, 잠종, 묘목류(4), 고구마(4), 조(종자용), 사료용근채류(3), 참깨유박, 매니옥펠리트, 기타 서류, 호밀(종자용), 귀리(종자용), 옥수수(종자용)(2), 수수(종자용), 감자분(2), 인조꿀, 누에고치 등 19개 품목이다.

그림 4-1 수입권 공매절차



라. 혼합방식

혼합방식은 위에서 언급한 지정기관 배정방식, 수입권 공매, 실수요자 배정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생강(1), 땅콩(3), 메밀(2)의 경우 TRQ의 일부 물량은 지정기관 배정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나머지 TRQ 물량은 수입권 공매를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고추(1), 대두(2), 녹두·팥(4) 등은 TRQ의 일부를 지정기관인 유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TRQ는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천연꿀, 참기름, 탈지분유(4)는 수입권공매와 실수요자 배정을, 그리고 밀 전분(3)은 과거 수입실적에 의한 배분과 선착순 배정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제2절 TRQ 수입관리 및 실적

1. 개황

2002~2003년을 기준으로 TRQ가 설정된 63개 품목 가운데 약 52%에 해당하는 33개 품목의 TRQ 소진율은 90% 이상이다. 90%이상의 높은 수입 이행률을 보인 품목은 쌀, 양파, 잣, 참깨 등 국영무역 관련 4개 품목과 오렌지, 인삼, 대추 등 수입권공매 관련 3개 품목, 그리고 맥아, 전분류, 맥주맥, 감자분 등 실수요자 배정 품목과 메밀 대두, 천연꿀, 참기름 등 혼합방식의 26개 품목이다.(표 4-3 참조)

반면 30% 이하의 저조한 수입 이행률을 보인 품목은 감귤류, 연유, 밤, 보리, 조란, 잡종, 묘목류, 인조꿀, 고구마 등으로 이를 품목들은 대부분 국내 수요가 없거나(혹은 미미) 국내산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이다.

한편 우리나라에는 일부 TRQ 품목에 대해서는 TRQ 설정의 기준년도(1988~90년)와 실제 이행년도(1995년)와의 시차와 그 동안의 국내 수급 변화로 인하여 이행계획서상의 TRQ 물량이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 TRQ 물량을 증량시켜 운영해 왔다. 이러한 품목은 2004년 기준으로 전체 TRQ 품목 63개 가운데 14개 품목으로 감자, 녹두·팥, 옥수수, 고구마전분, 대두, 참깨, 사료용 균체류, 유당, 보조사료 등이다. TRQ 물량의 증량 원인은 대부분 국내 물가안정에 필수적이거나 외화획득용이 주요 이유이다.

표 4-3 TRQ 관리방식별 소진율(2002/2003년)

	90%이상	70~90%	30~70%	30%이하
지정기관 (5)	쌀, 양파, 잣, 참깨	마늘		
수입관공폐 (7)	오렌지, 인삼, 대추	전지분유		감귤류, 연유, 밤
실수요 배정 (22)	맥아, 변성전분, 매니옥전분, 고구마전분, 유당, 에틸알콜, 배합사료, 보조사료, 맥주맥, 매니옥 등	종제, 유장 등	녹차, 생사, 종돈 등	보리, 종우, 육분 등
선착순 (19)	귀리종자, 옥수수종자, 호밀종자, 기타서류, 감자분, 사료용 근채류 등	-	-	조란, 잠종, 묘목류, 뽕나무, 누에고치, 인조꿀, 고구마 등
혼합방식 (10)	메밀, 대두, 녹두/팥, 밀전분, 천연꿀, 참기름	생강, 탈지분유	땅콩, 고추	-

주: 수입관리방식별 ()내 수치는 품목수이며, 2003년 혹은 2002년의 최근실적을 사용함.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내부자료로 부터 정리

2. 주요 품목별 수입이행실적

가. 고추

고추는 농수산물 유통공사가 지정기관이 되어 국영무역 형태로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TRQ 수입이행률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고율의 관세를 물고 들어오는 수입량이 증가하자 설정된 TRQ 물량중 일부를 실수요자 배정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TRQ 이행 초기연도에는 100%에 달하는 이행실적이 2000년을 고비로 급감하여 50%대로 하락했고, 2002년에 31%까지 떨어졌으나, 2003년에는 다시 67%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러한 수입이행률의 변동은 국내생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99년 이후 연속된 국내 생산의 증가가 및 고추 대체품목(고추가루, 고추장, 혼합조미료, 고추관련 소오스 등)의 수입 증가가 2000년 이후 고추의 TRQ 이행률 저조의 원인으로 판단된다.(표 4-4 참조)

표 4-4 고추의 수입이행실적

단위 : 톤, %

CS상 TRQ 물량(A)	수입 실적					생산량 (천톤) *100	농판가격 (원/600g)	
	저율 관세(B)	고율 관세	기타	계	이행률 (B/A) *100			
2003	6,866	4,576	8,468	17	13,061	66.7	132	3,711
2002	6,546	2,000	6,085	114	8,199	30.5	193	2,824
2001	6,227	3,614	5,625	44	9,283	58.0	180	3,924
2000	5,908	3,015	3,698	8	6,720	51.0	194	3,215
1999	5,588	5,376	1,504	1	6,882	96.2	215	3,104
1998	5,269	5,213	231	-	5,444	98.9	147	4,024
1997	4,950	3,770	278	244	4,291	76.2	201	2,985
1996	4,630	4,490	-	-	4,490	97.0	219	3,592
1995	4,311	4,281	-	-	4,281	99.3	193	3,697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내부자료로 부터 정리, 농림업 주요통계 2004

1997년 TRQ 이행률 하락은 국내생산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나, 1999년 이후 TRQ내 물량이 채워지지 않은 채 TRQ밖의 고율 관세 수입량이 상당한 수준 있었다는 것은 외형상 고추의 TRQ 관리가 무역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는 관세저평가 등을 통하여 고율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됨과 동시에 실수요자 운영방식으로 바뀌었음에 불구하고 국내 수급 및 가격상황에 따라 수입이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마늘

마늘도 고추와 마찬가지로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의한 지정기관 배정방식(국영무역)으로 TRQ가 관리되었으나, 최근 들어 일부 TRQ 물량에 대하여 실수요자배정 방식을 겸하고 있다.

마늘은 국내 생산이 급증한 일부 연도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높은 수입이행률이 보이고 있으며, 지난 9개년(1995~2003년) 평균 수입이행률은 85.2%에 이른다.(표 4-5 참조) 국내 생산이 평년보다 저조했던 1997~98년의 경우 100%의 수입이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한·중 마늘협상의 결과가 이행되었던 2001~02년 수입이행실적도 100%를 달하고 있다. 반면 국내 생산이 급증했던 1999년에는 수입이행률이 30%대 까지 급락하였다. 주요 수입국은 중국으로 특히 산동성 마늘이 국내산과 유사하여 산동성에서 대부분 수입되고 있다.

표 4-5 마늘의 수입이행실적

단위 : 톤, %

CS상 TRQ 물량(A)	수입 실적					생산량 (천톤)	농판가격 (원/접)	
	저율 관세(B)	고율 관세	기타	계	이행률 (B/A) *100			
2003	13,824	9,924	884		10,808	71.8	379	4,408
2002	13,181	13,180	252		13,432	100.0	395	3,924
2001	12,538	12,618	131		12,749	100.6	406	4,276
2000	11,895	11,892	2,860		14,752	100.0	474	3,241
1999	11,252	4,100	12,620		16,720	36.4	484	4,559
1998	10,609	10,609	17,021		27,630	100.0	394	8,156
1997	9,966	9,906	3,028		12,993	100.0	394	6,002
1996	9,328	7,600	-	-	7,600	81.5	456	4,913
1995	8,680	6,674	-	-	6,674	76.9	462	7,865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내부자료로 부터 정리, 농림업 주요통계 2004

다. 양파

양파도 고추, 마늘과 같이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의한 지정기관 배정방식(국영무역)으로 TRQ가 관리되었으나, 최근 들어 일부 TRQ 물량에 대하여 실수요자배정 방식을 겸하고 있다. 고추와 마찬가지로 양파의 TRQ 수입 이행률도 국내 생산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다.

1996년 국내 생산 급감으로 양파의 가격이 단기 급등하자 CS에 제시된 TRQ물량 이외 추가로 약 4만 톤을 늘려 TRQ 수입 이행률이 305%까지 올라간 반면 2001년 생산이 급증하자 TRQ 수입 이행률은 18%로 추락하기도 하였다. 1995~2003년 평균 양파의 수입 이행률은 90%를 육박하고 있다. (표 4-6 참조) 주요 수입국은 미국, 스페인, 뉴질랜드, 중국이며, 2000년 이후 중국으로부터 전량 수입되고 있다.

표 4-6 양파의 수입이행실적

단위 : 톤, %

	CS상 TRQ 물량(A)	수입 실적					생산량 (천톤)	동판가격 (원/20kg)
		저율 관세(B)	고율 관세	기타	계	이행률 (B/A) *100		
2003	19,726	21,609	67,579		89,188	109.5	745	4,408
2002	18,806	5,556	6,811		12,367	29.5	933	3,924
2001	17,886	3,220	7,776		10,996	18.0	1,074	4,276
2000	16,967	9,710	10,396		20,106	57.2	878	3,241
1999	16,047	16,005	6,614		22,619	99.7	936	4,559
1998	15,128	7,001	4,760		11,761	46.3	872	8,156
1997	14,208	13,730	15,256		28,986	96.6	740	6,002
1996	13,289	40,514	-	-	40,514	304.9	579	4,913
1995	12,369	12,369	-	-	12,269	100.0	975	7,865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내부자료로 부터 정리, 농림업 주요통계 2004

라. 참깨

참깨는 국내 생산이 수요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대표적 품목으로 CS상에 제시된 TRQ 물량을 초과하여 TRQ를 증량해 준 대표적인 품목이다¹⁷. 일부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의하여 지정기관 배정방식으로 관리되며, 다른 일부는 수입권공매방식을 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 이행률은 100%에 육박하고 있으며(늘어난 TRQ를 기준으로 수입이행률을 계산하면 1995~2003년 평균 96%임), 수입권공매를 제외하면 고율관세가 적용되어 수입되는 물량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표 4-7 참조)

주요 수입국은 중국, 인도, 수단으로 최근 들어 인도 및 수단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표 4-7 참깨의 수입이행실적

단위 : 톤, %

CS상 TRQ 물량(A)	수입 실적					생산량 (천톤)	동판가격 (원/4kg)
	저율 관세(B)	고율 관세	기타	계	이행률 (B/A) *100		
2003	6,731	81,150	114	18.0	81,282	1,206	23.8
2002	6,731	62,556	428	107.4	63,091	929	31.0
2001	6,731	77,074	287	6.1	77,368	1,145	31.7
2000	6,731	69,838	119	163.0	70,120	1,038	24.2
1999	6,731	59,748	23	1,196.3	60,968	888	27.7
1998	6,731	54,002	40	0.3	54,043	802	33.4
1997	6,731	65,012	80	100.0	65,192	966	29.4
1996	6,731	68,477	-	-	68,477	1,017	31.9
1995	6,731	41,909	-	-	41,909	623	27.9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내부 자료정리, 농림업 주요통계 2004

17 1995년부터 35,000여톤을 증량했고, 이후 계속 늘어와 2003년 현재 당초 CS상에 제시된 6,731톤에 추가하여 약 8만 2천톤이 TRQ로 설정되어 있다.

3. 수입차익의 징수와 기금조성

TRQ 수입으로 발생하는 수입차익은 지정기관의 독점적 수입(국영무역, 생산자단체)이나 수입권공매를 통해 조성하여 농안기금과 축발기금, 감귤류수입판매기금, 농특회계 등 관련기금에 납입한 후, 그 재원을 이용하여 국내 수급관리나 농산물의 가격안정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2002년도 기준으로 TRQ관리를 통해 발생한 수입차액은 약 2,329억원으로 전년대비 4.4% 감소하였다. 이러한 TRQ 관리에 의한 수입차액은 전반적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매년 고율관세가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축산물의 경우(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등)의 2001년부터의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쿼터내세율과 쿼터밖세율이 동일 해져 수입차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2002년 기준으로 수입이익금이 편입되는 주요 기금의 조성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수입 이익금의 98.6%에 해당하는 약 2,296억원이 농안기금에 할당되고 있으며, 나머지 감귤류 수입 판매기금, 축발기금, 농특회계는 전체 이익금의 1.4%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4-8 수입관리방식별 수입이익금 징수내역(2002년)

단위: 억원

구 분	2002년	구분	2002년	
총 계	2328.6	총 계	2328.6	(100.0)
농안기금	2296.2	국영무역	1671.3	
축발기금	5.0	수입권공매	656.9	
감귤류수입기금	22.7	외화획득용	0.4	
농특회계	4.5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2004), 내부자료를 이용해 재구성

농안기금 조성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국내외 가격차가 매우 커 TRQ 소진율이 높은 참깨, 대두로 2002년 기준으로 전체 농안기금 조성액의 약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외 수입차액이 농안기금에 불입되는 주요 품목은 팥, 고추, 마늘, 양파, 땅콩, 생강, 인삼 등이다.

축발기금 조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던 쇠고기가 2001년부터 수입 자유화됨에 따라 축발기금으로 편입되는 수입이익금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현재는 천연꿀 수입권 공매를 통한 이익금이 축발기금 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오렌지 수입으로 조성되는 감귤류수입판매기금도 오렌지 관세의 감축과 함께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02년 기준으로 TRQ 관리방식별 수입이익금 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수입이익금 2,329 억원의 약 72%에 해당하는 금액이 TRQ의 독점적 수입권을 부여하는 지정기관 배분방식인 국영무역에 의해 발생되었으며, 나머지 28%는 수입권공매를 통해 조성되었다.

최근 들어 수입이익금에서 수입권공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는 기존 국영무역이나 생산자단체 등 지정기관으로부터 독점적으로 수입되던 품목의 일부 혹은 전부가 수입권공매제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3절 우리나라 TRQ 관리의 문제점

우리나라의 현행 TRQ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함에 있어서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시각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첫째, 국내적으로 TRQ관리의 중요한 정책 목표를 검토하여 그것이 지금까지 효과적으로 달성되어 왔는가의 하는 측면이다. 두 번째는 TRQ 관리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으로 주로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시각이다. 우리 경제 전체의 측면에서 굳이 TRQ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에 중점을 두었다. 세 번째는 해당 품목의 국내외 수급 및 가격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내수급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하였고, 마지막으로 대외적인 측면에서 주요 이해당사국의 통상마찰 정도와 향후 TRQ 관리에 대한 DDA 농업협상의 타결 전망 등을 고려하였다.

특히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WTO 규범이 가지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현재 DDA 농업협상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TRQ 관리방식의 규율 강화 움직임 등을 외부제약으로 고려하였다.

1. WTO 농업위원회, DDA 농업협상 등 대외 측면에서 제기된 문제점

지난 1996년부터 UR 농산물협상 결과의 이행을 점검하기 위한 WTO 산하 농업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때 TRQ 관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이 때 논의된 주요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자단체에 의한 TRQ 관리는 자칫 투명하지 못하고 또한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수출국들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TRQ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에 의한 관리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견해는 DDA에서 결국 하빈슨초안에서 제시된 TRQ 관리지침에 명시화되었고 앞으로의 논의에서도 생산자단체에 의한 TRQ 관리는 불가 내지는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경우도 생산자단체라고 볼 수 있는 감귤조합과 농업협동중앙회, 또는 기타 생산자단체나 협회에서 주관하는 TRQ 관리방식은 적절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TRQ 관리품목 가운데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종우, 종돈은 한국종축개량협회가 종계와 조란은 대한 양계협회가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TRQ를 관리하고 있다. 분유와 연유는 한국유가공협회가 수입권공매를 취하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수입권공매의 천연꿀과 지정기관배정방식의 인삼이 있으며, 고구마, 베니옥펠리트, 호밀, 맥주액, 귀리, 밀전분, 메밀, 조, 등 곡물류는 실수요자배정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 또한 제주감귤협동조합이 농수산물 유통공사와 함께 오렌지와 감귤의 TRQ를 관리하고 있다. 이를 품목 가운데 수입권공매를 하는 오렌지와 감귤, 천연꿀과 인삼류, 분유와 연유 등은 생산자단체 또는 협회에서 TRQ를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리방식의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두 번째는 TRQ 품목의 관리를 총량쿼터로 운영하여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이다. 예를 들어 특정 TRQ 품목은 실품목으로 보면 1개 품목이지만 HS 10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여러 개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특정 세 번의 수입이 국내에 부정적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친다고 판단된다면 총량쿼터를 운영함으로써 해당 세 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번의 수입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로 일부 수출국들은 HS 10단위별로 TRQ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세 번별로 TRQ 률량을 설정하기에는 구체적인 통계의 미비로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를 운영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총량쿼터의 운용은 WTO의 대표적인 무차별주의에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총량쿼터제가 갖는 기술적 문제점은 인정되지만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은 사실상 도출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향후 이러한 쟁점이 TRQ관리에 큰 문제가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와 직접 관련이 되는 부분으로 미국 등 쌀 수출국들은 우리나라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수입쌀의 용도를 가공용으로 지정하여 수입하고 있어 내국민대우 위반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쌀은 국내산, 수입산을 막론하고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용도를 지정하여 방출하고 있으므로 내국민대우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제시된 하빈슨 초안에 따르면 TRQ관리와 관련하여 국내산 구매라든지 또는 최종 소비용도를 제한하는 관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TRQ 관리에 있어 이와 같은 부가조건을 부가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 향후 적절한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TRQ관리 시행요령인 농림부고시 2003-56호(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 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의 제15조(용도의 지정)는 향후 제시될 WTO의 TRQ 관리지침과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외화획득용 TRQ물량의 추천제도도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WTO에 통보한 내용과는 달리 쌀, 맥주맥 및 맥아, 고구마전분, 녹차, 버터 등의 TRQ 관리에 있어서 국내산을 우선 사용하는 조건과 연계하거나 최종 소비용도를 제한(외화획득용, 가공용 등)하고 있어 GATT 규정의 위배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수입권공매와 관련하여 DDA 농업협상에서 농산물 수출국들은 국영무역 또는 생산자단체에 의한 TRQ 관리, 수입권 공매제도를 통한 수입차액 환수가 GATT 제2조(관세 양허), 제8조(수수료 및 부과금)의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WTO 사무국은 공매제도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제시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르면 수입권 공매제도 자체가 TRQ관리제도의 하나로서 WTO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운용이 투명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을 경우 WTO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대외적으로 제기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TRQ 관리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① 국내 생산자단체에게 TRQ 수입권을 부여하고 관리를 위임하는 것은 향후 만들어질 TRQ관리 관련 WTO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 ② TRQ물량이 미소진되고 있는 상황 아래서 수입권 재배분조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TRQ 미소진에 따른 재배정 규정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 ③ TRQ 관리와 관련된 부대조건으로 국내 농산물의 구매라든지 또는 수출과 연계한 TRQ 물량의 수입허가, 가공용, 사료용 등으로 최종용도를 제한하는 조치 등은 향후 만들어질 TRQ관리 관련 WTO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
- ④ 수입 국영무역에 대하여 이번 DDA에서 보다 엄격한 관리 지침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에 현재 지정기관 배정방식으로 관리되는 제도의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다.

2.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기한 문제점

TRQ의 독점적 운용 또는 수입자격이나 수입물량을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입을 관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내의 독과점을 규제하고 있는 공정거래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특히 수급관리가 불필요한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관행에 따라 생산자단체 또는 생산자협회를 중심으로 수입추천과 수입관리가 행해지는 경우도 독과점의 폐해가 제기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존에 제기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수입추천과 수입관리가 사실상 불필요하다고 보는 품목으로서 그 주요 이유는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상대적으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아 국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는 품목 가운데 유장, 유당, 매니옥, 매니옥전분, 밀전분, 감자분, 녹차, 누에고치, 생사 등은 공정거래의 원칙에 위반 소지가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동안 TRQ를 운영해 온 결과 TRQ 수입실적이 미미한 품목인 전지분유, 연유, 조란, 잠종, 묘목류, 감자, 고구마, 인삼, 인조꿀 등의 품목도 수입추천의 불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아울러 국내외 가격차가 크지 않아 농업보호의 필요성이 작은 품목으로 천연꿀, 땅콩, 골분, 육분, 기타배합사료 5개 품목을, 축산법에 의해 수입대상 규격이 정해져 있고 수입신고가 의무화된 품목으로 TRQ 관리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종우, 종돈, 종계 등을 공정거래 위반의 소지 품목으로 지적하고 있다.

둘째,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수요에 비해 국내 생산량이 매우 적거나 또는 가격불안정이 적어 국영무역 관리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품목으로 메밀, 생강, 낙화생, 참깨, 팔, 오렌지, 감귤류 등 7개 품목을 지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 경쟁의 제한적 관행이 적용되고 있는 품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량 배정과정에서 불공정관행이 우려되는 품목으로 쌀, 쇠고기, 대두, 고구마전분 등 4개 품목을, 수입자격이나 수입물량 또는 자격제한 등 경쟁 제한적 관행이 우려되는 품목으로 쌀, 버터 등 2개 품목을 지적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은 보다 염밀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예를 들어 국내 수요에 생산이 못 미쳐 자급률이 낮고 가격 불안 또한 적어 국영무역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한 참깨의 경우 국내외가격차가 매우 커 수입차익의 환수차원에서 적절한 TRQ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은 원칙적인 견지에서 향후 TRQ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첫째, TRQ관리의 실효성이(가격안정 또는 수입차익의 환수 측면, 또는 이미 유사 대체품이 자유화되어 TRQ관리의 효과가 의심되는) 의문시되는 품목에 대해서 관련 생산자 단체나 협회에서 기존 관행대로 번거롭게 수입추천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세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그 동안의 TRQ 운영 결과 수입이 거의 없었던 뽕나무, 잡종, 조란, 참깨박, 인조꿀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 관련 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미미하거나 없을 것으로 보이는 과수묘목, 종자류(감자, 옥수수, 귀리, 호밀, 조, 수수 등), 매니옥펠리트, 기타서류, 누에고치 등도 TRQ 관리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TRQ추천권을 협회에서 행사도록 하고 TRQ제도에 따른 혜택을 기득권자 중심으로 관리하여 새로운 시장여건변화를 미반영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점으로 종우, 종돈, 종계, 골분, 사료용근채류, 대용유, 보조사료, 변성전분, 육분, 사료, 및 가공용 옥수수, 채유용대두, 매니옥 및 매니옥전분, 유장, 버터, 생사 등이 여기에 해당될 것으로 잠정 판단된다.

제5장 TRQ 관리와 정책목표

제1절 TRQ 관리와 국내가격의 안정성

TRQ 관리 아래서 수입수요와 수출공급에서의 예상치 못한 변동은 경우에 따라 국내가격에 일정한 영향을 준다. 먼저 참깨나 땅콩과 같이 국내생산이 소비에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국내수요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정상적인 여건에서 수입수요는 설정된 TRQ 물량을 초과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그림 5-1, 5-2 참조)

1. 초기 수입수요가 TRQ물량을 대폭 상회하고 있을 때

가격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급에 일정한 변동을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후 등 자연 조건에 따라 국내 생산은 크게 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수입수요 역시 예상치 못한 변동을 초래할 수 있다.

먼저 수입수요가 대폭 줄어든 경우를 보자. 국내 생산이 갑자기 증가해 수입수요가 대폭 감소한 경우 <그림 5-1>에서 수입수요곡선이 (가)에서 (나) 또는 (다)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 수입수요의 감소는 국내가격을 하락시켜, 국내가격(P_d)은 국제시장가격, P_W 에 퀘터내 저율 관세, t 를 더한 ($P_W + t$)와 퀘터밖 고율관세인, T 를 더한 ($P_W + T$) 사이에서 결정된다. 수입량은 설정된 TRQ물량 또는 그 보다 작은 수준으로 감소된다.

반대로 국내 생산이 급감하여 수입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경우 <그림 5-1>에서 수입수요곡선은 (가)에서 (라)로 이동한다. 이 때는 국내가격은 이전과 같이 ($P_W + T$)로 변화가 없고 수입량만 늘어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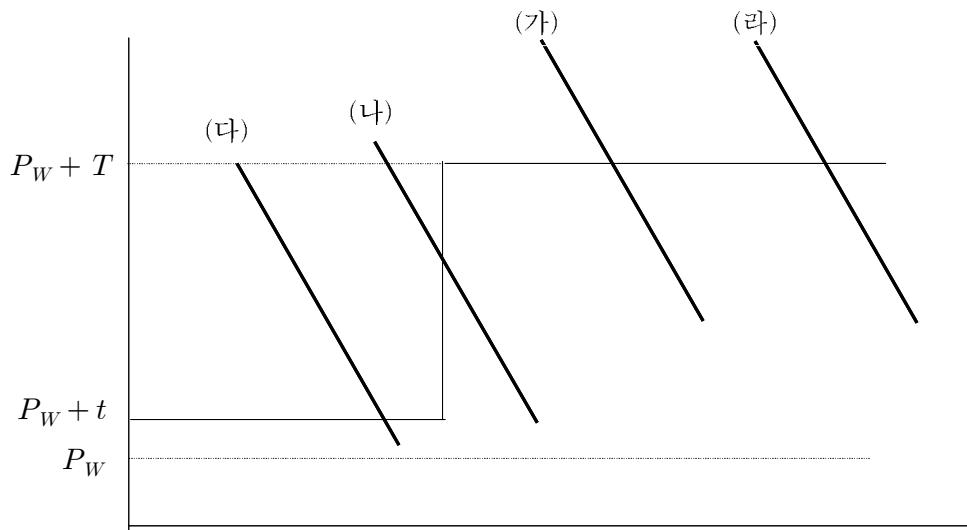
따라서 수입수요가 TRQ 물량을 대폭 초과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 해외의 수출 공급이 국내생산보다 안정적이라면 해당 품목의 국내가격 변동은 국내 생산이 크게 늘어날 경우에 발생하며, 국내 생산이 대폭 증가하지 않거나 혹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또는 감소하더라도 감소폭

이 크지 않다면 국내가격의 급격한 변동은 일어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품목은 TRQ 관리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고 결국 TRQ제도 운영의 근본 목적으로 가격안정 적절하지는 않다.

이의 대표적인 품목은 참깨를 들 수 있다. 참깨의 자급율은 30% 안팎이며, 국내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참깨의 국내 생산이 크게 늘어 수입수요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기 때문에 참깨의 국내가격은 국제가격에 쿼터밖 고율관세가 추가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⁸. 따라서 참깨의 경우 TRQ관리의 목적을 국내가격 안정으로 보기 보다는 국내외 가격차가 매우 커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입차익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리의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본다.

물론 수입권을 가진 업체들의 담합에 의한 가격불안정이 야기될 수는 있으나, 이 문제는 TRQ관리와는 다른 차원(예를 들어 공정거래의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림 5-1 TRQ제도와 국내가격의 관계: 수입수요의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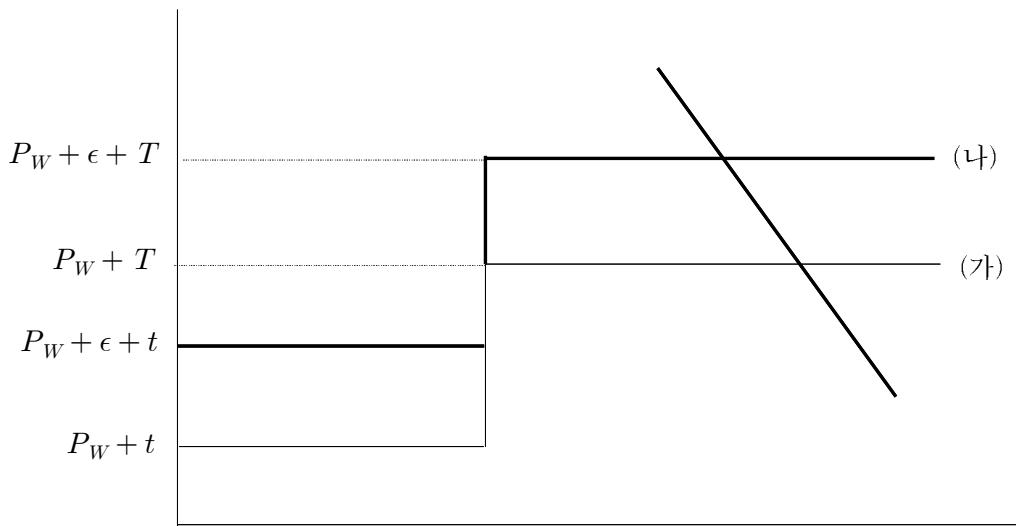


18 실제 참깨의 국내 농판가격은 2003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5년간 11,000~12,000원/kg을 유지해 왔다.

앞의 경우와 달리 국제적인 생산 호조로 수출공급에도 변동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때 국제시장가격은 변하여 가격이 급등하든지 또는 급락할 수 있다.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는 다음의 <그림 5-2>에서 수출공급곡선이 (가)에서 (나)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국내가격은 종전 ($P_W + T$)에서 ($P_W + \epsilon + T$) (단 이 때의 $\epsilon > 0$)로 상승하게 되고, 수입량은 감소한다. 이 때는 쿼터밖 저율관세만 의미를 갖게 되어, 마치 단일 관세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해진다.

이와는 반대로 국제가격이 급락하는 경우는 <그림 5-2>에서 수출공급곡선이 처음에 (나)에 있다가 (가)로 이동하게 된다. 이 때 국내가격은 이전의 국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제가격의 급락에 따라 그 만큼 같이 하락하게 되고, 앞의 경우와 방향만이 반대가 된다. 이 때도 그 효과도 이전과 동일해져 마치 쿼터밖 관세제도만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와 같아진다. 결국 수출공급곡선의 변동시에는 마치 단일의 쿼터밖관세만이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하며, 국내가격은 세계시장가격의 변동(ϵ)에다 쿼터밖관세(T)를 추가한 것이 된다.(그림에 따라 보다 엄격히 언급하면 국내가격은 ($P_W + \epsilon + T$)에서 수출공급의 변동으로 ($P_W + T$)로 하락하게 된다)

그림 5-2 TRQ제도와 국내가격의 관계: 수출공급의 증가



결국 국내수요의 상당 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 국내생산이 일시적으로 대폭 증가하지 않는 한 가격불안정 문제는 단일의 관세제도가 갖는 국내가격의 불안정(국제가격의 급등락 등 해외 요인에 의한 국내가격의 불안정)과 동일한 차원의 문제가 된다.

2. 수입수요가 TRQ물량을 하회하여 있는 큰 경우

앞의 경우와 달리 국내수요의 상당 부분을 국내생산에 의존하고 일부 모자라는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로서 우선 정상적인 예전에서 수입수요는 설정된 TRQ 물량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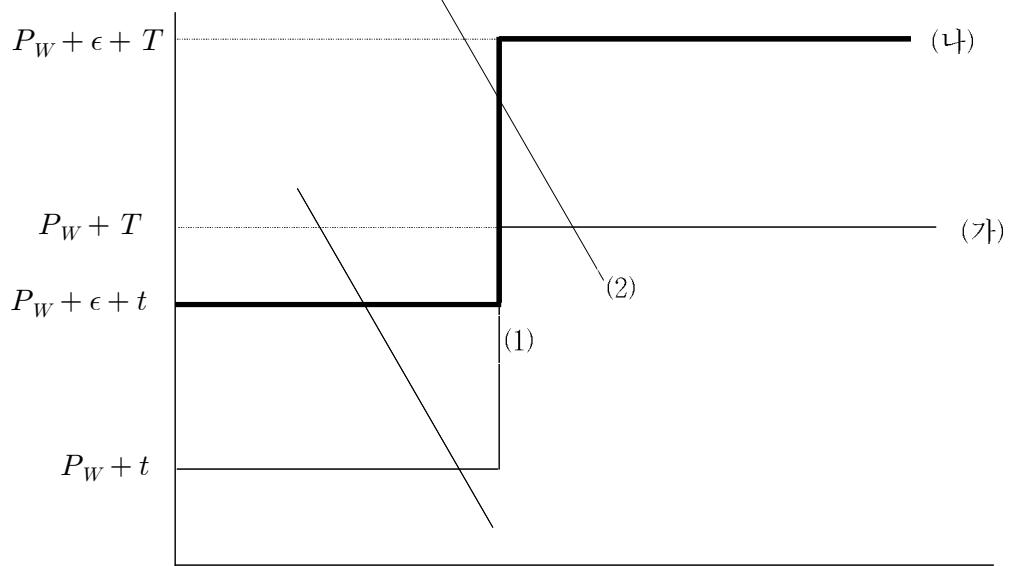
국내생산의 예상치 못한 변동으로 인해 수입수요가 대폭 줄어든 경우 앞의 그림 <그림 5-1>에서 수입수요곡선이 (다)에서 이 보다 좌측으로 이동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수요의 감소는 국내가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국내가격은 이전과 동일하게 국제가격에 낮은 쿼터내관세가 추가된 수준인 $(P_W + t)$ 가 되고, 수입량만 이전 보다 줄어든다. 따라서 TRQ 소진율만 이전보다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국내생산이 줄어 수입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경우 <그림 5-1>에서 수입수요곡선은 (다)에서 (가) 또는 (나)로 이동한다. 이 때는 국내가격이 상승하여 $(P_W + t)$ 와 $(P_W + T)$ 사이에 있게 되든지 또는 $(P_W + T)$ 가 되고, 수입량은 당연히 증가한다.

고추와 마늘과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양념채소류는 위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내생산에 따라 TRQ 수입이행률이 매우 큰 기복을 보이고 있으며, 가격 등락도 심한 편이다 따라서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완충재고의 운용이 필요하며, 이는 TRQ 관리의 중요한 목적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해외의 수출공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그림 5-3>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국제시장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림 5-3>에서 수출공급곡선이 (가)에서 (나)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국내가격은 종전 $(P_W + t)$ 에서 $(P_W + \epsilon + t)$ 로 상승하고, 수입량은 감소하여 TRQ 수입이행률은 하락한다. 이 때는 마치 쿼터내 관세제도만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해진다. 반대로 국제가격이 급락하는 경우는 <그림 5-3>에서 수출공급곡선이 (나)에서 (가)로 이동하게 된다. 이 때 국내가격은 반대로 $(P_W + \epsilon + t)$ 에서 $(P_W + t)$ 로 하락하며, 이 때도 그 효과는 마치 쿼터내

관세제도만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와 동일해 진다. 결국 수출공급곡선의 변동시에는 마치 단일의 쿼터내관세만이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하게 세계시장가격의 변동(ϵ)에다 쿼터내관세(t)를 추가한 것이 국내가격의 변동이 된다.

그림 5-3 TRQ제도와 국내가격의 관계: 수출공급의 증감



마지막으로 수입수요가 설정된 TRQ물량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경우이다. 즉 잠재적으로 수입수요는 있으나 높은 쿼터밖관세가 수입금지적 관세로 작용하는 경우이다. 국내생산의 변동에 따른 수입수요의 이동은 <그림 5-1>에서 수입수요가 변화하는 것과 동일하게 국내가격을 ($P_W + t$)와 ($P_W + T$) 사이에서 급등락하게 만든다. 반대로 국제가격이 변했을 경우 <그림 5-3>에서처럼 수입수요가 (2)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국내가격은 ($P_W + \epsilon + t$) 근방에서 변하게 된다.

TRQ 관리의 목적이 국내가격의 안정에 있다면 앞에서 검토한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국내수요의 상당한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의 경우 국내가격의 안정 측면에서 TRQ 관리의 필요성은 적어진다. 이 경우 해당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가 크다면 수입차익의 환수문제가 대두될 수는 있다. 둘째, 국내수요의 상당 부분을 국내 생산에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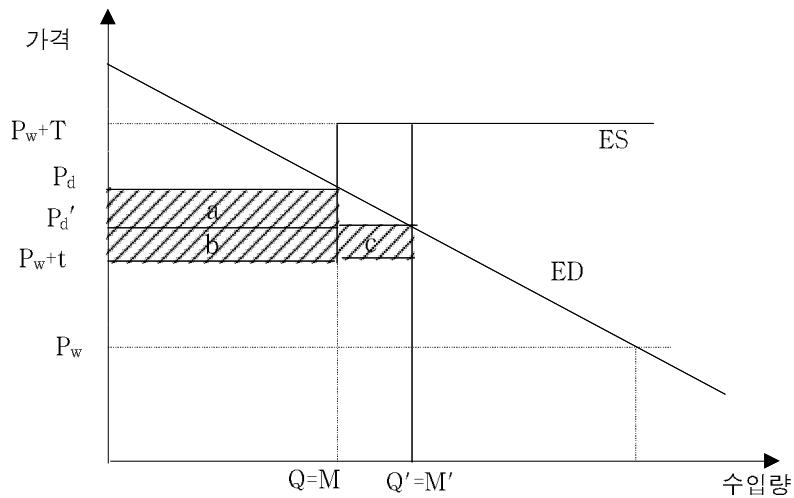
존하고 있어, 수입수요가 국내생산 수준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품목은 국내가격의 안정측면에서 TRQ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안정적인 TRQ 수입이행률을 보장 문제가 국제적으로 제기될 수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TRQ 관리방안이 강구될 필요는 있다.

제2절 TRQ 확대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와 수입차의 변화

TRQ 확대는 잠재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관세인하 효과를 수반할 수도 있다. 수입량이 미미하거나 혹은 현재 설정된 TRQ 물량 이내에서 수입되고 있는 경우에는 TRQ 확대에 따른 관세인하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다. 이는 TRQ가 확대되더라도 수입국의 해당 품목에 대한 수입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해당 품목의 수입량이 설정된 TRQ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에 TRQ 확대는 그에 상응하는 관세 인하 효과는 가질 수 있다.

DDA 농업협상에서 TRQ물량이 현행 설정된 수준 Q보다 큰 수준인 Q'로 결정될 경우 국내 가격은 Pd에서 Pd'로 하락하게 된다.(그림 5-4 참조)

그림 5-4 시장접근물량 확대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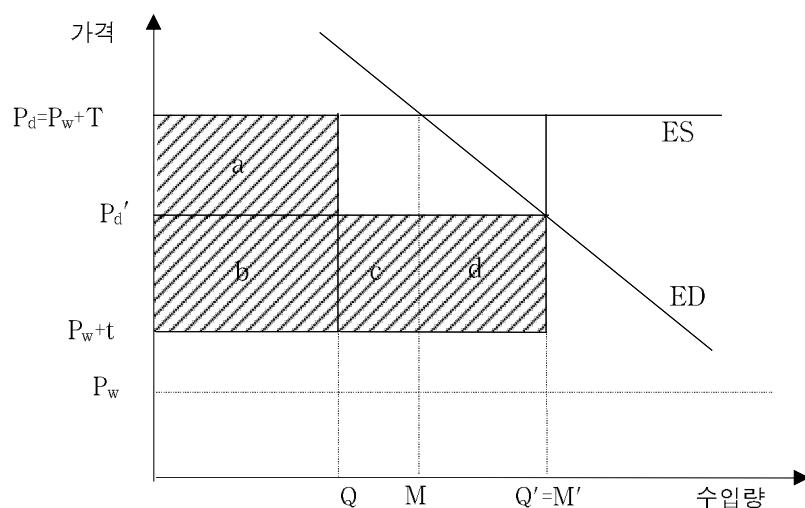


따라서 국내가격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시장접근물량의 확대로 야기된 잠재적 보호효과가

낮아진 것이다. 이 때 TRQ 확대에 따른 수입차액은 기존의 면적 $(a+b)$ 에서 면적 $(b+c)$ 로 변화되며, 수입차액의 증감은 면적 (a) 와 (c) 의 상대적 크기에 달려있게 된다.

한편 현재 실제 수입량이 설정된 TRQ를 초과하여 수입되고 있으며, 향후 DDA 농업협상에서 결정될 TRQ 확대가 현행 수입량 이상에서 결정된다면 <그림 5-5>에서 보는 것처럼 국내가격은 P_d 에서 P_d' 로 하락하게 되고, 이에 따라 국내가격 하락 폭 만큼 현행 고율관세 수준이 실질적으로 감축된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TRQ 확대에 따른 수입차액은 앞의 경우와 유사하게 기존의 면적 $(a+b)$ 에서 면적 $(b+c+d)$ 로 변화되며, 수입차액의 증감은 면적 (a) 와 $(c+d)$ 의 상대적 크기에 의존하게 된다.

그림 5-5 시장접근률 확대의 효과



따라서 TRQ 관리제도를 개선할 경우 향후 DDA 농업협상에서 TRQ가 확대될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고려하여 국내가격 및 수입차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초기 CS에 설정된 TRQ보다 실제 수입수요가 매우 커진 품목은¹⁹ TRQ 확대에 따라 관세인하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과 수입차익의 환수에 중점을 둔 TRQ 관리가 되어야 한다.

19 이행계획서(CS)상의 TRQ 설정 기준연도는 1988~90년이다. 그러나 실제 이행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고, 현재는 2004년으로 다시 10년이 경과된 상태이므로 해당 품목의 국내 생산 및 수요가 상당히 변한 품목이 많다. 특히 맥주맥, 맥아, 전분류(밀, 감자, 벤성전분 등), 침깨, 보조사료 등은 국내수요에 비해 생산이 부족하여 우리나라 스스로가 CS상에 설정된 TRQ 수준을 확대해 왔다.

제3절 TRQ 관리의 경제적 효율성

TRQ 관리의 목적의 하나는 국내가격의 안정이라는 측면이 외에 가격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의 경우 수입차익의 환수도 있으며, 이와 함께 관리제도 자체의 경제적 효율성도 국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정 시장을 관리하는 제도에 있어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분배의 효율성(allocative efficiency) 문제이다. 분배의 효율성은 시장에서의 교환율(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gain) 대비 실제 교환율을 통해 실현된 이익의 비율로서 정의할 수 있는데, 보통 마샬리안(Marshallian) 수요곡선에서의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의 합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분배의 효율성은 이론적으로 특정 재화에 대하여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 수요자와 해당 재화를 가장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 상호간에 거래(교환이)가 이루어질 때 가장 높아지게 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원리를 TRQ 관리에 있어서도 적용할 수 있다.

어떠한 시장제도가 분배의 효율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가는 경제학에서 그 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왔고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효용에 기초하여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를 구체적으로 수치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효율성을 계산하는 것 자체가 쉬운 작업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실험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다양한 거래방식 중 이중경매제(double auction)의 분배 효율성이 100%에 도달한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²⁰. 또한 최근 Gode와 Sunder(1993, 2001)에 의해서 거래에 참여하는 참가자의 수가 크지 않다고 해도 이중경매제가 갖고 있는 분배 효율성의 우수성이 증명된 바가 있다²¹.

일반적으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균형점의 우측 영역에 있는 거래자를 외부거래자(extra-marginal traders)로 그리고 왼쪽 영역에 위치한 거래자를 내부거래자(intra marginal traders)라고 하는데, 특정 재화에 대한 외부구매자(extra-marginal buyers)의 평가는 내부구매자(intra-marginal buyers)의 평가보다 작게 마련이다. 마찬가지로 외부공급자

20 이 점에 대해서는 Chamberlin(1948)을 참조할 것. Chamberline은 완전경쟁 및 효용극대화, 윌리시안 토너먼트를 가정으로 이중경매제의 분배 효율성이 100%에 다다르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21 Gode and Sunder(1993, 2001)을 참조.

(extra-marginal suppliers)가 특정 재화를 공급하는 비용은 내부공급자(intramarginal suppliers)의 비용을 초과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내부구매자가 내부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할 때 완전 효율성이 달성되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거래로부터 다음과 같은 3가지 종류의 비효율성의 원인을 상정할 수 있다. 첫째는 외부거래자의 거래참여이고, 두 번째는 설령 내부거래자끼리의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내부거래자가 다른 내부거래자와 협의할 기회를 갖지 못해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이고, 마지막으로 외부거래자가 내부거래자를 교환시장에서 구축하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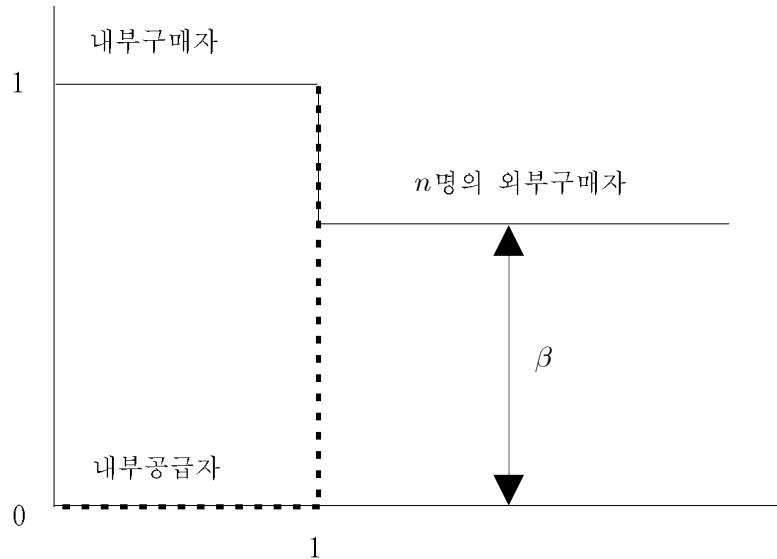
만일 자원이 비시장적 기구에 의해서 배분된다면 배분의 효율성은 외부거래자의 수요와 공급의 형태에 따라 매우 작아질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음(−)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외부거래자의 거래참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요구나 제안을 거절할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비효율성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친 반복 거래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 단 한번의 거래로 내부거래자끼리의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은 거래를 통하여 가격이 점차 조정되어 나갈 때 내부거래자끼리의 거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게 마련이다.

마지막으로 외부거래자가 내부거래자의 구축 가능성이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재화에 대해 외부 구매자가 평가하는 가치를 v_E 라고 하고 내부거래자가 평가하는 가치를 v_I 라고 하자. 만일 외부거래자가 이 재화를 구매했다면 이 때 잉여는 $(v_I - v_E)$ 가 될 것이다. 이 때 이 재화를 외부거래자가 사용하지 않고 다시 내부거래자에게 판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외부거래자가 내부거래자를 구축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 현실에서 TRQ 수입권을 되파는 일은 거래비용이나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축 가능성은 다음과 같이 이중경매제에서 가장 작아진다.

어떤 재화 1단위의 가치가 0에서 1 사이에 있다고 하자. 개별 구매자는 최대 1단위의 재화를 구매할 수 있다. 이 거래에서 재화의 가치를 1로 평가하는 1명의 내부거래자(IMB)가 있고 재화의 가치를 β ($0 \leq \beta \leq 1$)로 두는 n 명의 외부거래자가 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이 재화를 가변 비용없이 공급할 수 있는 내부공급자가 있다. 이 때 이 재화에 대한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그림 5-6 가치 1인 재화의 수요와 공급



만일 모든 외부구매자들의 재화에 대한 가치가 동일하다면 이 때 효율성은 내부구매자가 1단위의 재화를 구매하게 되면 1이 되고 외부구매자가 해당 재화를 구매하게 되면 효율성은 1보다 작은 β 가 된다.

1. 거래의 규칙이 없는 경우

먼저 거래의 규칙이 없고 임의로 거래하는 경우를 가정하자. 예를 들어 위의 재화 1단위가 임의로 선택된 구매자에게 판매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가격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낙찰자가 추첨에 의해서 선정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때는 모든 입찰자가 해당 재화를 구매할 확률이 동일하기 때문에 내부거래자가 해당재화의 낙찰자가 될 가능성(이에 따라 잉여는 1이 된다)은 $1/(n+1)$ 이 된다. 그리고 외부거래자의 낙찰 가능성은 $n/(n+1)$ 이다. 따라서 평균 효율성, E 는

$$(1) \quad E = 1/(n+1) + \beta n/(n+1) = 1 - \frac{(1-\beta)n}{(n+1)} \quad \text{이 된다.}$$

결국 외부거래자가 내부거래자를 구축할 가능성은 $n/(n+1)$ 이고, 그로 인한 효율성의 상실분은 $(1-\beta)$ 가 된다. 그리고 이 효율성의 손실을 최소로 하는 내부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만일 외부구매자가 무한히 많으면 평균 효율성은 β 가 된다. 결국 이 경우 E 의 하한은 0이며(β 가 0 일 때), 평균적으로 배분의 효율성은 50%가 된다.

2. 단순 비공개경매(최고가 낙찰)

이제 단순한 경매제도를 도입한다고 하자. 모든 거래자는 자유롭게 입찰을 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나 일단 제시된 가격으로 거래에 응해야 하며, 최고가 낙찰방식을 택했다고 가정하자. 즉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되고 가장 낮은 공급가격을 제시한 사람에게 팔 권리가 보장된다고 하자. 이러한 거래제도는 거래자로 하여금 가격을 통하여 자신의 선호를 그대로 나타내게 유도한다. 가장 대표적으로 비공개경매(sealed-bid auction)가 있다

먼저 단일의 비공개경매를 생각해 보자. 구매자의 입찰가가 하한이 0이고 상한이 v_I 인 일양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한다고 가정하자. 이 때 내부구매자의 입찰가가 β 보다 클 확률은 $(1-\beta)$ 가 된다. 외부거래자는 β 이상의 입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내부거래자에게 낙찰되며, 이 때 효율성은 1이 된다. 그리고 이 때의 효율성은 외부거래자의 수 n 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반대로 내부거래자가 β 이하의 입찰가를 제시할 확률은 β 이다. 내부거래자의 입찰가가 최고가가 될 확률은 $1/(n+1)$ 이 된다. 따라서 이 때 효율성의 평균은 $(\frac{1+n\beta}{n+1})$ 이다. 따라서 이 때 평균효율성은

$$(2) \quad E = (1-\beta) + \frac{\beta}{n+1} + \beta^2 \frac{n}{n+1} = 1 - (1-\beta) \frac{\beta n}{n+1}$$

가 된다.

이 때 효율성은 거래의 규칙이 없을 경우에 비해 증진되는데 이는 비효율적 거래의 가능성이 $n/(n+1)$ 에서 $\beta n/(n+1)$ 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효율적 거래로부터의 손실, $(1-\beta)$ 가 β 로 줄어들지만 반대로 그러한 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은 $\beta n/(n+1)$ 에서 β 로 커져, 비효율적 거래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해가 존재하게 된다.

한편 거래의 평균효율성은 β 와 n 의 함수로서 β 가 커짐에 따라 0.5까지는 효율성이 떨어지나, 그 이후 β 가 계속 커지면 효율성은 다시 증가한다. 한편 외부거래자의 수가 커지면 효율성은 감소하며, 그 하한은 $(1 - \beta + \beta^2)$ 이 된다. 그리고 β 를 0과 1사이에서 임의로 선택할 때 평균 효율성은 약 83%가 된다. 따라서 거래규칙이 없을 때 보다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3. 이중경매제(double auction)

이중경매제는 구매자와 공급자가 동시에 입찰에 참가하여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 낸 구매자와 가장 낮은 공급자를 써 낸 공급자간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으로 입찰자가 공급자를 상회해야 한다. 만일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그것으로 거래는 종료되는 것이 단일 이중경매제도이고, 다시 거래를 시작하는 것이 다중 경매제도(multiple double auction)이다. 다중 경매제도는 다시 동시 이중경매제도(synchronized double auction)와 연속 이중경매제도(continuous double auction)로 구분된다. 동시 이중경매제도는 일단 모든 구매자와 공급자가 동시에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가를 제시한다. 따라서 거래자는 자신이 입찰할 당시 상대 거래자의 입찰가를 알 수 없다. 입찰 결과를 최고 구매가가 최저 공급가보다 높으면 거래가 성사된다. 만일 최고구매가가 최저 공급가보다 낮으면 재입찰을 받는다. 재입찰시 이전 입찰에서 최고가와 최저가는 그대로 두 번째 입찰에 자동적으로 이전되며, 나머지 입찰자들은 우선적으로 재입찰가를 제시하고 이전에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거래자들이 마지막으로 그들의 입찰가를 변경한다. 그 결과에 따라 다시 거래 성사여부를 판단하고 거래가 끝날 때까지 이와 같은 입찰이 계속된다.

연속 이중경매제도는 동시 이중경매제도와 달리 많은 이중경매가 연속되는 경우이다. 다른 입찰결과를 보지 않고 일단 입찰이 되었으면 최고 구매가가 최저 공급가를 상회하는 한 낙찰을 시키면서 계속 입찰을 받는 경우이다. 모든 입찰을 기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정 가격이 빨리 찾아질 수 있으며, 그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우선 단일의 이중경매제의 경우 평균 효율성은

$$(3) \quad E = 0.5 - \frac{n\beta^2(1 - 2\beta)}{2(n + 2)}$$

로 표현된다.

만일 β 가 전과 동일한 0과 1에서 일양분포를 한다면 평균적인 효율성은 약 59%가 된다. 단일의 이중경매제의 평균적인 효율성이 낮은 이유는 거래가 성사되지 않을 확률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편 동시 이중경매제의 평균적인 효율성은 외부거래자의 수가 매우 많을 경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4) \quad E = 1 - (1 - \beta) \frac{\beta^2}{1 - \beta(1 - \beta)}$$

이 때 비효율적 거래의 가능성은 $\beta^2/(1 - \beta(1 - \beta))$ 이고, 이 확률은 β 보다 작기 때문에 동시 이중경매제는 비공개 최고가 경매제도보다 효율적이다. 이중경매제의 효율성이 높은 이유는 비효율적 거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중경매제에서 비효율적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내부구매자와 내부공급자 모두가 β 이하의 입찰가를 제시해야 하고 이에 따라 그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연속 이중경매제의 평균적인 효율성은 외부구매자의 수가 많을 때

$$(5) \quad E = 1 - (1 - \beta) \frac{\beta + \beta^2}{2(1 - \beta(1 - \beta))}$$

로 나타내진다.

동시 이중경매제에서 비효율적 거래 가능성은 $\beta^2/(1 - \beta(1 - \beta))$ 이기 때문에 β 가 0가 아닌 한 동시 이중경매제에서 비효율적 거래 가능성은 동시 이중 경매제 보다 높다. 이는 연속 이중경매제 아래서 외부구매자의 입찰가 보다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내부구매자의 입찰이 오기 이전에 외부구매자와 내부공급자의 거래가 성사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공개 이중경매제(public double auction)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가 최고구매가와 최저공급가를 관찰하고 입찰가를 수정할 기회를 줄 때 외부거래자의 입찰가는 낙찰가에서 그 만큼 멀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모든 입찰자가 입찰 종료후 공개되는 동시 이중경매제를 생각해 보자. 이 때 구매자는 입찰가는 종전과 같이 0에서 v_I 사이에서 일양분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제시한

입찰가와 v_I 중 최소값을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v_I 인 일양분포를 한다. 즉 $b_I \sim U(0, v_I)$ 에서 $b_I \sim U(m(v_I, \text{제시한입찰가}), v_I)$ 가 된다. 따라서 공급자의 공급가는 하한이 0이고 상한은 제시된 공급가인 일양분포를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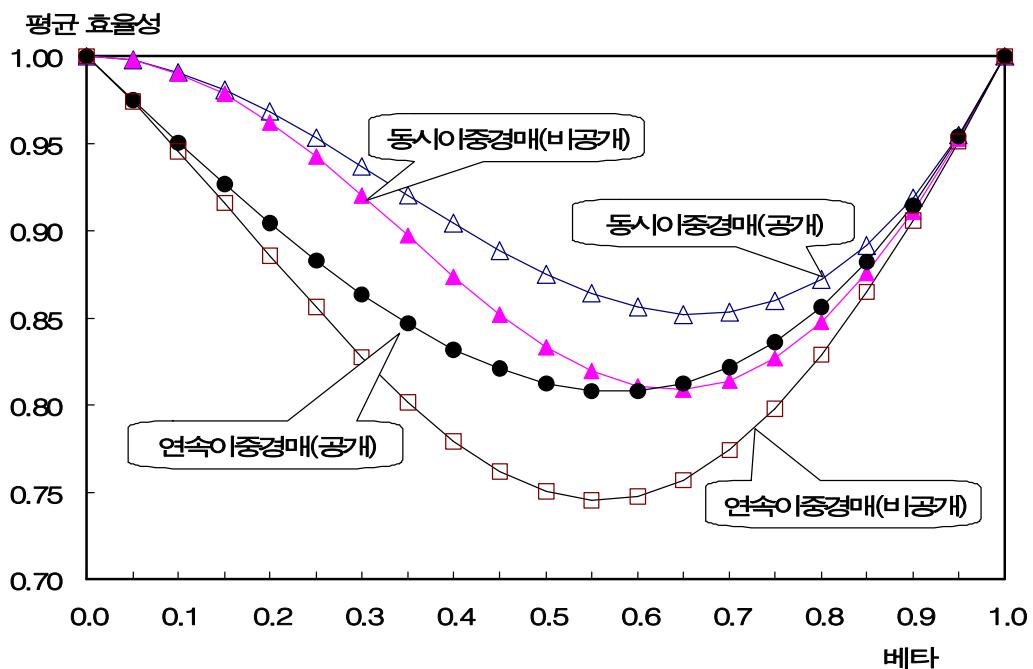
이 때 평균적인 효율성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6) \quad E = 1 - (1 - \beta) \beta^2$$

따라서 비효율적인 거래의 가능성은 β^2 로 거래자가 입찰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 보다 작아진다. 결국 모든 입찰정보가 공개될 때 외부구매자는 내부구매자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퇴출되고 이에 따라 효율성이 향상된다.

아래의 그림 <5-7>은 여러 번에 걸쳐 입찰이 허용되는 이중경매제 가운데 입찰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와 비공개하는 경우의 평균효율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그림 5-7 이중경매제의 평균 효율성



5. 시사점

앞에서와 같은 사실은 TRQ제도 운영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TRQ거래제도에 외부적으로 적절한 규칙을 도입할 때 분배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이다. 효율성은 거래당사자들이 임의로 거래에 참가하거나 또는 상호 내부거래자를 만나지 못할 때 그리고 외부거래자에 의하여 내부거래자가 구축될 때 발생하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중 입찰(multiple round of bids and asks)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 특히 이중경매제에서 평균적인 효율성은 단일의 입찰에 비해 여러 번 입찰기회가 주어질 때 크게 향상된다.

따라서 TRQ 관리제도의 효율성 측면에서만 볼 때 여러 차례 입찰기회가 있는 이중경매제가 효율적이며, 특히 입찰결과의 공개를 통해 입찰가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제6장 TRQ 관리제도의 개선방향

제1절 기본 전제

향후 우리나라의 TRQ 관리제도의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기본 축으로 하여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향후 DDA 농업협상에서 도출될 것으로 보이는 TRQ 관리방식의 타결방향을 고려해야 한다(외부적 제약요인). 동시에 지난 10년간의 우루과이라운드 이행과정에서 주요 무역상대국들로부터 제기된 문제도 감안되어야 한다.

둘째, TRQ관리 방식은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 TRQ 관리의 비효율성은 TRQ 수입권의 배분에서부터 나타날 수 있으며, TRQ 물량이 수입된 이후 국내에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관행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TRQ 관리의 행정비용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경제적 효율성)

마지막으로 TRQ 관리 방식의 선택은 무역상대국의 주장이나 효율성 기준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비록 효율성이 저하되더라도 수입차익의 배분에 따른 국내의 산업별, 계층별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국내가격이 불안정하고 수급안정이 필요한 품목은 별도의 적절한 TRQ 관리도 고려되어야 한다.(대내적인 필요성).

제2절 공통의 개선 방향

1. 대외적 여건변화를 고려한 개선 방향

향후 WTO차원에서 예상되는 TRQ 관리의 개선방향은 생산자단체에 의한 TRQ관리를 금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TRQ 수입권 배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세부조건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TRQ 관리제도도 이와 같은 WTO의 움직임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가. 관리주체의 변경

오렌지의 경우 종전 생산자단체는 제주감귤협동조합이 TRQ관리의 주체가 되어 있었으나, 2004년을 기준으로 TRQ내의 관세와 TRQ밖의 관세가 같아졌기 때문에 사실상 TRQ관리의 필요성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효과없는 TRQ를 운용하기 보다는 관리주체에 관계없이 TRQ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산림조합도 생산자단체로 볼 수 있다. 현재 이들 기관이 관리하는 대표적인 TRQ품목은 잣과 밤(산림조합)과 천연꿀(농협)이다. 잣의 경우 산림조합이 지정기관 배정 방식으로 TRQ 수입권을 독점을 하고 그 판매수입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밤은 산림조합이 주관하여 TRQ 수입권을 공매하고 있다. 천연꿀은 농협이 수입권공매를 하고 있다.

지난 9년간 TRQ 이행률을 보면 국내외 가격차가 큰 잣은 거의 100%에 달하는 수입이행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밤은 5~28%의 상대적으로 낮은 TRQ 이행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밤은 수출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으로서 최근 들어 TRQ 소진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고율의 쿼터밖관세를 물고 들어오는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관리주체를 변경할 경우 잣은 수입차익의 환수에 가장 큰 관심을 두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수입권공매 또는 국영기업을 통해 TRQ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밤은 기존 공매제도를 운용하되 TRQ 소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운용방법을 공매제도와 함께 실수요자 배정방식 등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나. 세부 부가조건의 폐지

우리나라는 TRQ 수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세부조건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DDA가 이행될 경우 국내산 구매조건 또는 이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조건이라든지 혹은 특정 품목의 수입을 배제하거나 또는 최종소비용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든지, TRQ 수입권을 얻기 위한 자격조건으로서 수출 또는 재수출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세부조건을 규정하고 품목이나 관계 법령들은 개정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이에 관계되는 품목으로 쌀을 들 수 있고, 그 외에도 맥주맥 및 맥아, 고구마전분, 녹차, 버터 등의 TRQ 관리에 있어서 국내산을 우선 사용하는 조건과 연계하거나 또는 최종 소비용도를 제한(외화획득용, 가공용 등)하고 있어 향후 세부요건을 폐지 또는 변경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TRQ관리 시행요령인 농림부고시 2003-56호(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의 제15조(용도의 지정)는 향후 제시될 WTO의 TRQ 관리지침과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며, 아울러 외화획득용 TRQ물량의 추천제도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대내 여건변화를 고려한 개선 방향

가. TRQ제도의 효율성 측면

TRQ제도의 효율성은 시장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여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구매자와 가장 경쟁력 있는(이에 따라 가장 낮은 공급가격을 제시하는) 수출업자가 연계가 될 수 있는 수입제도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반면 이를 위해서는 이를 저해하는 제도적 장치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입허가제도나 국영무역 등은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시장을 왜곡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관리에 따른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효율성이 저하될 소지도 있다. 특히 국내외 가격차가 큰 품목의 경우 TRQ수입에 따른 수입차익의 획득을 위해 과도한 비용(rent seeking costs)을 지불하여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는 것이다.

표 6-1 수입관리방식별 효율성 비교

수입관리방식	쿼터수입 미소진 가능성	쿼터 배분의 비효율성 ¹
실행세율	전혀 없음.	전혀 없음.
수입권공매	저	최저
수입허가	저	중
선착순배정	저	중
과거수입실적	중	최고
국영무역	저	고
생산자단체수입	저	고

주: 쿼터배분의 비효율성이란 쿼터의 수입권을 수입자별, 수출국별로 공정하고 상업적인 원칙에 따르지 않고 임의적인 방식으로 배분하였는가의 여부로 판단

일반적으로 수입관리의 비효율은 ① 수입독점에 의한 경쟁제한, ② 수입추천 및 TRQ 물량 배정과정에서 사업자단체에 의한 각종 불공정 행위(사업자단체의 신규조합원에 대한 수입물량 공급제한, 수입물량 배정시 자의적인 기준 설정, 조합원에게 여타 품목 구입 강요 등), ③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인한 경쟁제한(과거수입실적에 따른 수입추천 등)에 의해서도 발생 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성의 근원을 제거하는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외 가격차(경쟁력 격차)가 적고 비교적 농가소득에서의 비중이 낮아 수입차익의 배분방식에 따른 비형평성의 문제가 적으며, 수입이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품목의 경우 선착순배정이나 실수요자 수입방식으로 전환을 고려해야 하며, 계절적으로 수입이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반면 국내가격의 변동 폭이 큰 품목의 경우 국영무역이나 수입허가제(Import Licensing)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국내외 가격차가 적은 반면 쿼터량에 비해 국내수요가 적은 품목은 실행세율 적용이 원용되어야 할 것이며, 수입업무의 전문성이나 수출업자와의 관계가 중요시되는 품목은 과거수입실적에 의한 수입추천이 적합할 것이다

나. 수입차익(rent)의 배분과 형평성

이중관세에 의한 수입차익의 발생과 귀속은 형평성과 관련하여 정치적인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국내외 가격차와 수입차익이 클수록 수입관리의 효율성 저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부가 환수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형평성과 효율성간의 조화).

제3절 TRQ 관리의 개선방향

1. TRQ 수입추천 및 관리 폐지

국내 생산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어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사실 TRQ 확대 또는 관리방식의 변경으로 인하여 국내 생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오히려 소비자의 후생을 제고시키는 측면이 크므로 TRQ 관리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품목 가운데 국내 가격 안정측면에서 최소한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은 별도의 관리방식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품목은 조란이다. 조란은 선착순 방식에 따라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TRQ내외의 수입을 막론하고 거의 수입된 적이 없다. 따라서 TRQ관리의 필요성이 의문시되며, 만일 수입관리가 필요하다면 동식물 검역 등의 다른 비관세조치를 통하여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표 6-2 TRQ 관리의 필요성이 의문시되는 품목

	TRQ 이행률 (%)		기존 TRQ 관리방식
	1995~2003년 평균	2001~2003년 평균	
조란	0	0	실수요자배정 (선착순)
잡종	0	0	실수요자배정 (선착순)
뽕나무	0	0	실수요자배정 (선착순)
종우	21.6	5.6	실수요자배정(자격제한)
종자용감자	8.2	4.7	실수요자배정 (선착순)
매니옥펠리트	15.0	10.2	실수요자배정 (선착순)
신선고구마	13.0	0	실수요자배정 (선착순)
조(종자용)	0	0	실수요자배정 (선착순)
인조꿀	0	0	실수요자배정(자격제한)
참깨유박	0	0	실수요자배정(자격제한)
누에고치	15.1	0.6	실수요자배정 (선착순)

자료: 농림부 국제농업국 내부자료

잠종과 뽕나무, 그리고 기타 과실 묘목류도 수입실적이 미미하여 TRQ 관리의 필요성이 의문시되는 품목이다. 이를 품목은 모두 식물검역 대상 품목이므로 필요시 검역을 통한 수입관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실수요자 추천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나 중장기적으로 TRQ 관리대상에 제외하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종자용 조와 수수 및 인조꿀과 참깨유박, 매니옥펠리트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인조꿀은 천연꿀 때문에 TRQ 이행률이 낮은 편이며, 참깨유박도 참기름과 참깨가 국내 수요에 충분하게 TRQ를 증량하여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TRQ 이행률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매니옥펠리트의 경우 매니옥과 매니옥 전분에 대한 TRQ 증량이 충분하여 사실상 거의 수입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품목들은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엄밀한 품목별 검토 후에 수입추천제의 폐지 또는 무역왜곡이 적은 선착순 배정방식으로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국영무역 등 비시장적 수입관리방식 보다 시장지향적인 수입관리방식으로

국영무역 등 지정기관배정 방식에 의해 수입 관리되는 품목은 현재 수입관리의 규율 강화, 고율관세의 대폭인하에 따른 국내외 가격차 축소 등 WTO 협상추이나 국내적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현행제도와 같이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특히 국내외 가격차의 축소로 수입차액환수라는 국영무역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일부 품목의 경우(예: 오렌지) 수입권 공매방식 등 보다 시장지향적인 수입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편 국내외 가격차가 적고 생산이나 가격 변동 폭이 적은 품목을 경쟁촉진의 차원에서 수입권 공매방식이나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전환하는 방향이 되어야 하며, 특히 수입권 공매방식은 국영무역과 함께 수입차익을 정부나 지정기관이 환수하여 지정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수입권 공매방식은 나름대로 수입관리상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으나, 해당 품목의 품질이 가급적 동질적이어야 하고, 수출입자의 수가 많고 무역관련 정보가 비교적 널리 공유될 수 있어야 하는 등 효율성 제고에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으며, 동시에 수입권 공매나 실수요자 배정방식으로 민간수입이 확대될 경우 정부의 가격 안정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입권을 공매하면서도 가격안정이 요청될 경우에 대비하여 일정 부분을 가격안정용으로 비축할 필요성이 있다

표 6-3 TRQ 관리를 보다 시장지향적 방식으로 고려해야 품목

	TRQ 이행률 (%) 1995~2003년 평균	TRQ초과 수입비중	개선 방향	비고
녹두, 팔	149	27	동시 이중경매제와 같은 수입권공매제를 기초로 하되 물가 안정을 위하여 일부 TRQ를 국영무역을 통해 관리	TRQ 자율증량
매니옥	393	0		TRQ 자율증량
맥주액	187	0		TRQ 자율증량
감자분	600	5		TRQ 자율증량
맥아	183	2		TRQ 자율증량
밀전분	167	33		TRQ 자율 증량
감자전분	172	1		TRQ 자율증량
메니옥전분	152	15		TRQ 자율증량
고구마전분	323	8		TRQ 자율증량
참깨	957	1		TRQ 자율증량
사료용근채류	835	1		TRQ 자율증량
유당	175	1		TRQ 자율증량
보조사료	467	2		TRQ 자율증량

한편 수입권 공매방식으로 수입되는 일부 품목 중 국내외 가격차가 거의 없어 TRQ 이행율이 저조하거나 실제 수입권공매를 통한 수입차액 환수가 거의 무의미한 한 경우는 실수요자배정 등 보다 시장지향적인 수입관리방식으로의 전환해야 한다. 현재 수입권 공매방식으로 수입 관리되는 뱀의 경우 국내외 가격차가 거의 없어 TRQ 소진율이 8.2%에 불과하며, 수입차액환수액도 약 7백 만 원에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3. 경쟁제한 관행의 개선

국내 관련 산업의 균형 발전, 공평성 혹은 효율성 향상 측면에서 일부 품목의 TRQ물량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수입자격의 원천적 제한이나 관세할당량 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쟁 제한적 관행의 개선이 필요한 측면도 있다. 현재 일부 품목의 수입관리차원에서 행해지는 이러한 관

행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수입관리의 투명성과 경제효율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국내 경제정의 실현 차원에서 적절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MMA 쌀 공매과정에서 수입된 가공용 쌀을 쌀 가공 공장의 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배정한다든지, 수입 대두를 식품조합에서 실수요자에게 임의적으로 배정하는 행위, 그리고 수입 버터를 관광용품 센터로 한정하여 수입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행위는 근본적으로 시장진입의 장벽으로서 경쟁 제한적 관행의 대표적인 예이다.

한편 수입된 품목에 대해 용도별로 수입관세나 수입차액부과를 달리함으로써 국내 유통질서의 혼란, 산업간 불균형 발생, 탈법조장 등의 시장왜곡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한 시정이 요구되는데, 대두의 경우 연간 170만 톤이 수입되는 데, 이 중 80%가 넘는 착유용 및 사료용은 관세 1%(일부는 5%)만 부과되어 매우 낮은 가격에 가공업체에 공급되는 반면 두부제조용, 두유 제조용, 장류 제조용 등으로 공급되는 식용 대두는 관세 5% 이외에 수입원가보다 높은 수입차액(2000년의 경우 톤당 38만원 추정, 관세로 환산할 경우 136%)을 부과하여 국내 대두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 사이에 그리고 대두 제품 생산자 사이에 형평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4. 유사품 및 관련제품을 고려한 수입관리 방식의 채택

마늘의 경우 원품목(신선/냉장 마늘)은 높은 관세율로 TRQ가 비교적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나, 유사(냉동 마늘) 및 대체품목(초산조제/건조 마늘)은 낮은 세율로 개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대체품의 수입이 급증함으로써 원 품목에 대한 TRQ 관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와 같이 비록 원 품목의 수입 관세율이 높고, 국영무역 등 TRQ관리가 시행되고 있더라도 해당 품목 생산농가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유사 또는 대체품목과 원 품목의 관세격차가 커 TRQ관리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고추와 고추장, 생강과 조제생강, 땅콩과 피넛버터, 대두와 대두분말, 감자와 냉동감자 등으로 보다 세심한 TRQ 관리가 요청되는 품목이다.

이와 같은 관세격차에 따른 TRQ 관리의 실효성 및 농가피해 문제는 근본적으로 유사 또는 대체품목의 관세율 조정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문제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이미 양허한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관세격차를 조정하기는 매우 어렵고 이해 당사국에게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6-4 품목별 대체·유사품목간 관세(상당치) 비교

품목	관세상당치	대체/유사품목	HS 세번	기준관세	양허관세
고추	286.5	고추가루	0904-20-2000	300	270
		고추장	2103-90-1030	60	54
		혼합조미료	2103-90-9030	60	54
마늘	382.0	초산마늘	2001-90-9060	40	36
		냉동마늘	0710-80-2000	35.5	27
양파	143.3	건조양파	0712-20-0000	150	135
깻	446.5	강낭콩	0713-33-9000	35.5	27
참깨	668.5	참기름	1515-50-0000	700	630
		기타	2008-19-9000	59.2	45
생강	25.4	설탕처리 생강	2006-00-3000	75	45
메밀	271.7	대체유사품없음			
땅콩	244.6	깍지땅콩	1202-10-0000	256.1	230.5
		알땅콩	1202-20-0000	256.1	230.5
		조제땅콩	2008-11-9000	71	63.9
		피넛버터	2008-11-1000	71	54
		아몬드	0802-12-0000	50	21
		캐슈넛	0801-30-0000	50	32.8
대두	516.7	대두분말	1208-10-0000	35.5	27
감자	322.7	종자용감자	0701-10-0000	338	304
		감자분, 조분	1105-10-0000	338	304
		감자플레이크	1105-20-0000	338	304
		감자전분	1108-13-0000	506	455
		냉동감자	0710-10-0000	30	27
		건조감자	0712-10-0000	30	27
		조제/저장처리/냉동	2004-10-0000	40	18

자료: 농림부, UR 농산물협상 이행계획서(1994) 및 농림축산물 품목분류(1999/2000)

따라서 현행 국영무역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관세격차가 큰 일부 원 품목은 공매제나 다른 시장지향적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원 품목을 계속 국영무역으로 관리하더라도 수입업자들은 관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유사 또는 대체품, 가공품의 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TRQ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 수입차액환수나 해당품목의 생산자 보호 등 당초 국영무역운영을 운영하는 목적도 달성하기가 어려워진다. TRQ 관리의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도 무역상대국으로부터 TRQ 수입이행이 저조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

한편 해당품목이 계속 국영무역으로 수입관리 되는 경우 비록 관세할당량이 수출국에 수입기회를 보장해준 것이고 의무적인 수입물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대외적으로 국영무역에 의해 수입 관리되는 관세할당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품목의 전체 수입량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한다.

5. 주요 양념채소류 및 참깨의 TRQ 관리 개선 방향

가. 고추 및 마늘

고추와 마늘은 기본적으로 국내 생산에 의해서 자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품목으로 재배면적의 변화과 기상여건의 변화에 따라 국내 생산량은 크게 변하는 대표적인 양념채소류이다. 중장기적으로 재배면적이 서서히 감소하는 하는데 단수가 늘어 생산량은 완만히 증가하고 있으나, 매년의 생산은 큰 기복을 보이고 있어 TRQ 이행률도 국내 작황에 따라 크게 변하고 있다.

고추와 마늘의 국내외 가격차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큰 폭이며, 국내생산이 증가하여 국내외 가격차가 줄어들 경우 현 수준의 관세는 충분한 국경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추와 마늘 모두 유사 및 대체 가공품들의 관세가 매우 낮아 최근 들어 수입이 늘고 있으며, 이로 인해 TRQ 관리를 통한 생산자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다른 한편 이를 품목은 최근 들어 TRQ 이행률이 낮은 가운데도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어 수입되는 TRQ밖 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현재와 같은 TRQ관리를 두고 무역상대국들로부터 이의제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TRQ 관리는 유통공사에 의한 지정기관 배정방식으로 사실상 국영무역형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수입이행률 저조에 따라 일부 TRQ 물량을 수입권공매 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실상 국영무역과 수입권공매가 함께 적용되는 혼합방식으로 TRQ가 관리되고 있다.

향후 고추와 양파에 대한 TRQ 관리는 가격안정과 수입차익의 환수측면에서 현재와 같이 국영무역방식(가격안정용 비축물량)과 수입권공매 방식(수입차익의 환수)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추의 경우 수요가 비탄력적이면서 대표적인 농가소득 작목인 점을 고려한다면 가격안정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향후 소비는 정체 내지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고춧가루, 혼합조미료, 고추장 등 유사 대체품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TRQ 관리를 통해서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는 효과는 점차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최소한의 가격안정용 물량에 대해서만 현재와 같이 국영무역으로 관리하되 그것도 현재 DDA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향에 맞추어 관리 및 제도의 투명화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 국영무역을 제외한 나머지 TRQ 물량은 수입권 공매방식을 통해 관리하되 공매는 현재와 같이 비공개 최고입찰방식 보다는 앞에서 언급한 공개적인 동시 이중경매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수입차익 환수에 가장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제도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효율성도 높다.

마늘은 유사품인 초산조제 및 냉동마늘의 관세가 30%로 TRQ 밖 관세 280%에 비해 매우 큰 관세격차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수입이 초산조제나 냉동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저장 및 가공기술의 발달로 간 마늘 형태로 수입되고 있으며, 점차 국내 대량 소비처도 수입산 마늘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늘의 TRQ 관리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국영무역에 의한 관리보다는 수입차익의 환수차원에서 수입권 공매제(이중 경매제를 이용하여 제도의 효율성과 수입차익 환수의 극대화를 추구)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다. 양파

양파는 고추 마늘과 같이 기본적으로 국내 수요에 생산이 충분히 대응하는 품목이나 전년도 가격동향에 따라 재배면적의 변동이 극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고추 마늘과 달리 양파는 중장기적으로 재배면적 및 단수가 점진적으로 늘고 있고, 수요측면에서도 식생활변화와 건강식품으로서 소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TRQ 수입 이행률은 최근 들어 국내 생산 호조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TRQ 이행률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는다. 특히 신선 양파와 대체되는 건조양파가 있고 두 품목간의 관세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양이 민간에 의해 수입되었다.

따라서 보다 시장 지향적 방식으로 TRQ 관리를 변경해 나가되 고추, 마늘과는 달리 현 수준 일시적인 가격 급등락을 대비하기 위하여 국영무역을 위주로 일부 수입권 공매를 혼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참깨

참깨는 국내 자급도가 25% 안팎으로 국내수요에 국내생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품목이다. 국내 생산은 정체 또는 완만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소비는 정체 내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에도 상당한 수준의 수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수입국은 TRQ 관리 이전 중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 올수록 수단 및 인도로부터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 수요예측에 따라 과부족을 미리 증량하여 TRQ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TRQ를 초과하여 수입된 물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깨의 TRQ 관리 목적은 가격안정이라기 보다는 국내외 가격차가 커서 수입차익의 환수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기존의 국영무역에 의한 관리보다는 수입권 공매에 의한 관리가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입권 공매시 민간업체의 물량 조작, 원산지 둔갑 등의 유통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일정 부분만을 국영무역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6-5 참깨의 수입이행실적

단위 : 톤, %

	TRQ 물량				수입 실적		
	CS상 물량	자체증량 물량(B)	소계 (A)	(B/A)	저율관세	고율관세	계
2003	6,731	75,169	81,900	91.8	81,150	114	81,282
2002	6,731	69,269	76,900	91.1	62,556	428	63,091
2001	6,731	72,869	79,600	91.5	77,074	287	77,368
2000	6,731	63,269	70,000	90.4	69,838	119	70,120
1999	6,731	54,269	61,000	89.0	59,748	23	60,968
1998	6,731	54,269	61,000	89.0	54,002	40	54,043
1997	6,731	58,469	65,200	89.7	65,012	80	65,192
1996	6,731	62,769	69,500	90.3	68,477	-	68,477
1995	6,731	35,191	41,922	83.9	41,909	-	41,909

자료 : 농림부 국제농업국, 내부자료로 부터 정리, 농림업 주요통계 2004

6. 쌀의 TRQ 관리방안

최근까지의 쌀 협상 추이를 감안할 때 관세화를 유예하든지 혹은 관세화로 전환하든지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까지와 같은 방법으로 수입쌀을 관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수입되는 MMA쌀의 관리에 있어 최종 소비용도를 제한하여 가공용으로만 시중에 방출하는 방식은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쌀 협상에서 상대국들이 관세화를 유예하는 대신 수입쌀의 시중유통을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세화를 한다고 해도 수입쌀의 재고누증 압력과 향후 수입쌀이 시중에 유통될 것에 대비하기 위한 국내 유통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수입쌀의 시중유통이 부분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쌀을 관세화를 할 경우 DDA 농업협상의 결과를 적용받게 되기 때문에 TRQ 관리와 관련한 논의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용도제한 등과 같은 관리방식은 더 이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쌀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MMA쌀의 시중유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민간 유통업체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은 정부 또는 국영무역기관이 수입을 하되 수입된 쌀 가운데 일정 비율을 정부 또는 국영무역기관이 시중에 유통시키는 형태이다. 일본의 경우는 전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수입 및 유통방식은 동시매매입찰 방식을 취하고 있다. 민간수입의 비율은 MMA의 약 8~12% 수준이며, 이 때 부과되는 mark-up의 최대 상한은 292엔/kg 이다.²² 대만의 경우도 전자의 형태를 민간유통비율은 MMA의 35%에 이르며 초기 대만의 국내시장 유통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후자의 형태를 떨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쌀 협상 결과를 보면 수입은 지금과 동일하게 국영무역 형태를 취하되 그 중 일부를 시중에 유통하는 것으로 논의가 모아지고 있다고 전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나라도 MMA쌀의 시중 유통은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고, 따라서 문제는 정부가 어떠한 방식으로 시중에 쌀을 유통시킬 것인가가 가장 큰 관심거리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영기업이 시중에 유통되는 쌀의 공급자가 되며, 다수의 국내 유통업자가 구매자가 되는 거래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MMA쌀 관리의 정책목적은 다양해 질 수 있다. 그러나 시중에 유통되는 외국산 쌀 가격에 따라 국내산 쌀 가격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국내 쌀 가격의 급

22 일본의 민간수입에 대해서는 부록에 제시된 동시매매입찰제도에 자세히 나와 있다.

락 방지 또는 안정과 함께 수입차익의 효과적인 환수를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판매제도와 함께 mark-up의 산출이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된다.

가. 동시 이중경매제도

동시 이중경매제도는 일본의 동시매매입찰과 유사하지만 쌀을 구매하는 입찰자와 공급자가 동시에 거래에 참여하여 최고 구매가를 제시한 구매자와 최저 공급가를 제시한 공급자간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영무역을 통해 MMA 쌀을 수입하고 그 중 일부를 정부가 공급독점자로서 국내 유통업체에게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따라서 앞 절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거래제도 자체의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외부공급자(extra-marginal suppliers)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 볼 수 있다. 물론 정부의 공급독점 자체가 거래제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MMA 쌀의 일부를 다시 민간자율수입으로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쌀의 TRQ 관리는 현재와 같이 국영무역을 통하여 수입쌀의 일부를 어떻게 시중에 유통시킬 지가 관건이 된다.

① 정부의 공매에 참여하는 입찰업체에 대한 자격 제한

외부구매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거래제도 자체의 효율성을 낮추는 경우를 최대한 낮추기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유통업체에 대한 사전 자격기준을 설정하여 자격을 적절히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국영무역에 의한 정부의 쌀 수입은 현미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 도정절차를 거쳐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적정 도정 및 유통시설을 겸비한 내지는 임대 가능한 업체에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입찰자격 제한은 수입쌀이 국내산 쌀과 혼합되는 것을 방지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② 입찰은 가격과 필요 물량을 정해서 1차로 최고가를 공개한 후 2번째 입찰에서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자에게 거래가 성립되도록 한다.

입찰에 참가하는 유통업체는 가격과 필요 물량을 동시에 제시하고 이중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자를 공개한 후 2차 입찰을 통해 최고가순으로 낙찰되게 함으로써 외부구매자의 접근 가능성을 다시 낮추는 방식이 중요하다. 이 때 1차로 최고가를 제시한 입찰자는 다른 입찰자의 2차 입

찰이 끝난 직후 재입찰가를 제시할 기회를 준다. 앞 절에서 본 바와 같이 이 경우가 제도의 비효율성을 가장 낮출 수 있는 거래방식이다.

③ 입찰이 무산되었을 경우 협약된 시판비율 내에서 계속해서 재입찰을 실시

④ 필요시 mark-up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 부여

나. mark-up 상한선의 시산

WTO 규정상 mark-up의 상한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다. 그러나 수입쌀이 국내산 쌀과 경쟁이 가능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 WTO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이에 따라 mark-up의 크기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수입쌀의 국내도매시장 판매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이다. 이 때 도매시장가격은 수입쌀이 국내판매가격에서 GATT 규정에 일치하는 내국세, 운송 및 구입, 판매, 가공에 수반되는 기타비용 및 적정 이윤은 제외되며, 수입가격은 실제 수입가를 적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공용을 제외하고는 수입쌀의 국내도매 판매가격이 없는 상태이므로 현재의 국내도매가격과 수입하고 있는 MMA 쌀의 가격자료를 이용하여 mark-up을 시산하면 다음과 같다.

표 6-6 쌀의 Mark-up 시산

단위: 원/80kg, %

	국내 가격	MMA 전체평균 (A)	단립종 평균 (B)	전체평균		단립종 평균	
				종가	종량	종가	종량
2001	157,613	36,250	32,719	335 %	121,363	382 %	124,894
2002	154,385	34,079	35,586	353 %	120,306	334 %	118,799
2003	161,321	45,284	44,659	256 %	116,037	261 %	116,662
평균	157,773	38,538	37,655	315 %	119,235	326 %	120,118

국내가격은 최근 3년간 산지쌀값으로 설정하고 수입가격은 MMA 수입가격(cif)에 관세와 항만사용료, 통관비용, 국내검정료를 추가하여 산정할 경우 mark-up 시산치는 종가기준으로 315~326%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운용은 최근의 도매시장 판매가격과 수입가격을 기초로 삼아, 월간 mark-up, 주간 mark-up을 산정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mark-up은 종가세와 종량세 중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부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mark-up으로 인한 수입차익의 활용은 전체 쌀 산업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국내 쌀의 유통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곡종의 쌀의 혼합을 방지하여 균일한 품질의 쌀이 유통되어 우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와 함께 수입쌀과 국내 쌀의 혼합 및 둔갑 판매의 방지를 위한 방안의 마련도 중요한데 고가의 수입쌀은 국내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입브랜드 자체로 국내시장에 판매되고, 중국산 저급쌀은 국내산과의 가격차가 큰 경우 국내산으로 둔갑하든지 혹은 국내산과 혼합을 통해 부정유통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중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단속강화 및 위반업체 처벌 수위 강화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포장양곡 표시제도도 적절히 개정될 필요가 있다. 즉 농관원 또는 민간검사기관이 포장양곡의 표시내용을 확인하고 인증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제7장 참고문헌

<국내자료>

- 김명환 등. 1993. 「UR 타결에 따른 농축산물시장 개방의 과급 영향 분석」. P930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서진교, 이재옥, 이병훈, 김상현. 2003. WTO/DDA 농업협상 시장접근 분야 주요 쟁점 별 영향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보고서. C2003-28.
- 이옥. 2004. DDA 농업협상 관련 품목군 분류 검토. 농협중앙회 농협조사연구소.
- 이정환외. 2002. 『곡물의 중장기 수급 전망과 대응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정환외. 2002. 『쌀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대책 세부시행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이재옥, 김동민, 서진교, 사공용, 임정빈. 1994. 「수입개방이후 농산물 수입관리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보고서 C94-3.
- 이재옥, 최윤국. 1997. 「농산물 수입개방의 영향평가와 수입관리방안」.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연구보고 R364.
- 이재옥, 임정빈, 임송수, 오세익, 심영규. 1999. 「WTO 차기 농산물 협상의 전망과 대 책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보고. C99-36.
- 임송수, 서진교, 김상현, 임소영. 2004. 농업협상 기본 골격 초안의 평가와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속보. 2004-7(제10권).
- 임송수, 이재옥, 서진교, 김상현. 2003. WTO/DDA 농업협상 모델리티 평가와 국내대 응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용역보고서. 2003-23.
- 임정빈. 1999. 「UR 이후 농산물 시장개방의 이행과 후생영향 분석」. “농업경제연 구”. 40(2). 한국농업경제학회
- _____. 2000. “WTO 출범 이후 시장접근방식의 국제적 비교 및 정책적 함축성”. 「농업경제연구」 제41권 2호. 한국 농업경제학회.
- _____. 2000. 「차기 농산물 관세 인하 협상과 정책과제」 “농업경제연구”. 41(2). 한 국 농업경제학회

- 임정빈, 이재옥, 어명근. 2000.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관리방식의 개선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R422.
- 한두봉 외. 1999. 「WTO 차기 농산물 협상의 시장개방 효과」. 고려대학교 자연자원 연구소.
- 농림부. WTO 농업위원회 논의 사항. 국제농업국.
- _____. 2003. 통계로 보는 농림업.
- _____. 2003. 농업통상 업무참고 자료.
- _____. 2004. 농림축산물 품목분류(HSK) 및 관세율.
- _____. 『양정자료』 각 연도.
- _____. 『농림업 통계연보』, 각 연도
- _____. 『작물통계』, 각 연도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002.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
- 농수산물 유통공사. 1999. 「국영무역 품목별 수입개방 영향 분석」
- _____. 1999. 『농업분야 국영무역기업(번역자료)』

<국외자료>

- ABARE, 1999, WTO Agricultural Negotiations: Market Access Issues.
- Abbot, P. and L. Young, 1997, Wheat Importing STEs. Montana Trade Research Center, Discussion Paper. #97-3
- Abbott and Morse. 2000. TRQ Implement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n Agriculture and the New Trade Agenda in the WTO 2000 Negotiations. World Bank.
- Abbott and Paarlberg. 1998. Tariff Rate Quotas: Structural and Stability Impacts in Growing Markets. Agricultural Economics.
- Ackerman, K.Z. 1997. State Trading Enterprises: Their Role as Importers, Agricultural Outlook. USDA. ERS.
- Ackerman, Karen Z., and Praveen M. Dixit. 1999. An Introduction to State Trading in agricultur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AER-783.

- Alaouze, C., A. Watson and N. Sturgess. 1978. Oligopoly Pricing in the World Wheat Market.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0.
- Anderson, K. and I. Ahn, "Protection Policy and Changing Comparative Advantage in Korean Agriculture," *Food Research Institute Studies*, 2, 139-151, 1984.
- Barichello, R. 1996. The Nature of State Trading in Indonesia: The Case of BULOG. Presentation to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Research Consortium.
- _____. 2000. A Review of Tariff Rate Quota Administration in Canadian Agriculture.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 Bernier, I. 1982. State Trading and the GATT, in Kostecki, M.M., editor, *State Trading in international Markets*. St. Martins Press, New York.
- Bergsten, C.F., K.A.Elliott, J.J. Schott, W. Takacs, et al. 1987. Auction Quotas and United States Trade Policy.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Branard and Martimort, 1997, "Strategic Trade Policy with Incomplete Informed Policymakers." *Jour.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42, pp33-65
- Bureau and Tangermann. 1999. Tariff Rate Quotas in the EU. LATRC web site.
- Carter, C.A., and R.M.A. Loyns. 1996. The Economics of Single Desk Selling of Western Canadian Grain. Alberta Agriculture, Canada.
- Carter, C. and W.W. Wilson, 1997, "Emerging Differences in State Grain Trading: Australia and Canada." *Agricultural Economics* 16:87-98
- Chen, Kevin, and Karl Meilke. 1998. "The Simple Analytics of Transferable Production Quota: Implications for the Marginal Cost of Ontario Milk Production." *Canadi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46 pp.37-52.
- Choi, J.S., D.A. Sumner, and J. Song. 1998. Importing STEs in Korea and Japan: Evolution, Operation and Implications,. presented on November 20, 1998, at the Workshop on State Trading in North America, sponsored by the North America Forum at Stanford University and the Agricultural Issues Center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 David W. Skully. 1992. Price Discrimination and State Trading: the Case of U.S. Wheat. European Review of Agricultural Economics, 19.
- _____. 1999. "The Economics of TRQ Administration". 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Research Consortium. Working Paper #99-6.
- _____. 2001. "Economics of Tariff-Rate Quota Administration". Economic Research Service/USDA. TB-1893.
- Dixit, Praveen M. and Tim Josling, 1997, "State Trading in Agriculture: An Analytical Framework." IATRC, Working Paper #97-4, July
- E Cunha, L.C. and V. Santos, 1996, "Sleeping Quotas, Pre-Emptive Quota Bidding and Monopoly Power." Jour. of International Economics, Vol 40:127-148
- Ghai, D.P. 1973. State Trading an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United Nations, New York.
- Goodale, R. 1998. .Amendments to the Canadian Wheat Board: Goodale Responds to Questions about Bill C-4., Agriculture and Agrifood Canada news release
- Josling, T. 1997. Managed Trade in Agricultural Markets,. Tim Wallace and Bill Schroder, eds., Perspectives on Food Industry and Government Linkages.
- Josling, T. 1998. Agricultural Trade Policy: Completing the Reform.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olicy Analyses in International Economics #53.
- Kostecki, M.M. 1982. State Trading in Agricultural Products by the Advanc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Background,. Kostecki, M.M., ed., State Trading in International Markets, St. Martins Press, New York.
- Kraft, D.F., W.H. Furtan, and E.W. Tyrchniewicz. 1996.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Canadian Wheat Board,. Working Paper, University of Manitoba, Canada.
- LaFrance, J.A., A. Schmitz, and D. Silberman. 1984. Small Leading Firms,. Economic Record.
- Lloyd, P.J. 1982. State Trading and the Theory of International Trade,. Kostecki, M.M., ed., State Trading in International Markets, St. Martins Press, New York.

- Martin, W., and C. Bach. 1998. State Trading in China, in State Trading in the Twenty-First Century, eds. T. Cottier and P.C. Mavroidi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McCalla, A.F., and A. Schmitz. 1982. State Trading in Grain,. Kostecki, M.M., ed., State Trading in International Markets, St. Martins Press, New York.
- Milgrom, Paul. 1989. "Auctions and Bidding: A Primer."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 (3) pp. 3-22.
- Miner, W.M. 1998. State Trading and the WTO: Reforming the Rules for Agriculture,. presented in Palo Alto on November 21, 1998, at the Workshop on State Trading in North America, sponsored by the North America Forum at Stanford University and the Agricultural Issues Center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 Oskam, Arie, J. 1991. Quota Mobility and Quota Values and Their Influences on Structural Development of Dairy Farming. Paris: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 Paarlberg, P.L., and P.C. Abbott. 1986. Oligopolistic Behavior by Public Agencies in international Trade: The World Wheat Market.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68.
- Rucker, Randal R., Walter N. Thurman, and Daniel A. Sumner. 1995. "Restricting the Market for Quota: An Analysis of Tobacco Production Rights with Corroboration from Congressional Testimon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3(1) pp. 142-175.
- Skully, David. 1993. The Governance of Agricultural Trade: Perspectives from the 1940s. The Environment, Government Policies, and International Trade: A Proceedings, M.D. Shane and H. von Witzke (eds.),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Staff Report AGES-9314.
- _____. 1998. "Auctioning the Tariff Quota for U.S. Sugar Imports." In Sugar and Sweetener Situation and Outlook Report.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Market and Trade Economics Division. May.

- Skully, David. 1999. "U.S. Tariff-Rate Quotas for Peanuts." Oil Crops Situation and Outlook Yearbook,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Market and Trade Economics Division. October (OCS-1999) pp. 45-53.
- _____. 2000. "U.S. Tariff-Rate Quotas: Historical Allocation and Nondiscrimination."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29(1) pp. 81-90.
- Sorenson, V.L. 1991. The Economics and Institutional Dimension of State Trading,, in Sorenson, Vernon L., and others, editors, State Trading in International Agricultural Markets: Institutional Dimension and Select Cases. International Policy Council on Agriculture and Trade, Washington.
- Sumner, D., and T. Josling. 1998. The Role of the State in Agricultural Trade in North America: The U.S. Commodity Credit Corporation as a Government Actor in the North American Market for Grains,. presented on November 20, 1998, at the Workshop on State Trading in North America, sponsored by the North America Forum at Stanford University and the Agricultural Issues Center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 Swinnen, J. and F. Van der Zee, "The political economy of agricultural policies: A Survey," Europe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20, 261-290, 1993.
-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Trade Research Consortium(IATRC). 1994.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An Evaluation. IATRC Commissioned Paper No. 9.
- IATRC. 1997. Implementation of the Uruguay Round Agreement on Agriculture and Issues for the Next Round of Agricultural Negotiations.
- _____. 2000. Issues in Reforming Tariff-Rate Import Quotas in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in the WTO. Commissioned Paper Number 13.IATRC Commissioned Paper No. 12.
- USDA. ERS. 1997. TRQs Have Little Impact on EU Market Access, While CEEs May Benefit. International Agriculture and Trade Reports. Europe. WRS-97-5.

- USDA. ERS. 1998. Agriculture in the WTO, M.A. Normile, Goord, International Agriculture and Trade Reports. WRS-98-4.
- _____. 1999. ERS's WTO Briefing Room. Various Issues.
- WTO. 2000. Tariff and other quotas. Committee on Agriculture. G/AG/NG/S/7.
- _____. 2000.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Tariff Quota Fill. Committee on Agriculture. G/AG/NG/S/8.
- _____. 2002. Tariff Quota Administration: Auction. Committee on Agriculture. TN/AG/S/
- _____. 2002.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Tariff Quota Fill. Committee on Agriculture. TN/AG/S/6.
- _____. 2002. Tariff and Other Quota. Committee on Agriculture. TN/AG/S/.
- _____. 2003. Negotiations on Agriculture First Draft of Modalities for the Further Commitments. Committee on Agriculture. TN/AG/W/1.
- _____. 2003. Negotiations on Agriculture First Draft of Modalities for the Further Commitments. Committee on Agriculture. Revised. TN/AG/W/Rev. 1.
- _____. Guide to GATT Law and Practice. Committee on Agriculture. web site.

<웹사이트>

1. <http://www.fao.org>
2. <http://www.oecd.org>
3. <http://www.wto.org>
4. <http://www.usda.gov>
5. <http://www.ers.usda.gov>
6. <http://www.worldbank.org>
7. <http://www.ifpri.org>

부록 1 TRQ관련 GATT 13조 및 17조

< GATT 제13조(수량제한) >

1. 체약당사자는, 모든 제3국의 동종 상품의 수입 또는 모든 제3국으로의 동종 상품의 수출이 유사하게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다른 체약당사자 영토로 향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나 제한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상품에 대하여 수입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제한이 없을 경우에 여러 체약당사자가 얻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는 뜻에 가능한 한 근접하도록 동 상품의 무역량을 분배할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의 규정을 준수한다.
 - (a) 실행가능한 경우에는 항상, 허용된 수입의 총량을 나타내는 쿼터(공급국간에 할당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가 확정되어야 하며, 동 총량은 이 조 제3항(b)에 따라 공고되어야 한다.
 - (b) 쿼터가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 허가 또는 승인에 의하여 제한이 쿼터 없이 적용될 수 있다.
 - (c) 체약당사자는 이 항 (d)호에 따라 배분되는 쿼터의 운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국가 또는 공급원으로부터의 당해 상품의 수입을 위하여 수입면허 또는 수입허가가 이용되도록 요구하여야서는 아니된다.
 - (d) 공급국간에 쿼터가 배분되는 경우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는 당해 상품의 공급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른 모든 체약당사자와 쿼터몫의 배분에 관한 합의를 모색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이 합리적으로 실행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체약당사자는 동 상품의 공급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체약당사자에게 뜻을 배분하되 동 상품수입의 총량 또는 총액 중 과거의 대표적인 기간 동안 동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공급된 비율에 기초한 동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거나 미치고 있을 수도 있는 특별한 요소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한다. 체약당사자가 이러한 총량 또는 총액 중 자신에게 배분된 뜻을 전량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조건이나 절차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단, 동 쿼터가 관련될 수 있는 정하여진 기간 내에 수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 (a) 수입제한과 관련하여 수입허가가 발급되는 경우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는 당해 상품의 무역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동 제한의 시행, 최근의 기간 중 부여된 수입허가 및 동 허가의 공급국간 배분에 관한 모든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단, 수입 또는 공급 기업의 명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다.
 - (b) 쿼터 확정을 수반하는 수입제한의 경우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는 장래의 특정한 기간 동안 수입되도록 허가될 상품 또는 상품들의 총량 또는 총액 및 이러한 물량 또는 금액에 있어서의 변경을 공고한다. 공고된 당시에 수송 도중에 있었던 당해 상품의 공급량은 수입으로부터 배제되지 아니한다. 단, 동 공급량은 당해 기간 중에 수입되도록 허용된 물량에서,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기간이나 기간들 중에 수입되도록 허용된 물량에서 실행가능한 한 공제될 수 있으며, 또한 체약당사자가 동 공고일 후 30일의 기간 동안 소비용으로 수입되거나 소비용으로 출고된 상품을 위의 제한으로부터 관습적으로 면제시키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이 호에 완전히 합치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 (c) 공급국간에 배분되는 쿼터의 경우 동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는 여러 공급국에게 물량 또는 금액 기준으로 배분된 쿼터의 몫을 당해 상품의 공급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른 모든 체약당사자에게 신속히 통고하고 이를 공고한다.
4. 이 조 제2항(d)에 따라 또는 제11조제2항(c) 하에서 적용되는 제한에 관하여, 상품에 대한 대표적 기간의 선정 및 동 상품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요소의 평가는 처음에는 동 제한을 적용하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단, 동 체약당사자는 동 상품의 공급에 대하여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른 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체약당사자단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결정된 비율 또는 선정된 기준기간을 조정할 필요성, 또는 관련특별요소를 재평가할 필요성, 또는 적정쿼터의 배분 또는 동 쿼터의 제한 없는 사용과 관련하여 일방적으로 정하여진 조건, 절차 또는 그 밖의 규정을 철폐할 필요성에 관하여 상대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단과 신속히 협의한다.
5. 이 조의 규정은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설정 또는 유지되는 모든 관세쿼터에 적용되며, 적용 가능한 한 이 조의 원칙은 수출제한에 또한 적용된다.

<제17조 국영무역기업>

1. (a) 각 체약당사자는 그 소재지 여하를 불문하고 국영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거나 기업에 대하여 배타적이거나 특별한 특권을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부여하는 경우 이러한 기업이 수입 또는 수출을 수반하는 구매 또는 판매에 있어서 민간무역업자에 의한 수입 또는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조치에 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된 무차별대우의 일반원칙에 합치 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임을 약속한다.
(b) 이 항 (a)호의 규정은 이러한 기업이 이 협정의 다른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가격, 품질, 이용가능성, 시장거래가능성, 운송 및 그 밖의 구매 또는 판매 조건을 포함한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이러한 구매 또는 판매를 할 것과 다른 체약당사자의 기업에 대하여 관습적인 영업 관행에 따라서 이러한 구매 또는 판매에 참가하기 위하여 경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c) 어떠한 체약당사자도 자신의 관할권 하에 있는 기업(이 항 (a)에 규정된 기업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이 이 항 (a)호 및 (b)호의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정부의 사용에 있어 즉각적 또는 최종적인소비를 위한 것으로서 달리재판매 또는 판매용 재화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수입에 관하여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체약당사자의 무역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한다.
3. 체약당사자들은 이 조 제1항(a)에 기재된 종류의 기업이 무역에 심각한 장애를 조성하도록 운영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를 제한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상호적이고 호혜적인 기초 위에서의 협상이 국제무역의 확대를 위하여 중요하다.
4. (a)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1항(a)에 기재된 종류의 기업에 의하여 자신의 영토로 수입되거나 자신의 영토로부터 수출되는 상품을 체약당사자단에 통보한다.
(b) 제2조 하에서의 양허 대상이 아닌 상품의 수입독점을 설정, 유지 또는 승인하는 체약당사자는 동 상품 무역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다른 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최근의 대표적인 기간동안의 동 상품의 수입차액을, 또는 이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동 상품의 재판매에 부과되는 가격을 체약당사자단에 통고한다.

- (c) 체약당사자단은 이 협정하의 자신의 이익이 제1항(a)에 기재된 종류의 기업의 운영에 의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체약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러한 기업을 설치, 유지 또는 승인하는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규정의 시행에 관련된 동 기업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d) 이 항의 규정은 체약당사자가 법률의 시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또는 특정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할 비밀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부록 2 WTO 농업협상에서 관세할당제(TRQ)에 대한 주요국 제안

1. 분석 및 정보교환(AIE) 작업

1) 미국

관세할당물량(TRQ), 즉 시장접근물량을 제시하고 수입을 관리하는 제도는 UR 협상에서 관세화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보완조치로서 수출국들에게 최소한의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WTO 규범 중에는 TRQ 관리방법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규율이나 규범이 없다는 주장이다. TRQ 관련 유일한 조항은 제13조(국별 쿼터의 배분방식)로서 잠재적인 공급국에 대한 접근기회의 배분문제를 강조하고 있으며 수입관리에 대한 규범은 달리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제17조는 국영무역에 한정하고 있어 시장접근물량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한 규범으로서는 적당치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UR협상 타결 이후 회원국들은 TRQ 제도하에서 시장접근기회의 획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며, 따라서 차기협상에서는 TRQ 관리방법을 규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범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미국은 개별 수입관리방식이 TRQ의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방식을 규율할 수 있는 규범과 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검토를 강조(AIE/7)하였다.

- ① 수입허가가 TRQ 전량에 대해 수입업자와 최종사용자에게 배분되었는 지의 여부,
- ② 수입허가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지의 여부,
- ③ 수입국의 가격수준과 국제가격과의 관계

TRQ 수입관리 방식 중에서 수입을 제한하는 다음과 같은 관행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① 생산자단체에 수입권 부여 및 수입권 재 배분 조치의 자연 여부
- ② 수입권의 유효기간 제한
- ③ 국산 농산물 구매를 조건으로 한 수입허가

- ④ 수입허가와 수출허가의 연계
- ⑤ HS 4단위로 쿼터를 설정하고 6단위 이하에서는 특정품목에 대해 쿼터배정을 배제하는 조치
- ⑥ 사료용, 가공용 등으로 최종용도를 제한하는 조치
- ⑦ 수입권 용모자격의 제한
- ⑧ 국영무역기관을 비롯하여 수입창구를 단일화하는 조치
- ⑨ 높은 쿼터 관세율(in-quota tariffs)

또한 미국은 국영무역기업은 전통적인 목적(수입통제, 과잉생산 해소와 비상업적 수출, 비상시 식량확보 등)에서 벗어나 정부의 지원하에 독점력을 행사, 무역을 왜곡할 위협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2) EU

EU는 UR협상 결과 TRQ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농업협정문에서 TRQ 관리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원국들은 그동안 GATT 제13조의 수정, 보완을 주장해 왔다고 주장하였다. EU 역시 TRQ의 투명하고 무차별적인 수입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세할당물량, 즉 시장접근물량의 수입은 공정, 투명하며 효율적인 방식으로 관리하여 쿼터물량의 미소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나 관세할당물량 수입에 따른 이익이 클수록 보다 엄격한 쿼터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은 EU가 분석한 각 수입관리 방식의 장단점들이다.

- ① FCFS: 비관료적인 측면에서 가장 신축적인 방식이나 쿼터의 경제적 가치가 클 경우에는 혼란 초래
- ② 수입권 배분(System of simultaneous examination); 수입허가

무역의 왜곡 없이 점진적으로 시장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나 해당 품목의 특수한 시장 상황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음(예: 수입권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도입, 최소 또는 최대 수입량, 수입권의 전매 허용).

③ 과거 수입실적에 기초한 수입권 배분

수입권 과다신청의 폐단은 없으나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하지 못해 비효율적임.

④ 경매

공매제도는 신축, 투명하며 무차별적인 수입관리 방식으로서 수입업자간의 경쟁을 유발하여 쿼터의 소진을 촉진시키며, 다수의 동질적인 수입업자가 참여해야 효율적.

3) 호주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방식은 품목의 특성, 시장상황, 쿼터의 규모, 계절적인 무역의 흐름, 공급국가의 수, 수입국 내에서의 배분방식 등에 따라 상이할 것이라고 호주는 주장하였다. 그러나 TRQ 관리방식은 공정성, 무차별성, 투명성, 상업적 고려 등에 기초해야 하며, 수입품이 수입국에서 가격과 품질에 의해 경쟁이 가능해야 하며 최종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접근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호주의 입장이다. 호주는 효율적인 수입관리방식의 하나로서 선착순제도의 채택을 주장(AIE/9)하고 있다. 그러나 선착순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 쿼터물량의 증량, 2) 쿼터 미 사용자에 대한 벌칙부과, 3) 미 사용쿼터의 재사용, 4) 중앙집권적인 수입관리체제 수립(선착순제도의 불확실성 제거를 위해)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방식과 관련된 수입허가절차(Import Licensing Procedure), 무역관련 투자조치 협정(TRIMS), GATT 1조, 2조, 8조, 11조, 13조, 17조와의 관계도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4)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수입관리에 관한 규범으로서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제3조(비자동수입승인)”를 원용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제3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3조 2항 : 무역제한 또는 왜곡효과, 또는 추가적인 부담을 유발하지 말아야 함(예; 국산구매의 무 부담)
- ② 3조 5항(e) : 법적, 행정적 요건(거주요건, 최종용도제한 등)을 통한 부적절한 제한금지
- ③ 3조 5항(g) : 합리적인 수입권의 유효기간 설정

- ④ 3조 5항(j) : 수입권의 배분은 정상적인 상업적 관계를 고려하고 신규참여자의 기회도 보장(추첨이나 공매는 바람직하지 못함)

2.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1) 미국

미국은 농산물협상 전반에 관한 제안서(G/AG/NG/W/15)에서 모든 품목의 시장접근률량(TRQ)를 연차적으로 상당 수준 증량시키고, TRQ 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TRQ 수입을 촉진하기 위한 자동적인 장치와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미국은 또 다른 제안서(G/AG/NG/W/58)에서 TRQ 개혁방향에 관해 폭 넓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TRQ 수입관리 방식의 개선을 위한 4가지 원칙을 강조하였다.

- ① TRQ 관리방법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TRQ에 대한 추가 규율 제정
- ② 과거의 TRQ 수입률을 기초로 in-quota 관세를 인하, 즉 이행률이 낮은 경우 in-quota 관세를 더 큰 폭으로 인하
- ③ 국가간 관세격차의 축소 및 TRQ 물량의 점차적인 증량
- ④ TRQ 이행률이 낮을 경우 자동적으로 in-quota 관세를 인하

TRQ 규율제정과 관련하여 미국은 기존의 WTO 관련 규정(수입허가절차협정, GATT 10조, 13조)을 더욱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면 TRQ 관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되어 무역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규율제정에서의 원칙으로서 투명성(Transparency), 비제한성(Non-restrictiveness), 재배정(Reallocation) 등의 원칙을 강조하였다. 미국이 제시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다.

○ 투명성(Transparency)

TRQ 수입관리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회원국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수입허가절차협정상의 투명성에 대한 지침과 GATT 제10조(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지침)의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예로서 쿼터배정일자, 수입승인의 유효기간, 표준적인 의사소통 매체, 쿼터시스템의 변경을 위한 절차 등을 공표하거나 일반대중에게 널리 알리도록 한다. 투명성이 제고되면

잠재적인 수출입업자들이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시장수요에 대응하고 TRQ를 무차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비제한성(Non-restrictiveness)

농업위원회(AIE)에서 많은 국가가 TRQ 수입을 제한하거나 시장수요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수입을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제한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수입허가절차 협정과 관련 GATT 조항에 기초하여 수입이 가공농산물에 불리하고 원료 농산물에 한정되지 않도록 새로운 규율을 제정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최종용도의 인위적인 지정, 혼합규정이나 국산품 구매기준, 국내 생산자를 통한 수입허가 배분, 수출허가 조건부 수입권 배분, 재수출 요건 등을 금지하고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한 물량 배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TRQ에 의한 무역제한 효과를 방지하고 회원국들의 소비수요가 가장 잘 반영된 제품으로 TRQ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될 것이다.

○ 재배정(Reallocation)

일반적으로 많은 TRQ 관리방법(특히 수입허가)은 수입권의 재배정 기회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고 있다. 수입권을 배정받은 자가 특정기간 내에 선적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사용된 수입권을 반납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또한 회원국들은 신속히 미사용 허가를 신규 참여자를 포함하여 다른 수입업자에게 재배정해야 한다.

2) 캐나다

캐나다는 제안서(G/AG/NG/W/12)에서 시장접근의 개선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근본적인 개혁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회원국간, 품목간에 시장접근상 큰 불균형이 계속되고 있으며 단일관세 품목의 경우 경쟁관계(예; 옥수수와 사료용 보리)에 있는 품목간에, 그리고 가공간계 별로 관세수준의 격차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이중관세품목(시장접근률량을 설정한 품목)의 경우 in-quota 관세가 높아 시장접근률량의 수입비율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TRQ 관리방식의 개선방향으로 1) 쿼터에 대한 관세 철폐, 2) 품목군이 아닌 품목별로 쿼터를 증량(예; 육류가 아닌 돼지고기), 3) 품목내에서는 세분하지 않고 시장접근기회 허용(예; 도체와 부위별로 다르게 취급하지 않고 돼지고기), 4) TRQ의 의한 자유화 정도를 고려하여 고율관세 수준 결정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캐나다는 수입추천률량이나 추천서의 유효기간 제한 등 비시장적인 TRQ 관리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자고 하였다.

3) 케언즈그룹

케언즈그룹도 시장접근에 관한 제안서(G/AG/NG/W/54)를 제출하고 농산물 및 농산 가공품에 대한 시장접근기회의 대폭적인 개선을 주장하였다. 우선 차기협상에서는 시장접근물량을 상당 수준 증량하고 TRQ 관리방식이 기존에 설정한 시장접근의 규모와 가치를 저하시키지 않도록 추가적인 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시장접근기회의 실현을 방해하는 모든 관행과 조치에 대한 상세한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함에 있어 UR협상의 개혁과정이 계속되었을 경우 요구되는 수준의 TRQ 증량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4) 개도국

쿠바 등 11개 개도국들은 제안서(G/AG/NG/W/37)에서 선진국들의 TRQ관리는 단순, 투명 해져야 하며 모든 무역상대국에게 비차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TRQ가 수입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 ① 쿼터물량 관리를 단순화하기 위한 지침 마련
- ② 최소시장접근 기회의 국내소비를 계산함에 있어 동일한 기준년도 사용
- ③ 품목군이 아닌 품목별 쿼터의 설정
- ④ 선진국의 경우 수입이 시장접근물량 초과 수준에 이르기 전까지는 쿼터량의 수입을 의무화
- ⑤ 개도국의 신규 공급자에게 쿼터물량의 할당에 있어 동등한 기회 제공
- ⑥ 개도국의 시장접근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선진국의 TRQ를 확대

3. 국영무역에 대한 주요국 입장

수입관리 방식의 하나로서 국영무역은 지난 수십여년간 GATT가 인정해 온 제도이며, 국영 무역에 관한 GATT 제17조는 UR 협상을 통해 추가로 채택된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와 함께 GATT 1994에 편입되어 국영무역기업을 규제하는 일반조항이 되었다. 그러나 일부 수출국들은 UR 협상 이후 다수의 수입국들이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의 차원에서 원용하고 있는 국영 무역제도가 무역을 제한하고 국내 생산자에 대해 우회적으로 보조하는 등 자유무역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회원국들이 운영하고 있는 수출입국영무역의 잠재적인 무역왜곡효과가 있다는 입장하에 좀 더 엄격한 원칙의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단일 수입기관 (single desk buyer)은

- ① 수입가격, 판매가격, 수입품의 등급 및 품질 등을 자의적으로 결정하며 최종수요자와 수입업자의 직거래를 방해하고,
- ② 수입물량을 제한하고 관세체계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으며,
- ③ 고의적으로 저급품을 수입하여 수입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부과금을 부과하여 판매가격을 인상시키고,
- ④ 단일 수입기관이 수입을 독점하는 것은 구매의 효율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은 단일 수출기관(single desk seller)에 대해서도 수출가격의 설정이 불투명하며,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농업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어렵게 하고, 독점적 수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입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동일 품질의 상품에 대한 가격차별화로 이윤을 극대화하며, 가격 풀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를 초래한다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호주·뉴질랜드는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수입국영무역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반면에 수출국영무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반박하고 있다. 수출국영무역의 운영으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고 품질관리 및 배달비용의 절감노력에 있어 사기업의 운영방식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가격차별이나 가격 풀 제도 역시 사기업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국영무역의 존재 자체가 무역장벽이나 무역왜곡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국영무역 자체에 관한 논의보다는 국영무역의 실질적인 무역왜곡효과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식량공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도 국영무역은 필요한 제도이며 GATT 제17조 규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상업적 고려’ 및 ‘무차별원칙’에 입각하는 한 국영무역제도는 계속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이다. 특히 한국은 국영무역은 GATT 제17조에 규정된 합법적인 제도이므로 국영무역의 존재 필요성을 논의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논의하는데 주력할 것을 제의하였다. 한편 미국이 주장하는 수입국영무역의 문제점들은 TRQ 관리방안을 논의할 때 함께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부록 3 하빈슨초안에서의 TRQ관리 관련 내용

<관세할당제 운영의 규범화 작업에 대한 향후 고려사항(안)>

1. “관세할당 약속” 대상 품목의 정해진 물량과 금액에 관한 회원국 이행계획서의 1장의 관세양허는 이 장의 조항들과 수입등록절차에 관한 협정의 조항들을 포함한 관련 WTO 규정에 의해 거해 운영된다.
2. 관세할당 약속은, 그 약속에 의해 제공된 시장접근 기회가 완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일반원칙을 적용한다.
 - (a) 관세할당 약속은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방법으로 그리고 최대한 실행가능하도록 관세 양허와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된다.
 - (b) 국내구매의무 또는 동일한 효과를 갖는 다른 조치들이 관세할당 품목의 수입에 또는 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 (c) 이행계획서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계절적인 제한조치도 관세할당물량에 부과되지 않는다.
 - (d) 관세할당 약속은 그 관세할당 약속 내의 특정 품목의 수입을 방해하거나 가공된 형태 또는 최종소비자 판매용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지 않는다.
 - (e) 관세할당제 운영방법은 상업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수입자에게 배분되지 않는다.
 - (f) 최혜국대우를 받는 공급자로부터 관세할당 품목을 수입하는 것만이 관세할당 약속에 따른 수입으로 인정된다.
 - (g) 관세할당 품목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출 또는 재수출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 (h) 수입업자는 외국자본 참여의 정도에 따라 다른 수입업자와 차등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
 - (i) 관세할당제의 운영 또는 관세할당 품목의 수입과 관련하여 1994년 GATT에 허용된 이외의 수수료, 예치금, 기타 금융상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3. 다음의 구체적인 의무가 이하 언급되는 관세할당 약속에 적용된다.(“년도”는 회원국의 이행계획서에 정해진 월력기준 연도, 유통연도 또는 기타 연도이다.)

(a) 수입조건으로 수입허가를 요구하지 않는 관세할당제의 경우 접근기회는 해당연도 초부터 제공되며 시장접근물량 이내 관세로 수입할 기회가 유보될 경우 적절한 시간을 두고 사전 공시를 한다.

(b) 수입허가를 요구하는 관세할당제인 경우

(i) 관세할당총량 또는 총액은 그 수입이 당해연도 초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개도국과 원거리에 있는 공급자로부터의 수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수입년도 훨씬 이전에 수입업자에게 배분된다.

(ii) 관세할당 분배에 지원해 뜻을 분배받은 소매유통업자와 기타 최종수요자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없다. 수입허가 유효기간 내에 수입업자가 분배된 물량을 소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건이나 규범도 부과할 수 없다.

(iii) 관세할당권은 [8]개월간 유효하며 운영기관의 허가 없이 양도할 수 없다.

(iv) 관세할당 허가의 유효기간 종료 후 소진 되지 않은 관세할당 물량 또는 금액 해당 연도 이전에 수입이 가능하도록 재분배된다.

(c) 국가별로 관세할당 분배가 이루어지는 경우: 특정 국가에 할당된 뜻이 소진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소진률이 낮은 경우 그 잔여분 또는 미소진분은 타국가에 재배정된다.

4. 이 첨부물의 조항들은 국영무역기업에 의해 또는 국영무역기업을 통해 운영되는 관세할당 약속에 적용된다.

5. 공표와 관련된 GATT 1994 10조 1항의 요구사항 외에, 관세할당 약속을 운영하는 회원국은 관세할당 약속의 운용과 관련된 정보의 접근이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개설한다. 해당 정보에는 운영상의 의무와 절차, 관세할당분이 배분된 수입업자의 우편 주소 및 이메일 주소, 소진율 등을 포함한다. 개도국들은 웹사이트 대신에 중앙자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6. 특별차등대우 : 선진국들은 DDA 협상 결과인 기존 또는 새로운 관세할당 하에서 접근이 확대 될 경우 그 분배와 관련하여 개도국 농산물에 특별차등대우를 한다. 관세할당은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개도국에 배분되었던 GATT 1994 13조의 운용목적상 개별국가의 배분은 해당국가의 이행계획서에 명기된다.; 미소진분의 재배분은 개도국 공급자 가운데서 이루어진다. 선진국은 요청받는 경우 관세할당제 하에서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촉진하기 위해 가능한 최대한의 자문과 유통상의 도움을 제공한다.

<수입국영무역기업: 농업협정 4조3항 신설을 위한 추가적 고려사항(안)>

3.

- (a) 회원국들은 수입국영무역기업이 이 조문에 합치되고 조문의 각 항목의 구속을 받으며, GATT 1994의 17조와 기타 관련조항 및 본 협정과 기타 WTO 협정에 준하여 운용되도록 노력한다. 이 조문의 목적상 수입국영무역기업은 정부 또는 비정부기업이 될 수 있다. 이에는, 그 정부 또는 유사적 정부 지위로 인해 실질적으로 배타적인 특수한 권리, 특권 또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받거나 향유하는 유통위원회와 권리의 행사나 권리 자체에서 수입 국영무역기업(이하 “정부수입기업”이라 한다)이 구매나 판매를 통해 수입의 수준, 방향 또는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령에 의한 권리가 포함된다.
- (b) 회원국들은 정부수입기업이 시장접근양허의 혜택과 이 협정 4조2항의 비관세조치와 관련한 약속의 혜택을 무효화 또는 저해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c) 정부수입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회원국은 농업위원회에서 정한 양식과 주기에 따라 동 기업의 운용에 관한 관련 정보를 통보한다.
- (d) 정부수입기업에 관한 규범은 개도국들이 식량안보, 생계안전, 농촌개발 등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다. 위 (c)항의 통보의무는 개도국들에 적절한 특별차등대우를 제공한다.

부록 4. 경매제도에 대한 WTO 사무국 배경문서

Points and Issues Raised

○ 경매에 관해 제기된 문제점

- 경매를 통해 수입업자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해당 품목의 쿼터 내 세율이나 ‘그 밖의 세율과 과징금’과 관련하여 GATT 2조 1항 (b)의 수입국의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쿼터 물량의 수입허가권을 경매하는 것은 ‘수입과 관련하여 정부가 부과하는 수수료, 과징금, 절차 미 요구조건’에 대한 GATT 8조의 조항들에 반하는 것이다.
- TRQ 품목의 수입권을 경매하는 것은 수입업자와 수출업자 간의 상업적 유통관계를 혼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TRQ 품목과 국내산 상품간의 경쟁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쳐 GATT 3조 4항에 내포된 정신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 경매에 관한 지지의견

- WTO는 TRQ물량을 배분함에 있어 특정한 규정을 정해놓지 않았으므로 수입국은 자유롭게 적절한 관리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경매의 결과로 나온 부과금은 일반적인 국경 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경매는 순순하게 국내문제이며 합법적이고도 효율적인 수입량 분배방식이다. 또한 통합된 지불은 이행률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 경매는 경제적 지대에 대해 중립적(증가시키지 않음)이기 때문에 쿼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수출업자가 지불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수입권을 나누어 주었을 때 수입업자들 간의 수입권 거래가 발생한 경우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정부가 관리하는 경매를 통해 수입권을 사게 되면 경제적 지대가 재분배 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또한 수입권을 가진 사람이 rent seeking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WT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불이행하게 되는 일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Rules Aspects

- ① GATT규정 1조 1항에 명시된 최혜국 대우 원칙은 TRQ의 경매절차에 있어서도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수출국에 대해 동일한 규정 및 비용, 혜택을 적용하여야 하며 국별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 ② 경매의 수수료는 2조 1항 (b)의 두 번째 문장 ‘그 밖의 관세 및 모든 종류의 과징금’으로 볼 수 있다. 수입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한 경매수수료를 과연 수입과 연계된 과징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는데 수입허가권을 얻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하고 그렇게 해서 획득한 수입권은 TRQ물량을 수입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경매수수료와 수입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매수수료에 대해서도 2조 1항 (b)가 가지고 있는 무역상대국들의 혜택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목적과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
- ③ 경매수수료가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는 2조 1항 (b)에 의거한 한도를 적용할 수 없다. 첫째, 과징금의 성격과 수준이 양허표에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 둘째, 과징금이 ‘제공된 용역에 상응하는 수수료’가 아닐 경우이다. TRQ의 경매와 관련한 주요한 서비스가 수입허가권의 발급이라 한다면 수입국에 발생하는 비용이 2조 2항 (c)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이러한 비용은 미래의 가격에 대한 경매참가자들의 기대수준과 품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 ④ 제8조의 항목들은 수입허가권을 포함, 수입과 관련하여 정부가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과징금, 규정 및 요구조건”에 적용된다. 따라서 8조 1항 (a)는 수입허가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수수료뿐만 아니라 경매 절차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 ⑤ 미국의 관세사용 수수료(Customs User Fees)에 관한 GATT의 패널 보고서의 의견을 참조할 때, 제공된 용역의 비용을 초과하고 수입과 관련이 없는 활동에 사용되는 수수료는 8조 1항 (a)에 언급된 ‘재정상의 목적을 위한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과세’로 이해할 수 있다.
- ⑥ 8조 1항 (a)에 언급된 수준 이상의 경매수수료는 ‘간접적으로’ 특정 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수입품과 국내 상품간의 경쟁관계를 저해한다. 그 이유는 네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TRQ의 경매는 TRQ 품목의 수입의 “유효한” 진입가격을 자동적으로 올리고 있다. 국내 상품과 TRQ로 수입된 물량간의 가격차가 좁혀져 간접적으로 국내 상품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둘째, TRQ 품목의 국제가격이 경매 후 상승하여 다른 TRQ 관리방식을 이용했을

때에 비해 수입상품의 상대적인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셋째, 외국의 공급자와 국내 상인들 간의 상업적 관계를 봉괴하는 것은 수입상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넷째, 경매를 통해 얻어지는 수익금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국내 상품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

- ⑦ 경매는 두 가지 면에서 GATT 3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입상품이 유사 국내 상품에 직간접적으로 부과되는 어떤 종류의 내국과징금에 대해서도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3조 2항을 경매수수료와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경매절차는 3조 4항, 즉 ‘다른 체 약당사자의 영토내로 수입되는 체약당사자 영토의 상품은 그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법률, 규정, 요건에 관하여 국내원산의 동종 상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받아야 한다.’에 의거해 이루어져야 한다.
- ⑧ GATT 3조 2항에 따라 실제적으로나 잠재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경매가 있기 전에 TRQ 품목에 부과되는 수수료는 차별적이어서는 안 된다.
- ⑨ TRQ 품목의 경매를 3조 4항에 비추어 판단할 때 다음의 네 가지 면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수입되는 TRQ 품목과 국내 상품이 ‘유사 상품’인가. 둘째, TRQ의 수입허가권을 얻기위한 경매 참가가 ‘요구조건’인가. 셋째, 이 요구조건이 수입상품의 국내판매, 판매를 위한 제공, 구매, 운송, 유통 또는 사용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넷째, 수입된 상품이 유사한 국내 상품에 적용되는 조치들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이다.
- ⑩ TRQ의 경매를 농업협정문 상에 기재된 가변부과금과 유사한 조치로 볼 수 있는가에 관해 논란이 제기되었는데 최근 칠레의 농산물 가격제한제에 관한 상소 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경매와 관련된 과징금은 가변부과금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변부과금과 경매 관련 과징금의 유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가변부과금이나 경매수수료는 수입에 대해 부과된다. 조치 자체가 수수료의 변동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와 같은 조치로 인해 부과되는 부과금 수준에 있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낮다.
- ⑪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문 3조 2항에 다르면 ‘비자동’ 허가는 동 조치로 인해 무역을 제한하거나 왜곡시키는 효과가 없어야 한다. TRQ의 경매가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비자동 허가’라고 한다면 ⑥번 문단에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 ⑫ 위의 내용들은 경매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WTO/GATT 규정에 초점을 맞추어 정리한 것이다. 이 외에도 TRQ의 국영무역이 있을 경우 mark up의 수준에 대해 논의할 때 GATT 2조 4항을 참조할 수 있으며 이 문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TRQ의 관리방식에 대해서 GATT 23조 1항 (b)나 GATS 조항들을 참조할 수 있다.

Elements of Possible Disciplines

(1) 경매방식

모든 종류의 경쟁입찰 방식 적용 가능. 입찰방식은 공개적이고 투명할 것.

(2) 경매절차의 감독과 투명성

비정부 개인이나 단체가 감독. 경매와 관련된 정보들을 여러 형태로 발간하고 경매 결과를 알리는 것이 의무임.

(3) 경매참가자

상업적 수입업자, 수요자, 해당 품목의 외국 공급업자의 대표 혹은 대행업체

(4) 경매의 시기 및 횟수

TRQ 물량이 수입될 수 있는 해가 시작된 지 3개월 이내. (7)항에 따라 박탈된 수입물량은 바로 임시경매를 실시하거나 내년의 경매에서 재입찰된다.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상의 수정을 통하여 다년 경매를 실시할 수도 있다.

(5) 경매가능품목

전 해에 경매를 통한 이행률이 70%를 넘지 못했던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

(6) TRQ 수입허가권의 적용범위

낙찰자가 제시한 옵션에 기초한 해당 품목의 전체 물량 또는 그 일부. 단일품목 TRQ는 최소한의 양을 제외하고 모두 경매가능하다.

(7) TRQ 품목의 수입권 경매에 관한 일반조항

TRQ의 수입권은 경매 결과에 따라 그 해 첫날의 수입부터 적용가능하다. 수입권을 가진 사람 혹은 사업체가 수입할 권리가 있는 총량이나 액수만큼 이용할 수 없게 만드는 국내산 구acen 계절 판매는 금지한다. 특정 날짜까지 미사용 되었거나 사용실적이 저조하고 해당년도에 운송계약을 하지 못한 TRQ 수입권은 공시한 다음 재입찰 할 수 있다. 단,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8) 특별우대조치

개도국이 경매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요구하거나 개도국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경우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9) 재정적인 측면

경매인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일차적으로 경매의 수익금에서 충당한다.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수입은 TRQ품목의 생산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전되어서는 안 되며 특정 산업 보호를 위한 용도로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

부록 5. 공개상향식 경매제도와 이중경매제도의 효율성

1. 공개상향식 경매제도(open-call, ascending bid auction)

공개상향식 경매제도는 주관 경매자가 낙찰최저가격을 제시한 후 입찰자들이 점진적으로 입찰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더 이상 입찰가의 변화가 없을 때, 그 가격으로 낙찰자에게 판매하는 경매제도이다. 대표적인 예로 예술품과 중고차의 경우에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모든 입찰자를 한 곳에 모아서 공개경쟁입찰이(open-call)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 때 봉인된 입찰(sealed-bid auction)을 하는데, 입찰기간을 사전에 공시하고 봉인된 입찰가 제시를 요청한다. 이 때 다중가격제시와 단일가격제시의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다중가격 봉인입찰 경매는 입찰가와 희망수입량 제시하고, 공개후 입찰가가 높은 순으로 거래가 되는데, 쿼터가 채워질 때까지 가격을 인하하여 쿼터를 소진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가격차별이 이루어지고 동일한 수입량에 대해서 상이한 낙찰가가 발생한다. 단일가격하에서는 모든 낙찰자는 동일한 낙찰가로 결정되는데 이 수준은 비 낙찰가중 최고가로 결정한다(이것이 경쟁시장에서 시장균형가격의 가장 좋은 근사치이며, 한계낙찰가가 됨: Wilson(1977))

경제학자들은 단일입찰가가 다중입찰가 더욱 바람직하다는 입장인데 이는 다중입찰방식에서는 입찰자들이 타인의 입찰가의 알아내려고 하는 유인이 단일입찰가 방식에서 보다 커지는 반면 단일가격에서는 최고 비낙찰가와의 대소 비교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한편 WTO자료에 기초해 볼 때 TRQ 관리방법으로 경매제도 활용은 6%에 불과한데 이는 경매제도 자체가 대상 품목의 시장이 충분히 유동성을 갖고 있을 경우에 한해 다른 TRQ 관리제도에 비해 효율성이 높기 때문이다. 거래에서 유동성이 부족하면 가격을 발견하는 기능으로서의 경매는 그 기능이 매우 열악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유동성부족은 경매제도의 상대적 효율성을 떨어뜨려 경우에 따라서 수입허가보다 못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있다(Grossman and Miller (1988): 유동성부족은 미래선물계약을 위축).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은 경매제도에서 유동성은 거래자의 수와 관계가 되고 이중경매제도 아래서 거래자의 수가 적으면 시장효율이 떨어지지만 완전 효율성(100%)에 근접하기 위하여 2-3명 이상의 참여자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Gode and Sunder(1988)에 의하여 주장되기도 하였다.

한편 경매제도 사용의 저조에 대하여 정치적 이유도 존재하는데 경매제도 자체가 하나의 시장이고, 시장을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예를 들어 쿼터권한에 대하여 정부의 강력한 선호가 있을 경우 경매를 선호하지 않게 됨)이 그 한 이유로 언급되고 있기도 하다.

2. 이중경매제도의 효율성

가. 다중 동시 이중경매제도(Synchronized Double Auction with Multiple Round)

동시 이중경매제도는 이중경매를 일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이중경매제도로 마치 call auction이 계속되는 경우와 같다. 그 절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 ① 경매에 참가하는 모든 구매자와 공급자가 입찰가를 제시한다. 이 때 서로 상대방의 입찰가는 알지 못한다.
- ② 주관기관이 모든 입찰가를 모아서 최저 공급가를 상회하는 구매자의 입찰가를 크기 순으로 정리한 후 최고 구매자를 제시한 거래참가자와 최저공급자를 제시한 거래참가자간에 계약을 체결한다.
- ③ 위의 두 번째 단계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입찰가가 없으면 다시 재입찰에 들어간다. 재입찰시 이전 단계에서의 최고구매자와 최저공급자는 자동적으로 재입찰가격으로 설정되고 그를 제외한 모든 입찰자들은 재입찰가를 제출한다.
- ④ 이전 단계에서 최고구매자와 최저공급자를 제시한 거래자가 최종적으로 새로운 입찰가를 제시한다.
- ⑤ 주관기관은 모든 입찰가를 정리하여 최저공급가를 상회하는 구매가격을 제시한 입찰자중에서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구매자와 최저 공급자를 제시한 판매자와 거래를 성사시킨다.

외부구매자의 수를 n 명이라고 하고 n 이 무한대로 커질 때 외부구매자의 입찰가는 β 로 수렴한다. 이 경우 거래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

경우 1: 내부공급자의 입찰공급가가 β 이하이고, 내부구매자의 입찰구매가는 β 이하인 경우

위의 경우 1의 확률은 β^2 가 된다. 이 때 주의할 것은 만일 외부구매자중 가장 높은 입찰가도 β 가 되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되고 이 때 사회적 잉여는 β 가 된다.

경우 2: 내부공급자의 입찰공급가가 β 를 초과하고, 내부구매자의 입찰구매가는 β 이하인 경우

위의 경우 2의 확률은 $\beta(1-\beta)$ 가 된다. 이 때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

경우 3: 내부공급자의 입찰공급가가 β 를 초과하고, 내부구매자의 입찰구매가도 β 를 초과한 경우

위의 경우 3의 확률은 $(1 - \beta)^2$ 가 된다. 외부구매자중 가장 높은 입찰가가 β 이기 때문에 외부구매자는 경쟁입찰에서 낙오되며, 내부거래자간의 거래가 성사되어 사회적 잉여는 1이 된다.

경우 4: 내부공급자의 입찰공급가가 β 이하이고, 내부구매자의 입찰구매가는 β 를 초과한 경우

위의 경우 4의 확률은 $\beta(1-\beta)$ 가 된다. 외부구매자중 가장 높은 입찰가가 β 이기 때문에 외부구매자는 경쟁입찰에서 낙오되며, 내부거래자간의 거래가 성사되어 사회적 잉여는 경우 3과 마찬가지로 1이 된다.

따라서 효율성, E 는

$$E = \beta^3 + \beta(1 - \beta)E + (1 - \beta)^2 + \beta(1 - \beta) = 1 - \frac{(1 - \beta)\beta^2}{1 - \beta(1 - \beta)} 가 된다.$$

결국 비효율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frac{\beta^2}{1 - \beta(1 - \beta)}$ 이고, β 를 0과 1사이에서 변화 시킬 때 이중 경매제의 효율성의 최소는 $\beta=0.639$ 에서 80.8%로 계산되고, β 가 0과 1사이에서 일양분포를 할 경우 평균적인 효율성은 89.6%로 계산된다.

나. 다중 연속 이중경매제도(Continuous Double Auction with Multiple Round)

위의 동시 이중경매제도와 달리 연속 이중경매제도는 모든 입찰가격이 종합되어 최종적으로 낙찰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입찰되는 순서대로 입찰구매자가 입찰공급자를 상회하기만 하면 거래를 성사시킨다. 따라서 낙찰가격을 발견하는데 동시 이중경매제 보다 빠르지만 최고구매가와 최저공급자가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효율성은 떨어진다. 앞의 경우처럼 외부구매자의 수를 n 명이라고 하고 n 이 무한대로 커질 때 내부구매자가 입찰가를 제시하기 이전에 외부구매자가 더 많이 입찰하게 된다. 따라서 내부 구매자 또는 내부 공급자가 입찰하기 이전에 외부구매자의 입찰가는 β 로 수렴하게 된다.

이 경우 거래는 먼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경우 1: 내부구매자가 내부공급자에 앞서 입찰하는 경우

경우 2: 내부구매자가 내부공급자가 공급자를 제시한 이후 입찰하는 경우

위의 경우 1은 다시 다음과 같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우 1-1: 내부구매자의 입찰구매자가 β 이하인 경우 만일 내부판매자가 β 이하의 공급자를 제시했다면(확률은 β^2) 거래는 외부구매자와 내부판매자간에 이루어지고 이 때는 효율성은 β 가 된다.

경우 1-2: 내부구매자의 입찰구매자가 β 를 초과했다면(그 확률은 $\beta(1-\beta)$ 임) 재입찰시까지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효율성은 E 가 된다.

경우 1-3: 내부구매자의 입찰구매자가 β 보다 크다면, 결국 내부거래자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 때의 효율성은 결국 1이다.

따라서 경우 1의 효율성의 평균은 $\beta^4 + \beta(1-\beta)E + (1-\beta)$ 가 된다.

경우 2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계산하면 효율성의 평균은 $\beta^2 + \beta(1-\beta)E + (1-\beta)^2$ 이 된다. 따라서

$$\begin{aligned} E &= 0.5 [(1-\beta) + \beta^3 + \beta(1-\beta)E] + 0.5 [\beta^2 + (1-\beta)^2 + \beta(1-\beta)E] \\ &= 1 - (1-\beta) \frac{\beta + \beta^2}{2(1-\beta(1-\beta))} \end{aligned}$$

부록 6. 일본의 동시매매입찰방식(SBS) 운용 사례

일본은 의무수입쌀에 대한 물량관리는 국제협약에 의해 정부가 관리하는 국영무역으로 실시하고, 수입방식에 있어서는 일반입찰 방식과 병행하여 동시매매입찰(Simultaneous Buy and Sell, SBS)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SBS 방식은 수입쌀에 대한 정확한 시장평가가 없었던 상황에서 수입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동시에 국영무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쌀 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수입업자, 도소매업자 등을 적응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이 방식 아래, 입찰에 참여하는 수입업자나 도매업자가 수입쌀의 판매를 책임지기 때문에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의 기호에 적합한 품질의 쌀이 도입될 수 있다.

SBS 방식은 수입업자와 도소매업자가 사전에 수입할 쌀의 품질과 수량에 대하여 협의하고 양자가 합의한 수입조건을 기초로 쌍방이 농림수산성(과거 식량청)에 동시 입찰하여 낙찰하게 하는 방식으로서 매도 자격자와 매수 자격자가 연명으로 식량청에 매도 신청가격 및 식량청으로부터 매수 신청가격을 기재하여 신청하는 것이다. 신청성에 기재된 매도 신청자격이 식량청이 설정한 매입 예정가격 이하이고, 매수 신청가격이 식량청이 설정한 매도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 판매차액이 큰 것부터 계약예정 수량 범위 안에서 순차적으로 낙찰자가 결정된다.

SBS 참가자는 동시매매입찰 유자격자 명부에 기재된 수입업자인 매도 자격자와 도매업자 및 가공업자와 그 단체인 매수 자격자로 구성된다. 일정한 요건을 부과하여 입찰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 입찰 참가자격은 사전심사에 의하여 유자격자의 명부에 기재된 수입업자와 도소매업자로서 이들은 입찰서(매매신청서) 작성 시 공동명의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업자의 자격요건은 첫째, 신청자가 쌀의 수출입 업무를 취급 하고 있는 자 둘째, 최근 3년간 20톤 이상의 쌀 수출입 실적이 있는 자 셋째, 일본 내 설립된 법인으로서 신청자의 자기자본이 1억 엔 이상인자 또는 외국으로부터 동액이상의 융자증명을 받을 수 있는 자 넷째, 쌀 수출입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직원을 본 지점에 1명 이상 배치하여 당해업무에 종사케 할 수 있는 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입찰 참가 시 신청물량 또한 제한하고 있는데, 하나의 계약신청과 관련된 최저수량은 17톤, 한 매도신청 자격의 연간 매도신청 수량의 상한은 3,000톤, 한 매수신청 자격의 연간 매수신청 수량의 상한은 1,000톤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제한은 대규모 수입업자의 시장독점을 배제하여 동시매매입찰 방식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된다.

SBS 방식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방식은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에 대한 예정가격(상한 가격과 하한 가격) 기준을 충족시키는 매매 신청서 중에서 매매차액이 큰 신청서 순으로 입찰물량에 달할 때까지 낙찰시켜 결정한다. 한편 일본은 이행계획서 상에 매매차액(Mark-Up)을 1986~88년간 정부가 수입한 태국산 찹쌀의 수입가격과 판매가격 간의 매매차액을 기준으로 kg 당 292엔으로 표기함에 따라 동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매매차액이 같은 복수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식량청으로부터 매수신청가격이 높은 것부터 낙찰시키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이때 매수신청이 같을 경우에는 제비뽑기를 하여 결정하고 있다. 일본이 매매차익 수준을 명시한 것은 매매차익 수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이외의 부과금을 폐겼을 경우 이해 당사국으로부터 WTO에 제소될 수 있고, 폐소하여 저가의 농산물이 대량 수입되어 쌀 생산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SBS 방식에 의해 낙찰되어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 식량청에 대해서는 수입과 관련된 미곡을 수입업자로부터 매입함과 동시에 해당 미곡을 도소매업자에게 매도할 것을, 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미곡을 식량청에게 매도할 것을, 도소매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미곡을 식량청으로부터 매입할 것을 각각 계약하게 된다. 계약이 이루어진 이후, 수입업자는 해당 미곡을 수입하여 항구지 창고에서 식량청에게 인도하고, 식량청은 해당 미곡을 도소매업자에게 매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한편 SBS 방식을 통해 수입업자나 도소매업자가 수입한 쌀의 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된 수량의 혼품 매도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식량청에게 납부해야 한다.

<동시매입찰 운용 현황>

- 수입 첫해인 1995년(회계년도 기준)에는 40만 8,794톤의 쌀이 수입되었는데, 이 가운데 일반입찰 방식으로 39만 8,100톤(97%), 나머지 1만 694톤(3%)이 SBS 방식으로 수입된 반면, 2003년에는 67만 1,100톤 수입쌀 가운데, 일반입찰 방식으로 57만 1,100톤(85%), SBS 방식으로 10만톤(15%)이 수입되어 SBS 방식의 비중이 높아졌다<표 1>.
 - 2003년도 미국, 중국으로부터의 SBS 방식에 의한 수입물량이 97%를 점유하고 있고,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 비중이 1995년의 53%에서 2003년에는 18.2%로 감소한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 비중은 1996년 22.3%에서 2003년에는 78.8%로 증가하여 대조를 보이고 있다.

<부표 1> 일본의 연도별 수입쌀 입찰 현황

단위: 톤, %

연도	구분	미국	태국	호주	중국	기타	합계	A/B(%)
1995	SBS(A)	5,715 (53.4)	246 (2.3)	1,935 (18.1)	2,390 (22.3)	408 (3.8)	10,694 (100.0)	2.6
	일반 입찰	188,000 (47.2)	95,100 (23.9)	85,000 (21.4)	30,000 (7.5)	0 0.0	398,100 (100.0)	
	계(B)	193,768 (47.4)	95,348 (23.3)	86,953 (21.3)	32,412 (7.9)	412 (0.1)	408,894 (100.0)	
1996	SBS	14,134 (64.2)	360 (1.6)	1,173 (5.3)	5,113 (23.2)	1,220 (5.5)	22,000 (100.0)	4.7
	일반 입찰	201,000 (45.3)	127,650 (28.8)	80,000 (18.0)	35,000 (7.9)	0 0.0	443,650 (100.0)	
	계	215,198 (46.2)	128,012 (27.5)	81,178 (17.4)	40,136 (8.6)	1,226 (0.3)	465,750 (100.0)	
1997	SBS	34,657 (62.9)	911 (1.7)	3,159 (5.7)	13,882 (25.2)	2,532 (4.6)	55,141 (100.0)	10.1
	일반 입찰	237,900 (48.6)	133,900 (27.4)	82,400 (16.8)	30,000 (6.1)	5,000 (1.0)	489,200 (100.0)	
	계	272,620 (50.1)	134,813 (24.8)	85,565 (15.7)	43,907 (8.1)	7,537 (1.4)	544,441 (100.0)	
1998	SBS	36,498 (30.4)	5,297 (4.4)	14,538 (12.1)	61,965 (51.6)	1,702 (1.4)	120,000 (100.0)	19.0
	일반 입찰	265,400 (51.8)	130,000 (25.4)	87,000 (17.0)	10,000 (2.0)	20,000 (3.9)	512,400 (100.0)	
	계	301,928 (47.7)	135,301 (21.4)	101,550 (16.1)	72,017 (11.4)	21,703 (3.4)	632,500 (100.0)	
1999	SBS	36,826 (30.7)	3,753 (3.1)	14,587 (12.2)	62,611 (52.2)	2,223 (1.9)	120,000 (100.0)	18.4
	일반 입찰	276,000 (51.8)	138,200 (25.9)	90,000 (16.9)	13,900 (2.6)	15,000 (2.8)	533,100 (100.0)	
	계	312,857 (47.9)	141,956 (21.7)	104,599 (16.0)	76,563 (11.7)	17,225 (2.6)	653,200 (100.0)	
2000	SBS	46,273 (38.6)	4,960 (4.1)	14,269 (11.9)	53,264 (44.4)	1,234 (1.0)	120,000 (100.0)	17.3
	일반 입찰	284,000 (49.6)	144,370 (25.2)	94,000 (16.4)	35,000 (6.1)	15,669 (2.7)	573,039 (100.0)	
	계	330,312 (47.7)	149,334 (21.5)	108,281 (15.6)	88,308 (12.7)	16,904 (2.4)	693,139 (100.0)	
2001	SBS	25,173 (25.2)	421 (0.4)	8,529 (8.5)	65,702 (65.7)	175 (0.2)	100,000 (100.0)	14.7
	일반 입찰	298,877 (51.5)	129,376 (22.3)	91,500 (15.8)	55,516 (9.6)	4,700 (0.8)	579,969 (100.0)	
	계	324,075 (47.7)	129,797 (19.1)	100,038 (14.7)	121,284 (17.8)	4,875 (0.7)	680,069 (100.0)	

<부표 1 계속> 일본의 연도별 수입쌀 입찰 현황

단위: 톤, %

연도	구분	미국	태국	호주	중국	기타	합계	A/B(%)
2002	SBS	20,122 (40.2)	1,327 (2.7)	4,077 (8.1)	24,247 (48.4)	294 (0.6)	50,067 (100.0)	7.4
	일반 입찰	301,676 (47.9)	134,808 (21.4)	82,500 (13.1)	75,690 (12.0)	34,800 (5.6)	629,474 (100.0)	
	계	321,798 (47.4)	136 (20.0)	86,577 (12.7)	99,937 (14.7)	35,094 (5.2)	679,541 (100.0)	
2003	SBS	18,216 (18.2)	1,145 (1.1)	1,570 (1.6)	78,803 (78.8)	266 (0.3)	100,000 (100.0)	14.9
	일반 입찰	298,000 (52.2)	134,700 (23.6)	78,400 (13.7)	19,500 (3.4)	40,500 (7.1)	571,100 (100.0)	
	계	316,216 (47.1)	135,845 (20.2)	79,970 (11.9)	98,303 (14.6)	40,766 (6.1)	671,100 (100.0)	

주: ()는 비중임.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FAS). GAIN Report.

- 2003년도 SBS 방식으로 수입된 물량은 소비자의 기호, 수출국의 수출여력, 국내수요를 반영하여 중국, 미국, 태국, 호주, 베트남, 파키스탄, 인도, 이탈리아 등 8개국으로부터 4회에 나뉘어 수입되었다<부표 2>.
 - 수입품목은 자포니카 계열의 중단립종(현미, 정미), 인디카 계열의 장립종(현미, 정미), 쇠미, 찹쌀 등으로 다양한데 이는 다양한 계층의 실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 한편 2002년에도 4회의 동시매매입찰이 시행된 바, 매입가격과 매도가격은 큰 변화가 없었고, 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매매차익(Mark-up) 또한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부표 3>.

<부표 2> 2003년도 국가별 품종별 SBS 수입 현황

단위: 톤

	중국	미국	태국	호주	베트남	파키스탄	인도	이탈리아	계
현미 단립종	822	1,098	-	129	-	-	-	-	2,049
정미 단립종	37,620	5,451	-	1,141	-	-	-	-	44,212
현미 중립종	260	-	-	-	-	-	-	-	260
정미 중립종	-	40	-	-	-	-	-	34	74
현미 장립종	37	-	-	-	-	-	-	-	37
정미 장립종	-	-	825	-	-	140	72	-	1,037
현미 단립종(찹쌀)	450	72	-	-	-	-	-	-	522
정미 단립종(찹쌀)	33,722	7,747	-	-	20	-	-	-	41,489
현미 장립종(찹쌀)	-	-	-	-	-	-	-	-	0
정미 장립종(찹쌀)	-	-	320	-	-	-	-	-	320
쇄미(정미)	5,892	3,808	-	300	-	-	-	-	10,000
총계	78,803	18,216	1,145	1,570	20	140	72	34	100,000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FAS). GAIN Report.

<부표 3> 2002년도 동시 매입찰 현황

○ 1차 SBS 결과

수입국	품종	신청수량 (톤)	입찰결과			
			낙찰수량 (톤)	매입가격 (달러/톤)	매도가격 (달러/톤)	Mark-up (달러/톤)
미국	현미 단립종	36	36	726	2,016	1,290
	정미 단립종	1,036	1,036	666	1,914	1,248
	정미 중립종	120	0	-	-	-
	정미 단립종(찹쌀)	2,814	2,562	637	1,892	1,255
	쇄미(정미)	4,666	2,008	413	918	505
	계	8,672	5,642	-	-	-
중국	정미 단립종	13,754	4,704	684	1,923	1,239
	현미 장립종	60	60	952	2,298	1,346
	정미 장립종(찹쌀)	886	886	695	1,931	1,236
	쇄미(정미)	1,706	324	402	895	493
	계	16,406	5,974	-	-	-
호주	현미 단립종	473	430	671	1,964	1,293
	정미 단립종	3,619	1,784	721	1,983	1,262
	쇄미(정미)	860	168	384	876	492
	계	4,952	2,382	-	-	-
태국	정미 장립종	552	534	520	1,866	1,346
	정미 장립종(찹쌀)	78	60	565	1,930	1,365
	쇄미(정미)	216	0	-	-	-
	계	846	594	-	-	-
이탈리아	정미 단립종	51	51	1,313	2,645	1,332
베트남	쇄미(정미)	36	0	-	-	-
파키스탄	정미 장립종	20	20	1,040	2,340	1,300
인도	정미 장립종	17	17	1,249	2,523	1,274
합계		31,000	14,680	-	-	-

○ 2차 SBS 결과

수입국	품종	신청수량 (톤)	입찰결과			
			낙찰수량 (톤)	매입가격 (달러/톤)	매도가격 (달러/톤)	Mark-up (달러/톤)
미국	현미 단립종	126	126	729	1,936	1,207
	정미 단립종	3,011	2,867	804	1,859	1,055
	정미 중립종	100	100	519	1,838	1,319
	현미 단립종(찹쌀)	18	18	611	2,019	1,408
	정미 단립종(찹쌀)	1,566	1,440	725	1,807	1,082
	쇄미(정미)	3,445	2,256	424	974	550
	계	8,266	6,807	-	-	-
중국	정미 단립종	13,962	2,200	682	1,939	1,257
	현미 장립종	38	0	-	-	-
	정미 단립종(찹쌀)	788	788	701	1,982	1,281
	쇄미(정미)	846	72	449	1,000	551
	계	15,634	3,060	-	-	-
호주	현미 단립종	22	22	754	1,977	1,223
	정미 단립종	457	435	798	2,094	1,296
	쇄미(정미)	775	172	406	941	535
	계	1,254	629	-	-	-
태국	정미 장립종	114	60	590	1,935	1,345
	현미 중립종(찹쌀)	18	0	-	-	-
	정미 장립종(찹쌀)	40	40	610	1,958	1,348
	계	172	100	-	-	-
인도	정미 장립종	18	0	-	-	-
합계		25,344	10,596	-	-	-

○ 3차 SBS 결과

수입국	품종	신청수량 (톤)	입찰결과			
			낙찰수량 (톤)	매입가격 (달러/톤)	매도가격 (달러/톤)	Mark-up (달러/톤)
미국	현미 단립종	108	108	793	1,686	893
	정미 단립종	1,641	1,587	846	1,733	887
	정미 중립종	60	60	510	1,704	1,194
	현미 단립종(찹쌀)	0	0	-	-	-
	정미 단립종(찹쌀)	1,442	1,442	749	1,649	900
	쇄미(정미)	3,059	1,174	405	951	546
	계	6,310	4,371	-	-	-
중국	현미 단립종	0	0	-	-	-
	정미 단립종	11,651	6,499	747	1,866	1,119
	현미 장립종	60	60	975	2,314	1,339
	정미 단립종(찹쌀)	306	306	790	1,673	883
	쇄미(정미)	2,368	1,326	438	982	544
	계	14,385	8,191	-	-	-
호주	현미 단립종	0	0	-	-	-
	정미 단립종	547	505	803	1,973	1,170
	쇄미(정미)	449	0	-	-	-
	계	996	505	-	-	-
태국	정미 장립종	285	185	530	1,858	1,328
	현미 장립종(찹쌀)	18	18	471	1,802	1,331
	정미 장립종(찹쌀)	60	60	590	1,865	1,275
	쇄미(정미)	0	0	-	-	-
	계	363	263	-	-	-
파키스탄	정미 장립종	40	40	1,058	2,405	1,347
이탈리아	정미 중립종	51	51	1,211	2,545	1,334
합계		22,145	13,421	-	-	-

○ 4차 SBS 결과

수입국	품종	신청수량 (톤)	입찰결과			
			낙찰수량 (톤)	매입가격 (달러/톤)	매도가격 (달러/톤)	Mark-up (달러/톤)
미국	현미 단립종	162	162	810	1,642	832
	정미 단립종	1,732	1,534	901	1,690	789
	정미 중립종	40	40	536	1,632	1,096
	정미 단립종(찹쌀)	596	596	787	1,602	815
	쇄미(정미)	1,659	970	418	971	553
	계	4,189	3,302	-	-	-
중국	현미 단립종	18	18	727	1,802	1,075
	정미 단립종	7,560	4,684	792	1,863	1,071
	현미 장립종	98	78	1,007	2,311	1,304
	정민 단립종(찹쌀)	816	816	818	1,644	826
	쇄미(정미)	2,066	1,426	435	982	547
	계	10,558	7,022	-	-	-
호주	정미 단립종	829	457	917	2,004	1,087
	쇄미(정미)	200	104	423	965	542
	계	1,029	561	-	-	-
태국	정미 장립종	350	330	546	1,850	1,304
	정미 장립종(찹쌀)	40	40	570	1,843	1,273
	계	390	370	-	-	-
인도	정미 장립종	18	18	1,628	2,942	1,314
파키스탄	정미 장립종	80	80	1,074	2,405	1,331
이탈리아	정미 단립종	17	17	2,223	3,099	876
합계		16,281	11,370	-	-	-

자료: USDA. Foreign Agricultural Service(FAS). GAIN Report.

부록 7. 우리나라의 TRQ품목 수입 현황

1. 종우(두)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1,020	0	1,020	64	0	0	0	64	6.3
2002	972	0	972	28	0	0	0	28	2.9
2001	925	0	925	80	0	0	0	80	8.6
2000	877	0	877	18	0	0	0	18	2.1
1999	830	0	830	4	0	0	0	4	0.5
1998	782	0	782	3	0	0	0	3	0.4
1997	735	0	735	48	0	0	10톤	48	6.5
1996	687	23	710	675	0	0	0	675	98.3
1995	640	0	640	440	0	0	0	440	68.8

2. 종돈(두)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1,768	0	1,768	760	1.7톤	0	11.3톤	760	43.0
2002	1,686	314	2,000	1,269	0	0	0	1,269	75.3
2001	1,603	897	2,500	1,382	0	0	0	1,382	86.2
2000	1,521	1,479	3,000	1,439	0	0	25.4톤	1,439	94.6
1999	1,439	1,561	3,000	1,867	1톤	0	24.8톤	1,867	129.7
1998	1,357	2,143	3,500	327	0	0	0	327	24.1
1997	1,274	2,726	4,000	3,223	0	0	50톤	3,223	253.0
1996	1,192	4,808	6,000	2,371	0	0	0	2,371	198.9
1995	1,110	1,890	3,000	2,549	0	0	0	2,549	229.6

3. 종계(천수)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461	0	461	311	0	0	0	311	67.5
2002	461	179	640	636	0	0	0	636	138.0
2001	461	330	791	506	0	0	0	506	109.8
2000	461	539	1,000	423	0	0	0	423	91.8
1999	461	539	1,000	808	1.2톤	0	1.1톤	808	175.3
1998	461	539	1,000	540	3.3톤	0	0	540	117.1
1997	461	639	1,100	703	84,020톤	0	164.7톤	703	152.5
1996	461	339	800	800	0	0	0	800	173.5
1995	461	539	1,000	682	0	0	0	682	148.0

4. 탈지분유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 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988.1	0	988.1	888.1	3,664.0	0.0	7.5	4,559.6	89.9
2002	942.2	0	942.2	117.5	4,042.1	0.0	0.1	4,159.7	12.5
2001	896.3	0	896.3	896.3	3,733.6	0	30.5	4,660.4	100.0
2000	805.5	1,194.5	2,000	743.3	2,858.6	0	1.9	3,603.8	92.3
1999	804.6	0	804.6	804.6	2,037.3	0	0.4	2,842.3	100.0
1998	758.7	0	758.7	755.7	1,716.3	0	0	2,472.0	99.6
1997	712.8	0	712.8	712.8	1,342.6	0	0.1	2,055.5	100.0
1996	666.9	0	666.9	649	0	0	0	649	97.3
1995	621	0	621	621	0	0	0	621	100.0

5. 전지분유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547.5	0.0	547.5	447.4	1,211.8	0.0	0.8	1,660.0	81.7
2002	522.1	0	522.1	0	1,073.4	0	0	1,073.4	0.0
2001	496.6	0	496.6	406.6	1,092.2	0	40.0	1,538.8	81.9
2000	471.2	0	471.2	60.0	512.0	0	0	572.0	12.7
1999	445.8	0	445.8	445.8	135.2	0	0	581.0	100.0
1998	420.3	0	420.3	80.0	33.6	0	0	113.6	19.0
1997	394.9	0	394.9	394.9	126.4	0	0	521.3	100.0
1996	369.4	0	369.4	16	0	0	0	16	4.3
1995	344	0	344	344	0	0	0	344	100.0

6. 연유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124.2	0.0	124.2	0.0	53.2	0.0	0.0	53.2	0.0
2002	118.4	0	118.4	0	10.7	0	0.2	10.9	0.0
2001	112.7	0	112.7	0	48.4	0	0.1	48.5	0.0
2000	106.9	0	106.9	19.2	16.5	0	0.9	36.6	18.0
1999	101.1	0	101.1	0	0	0	0.3	0.3	0.0
1998	95.3	0	95.3	0	0	0	0	0	0.0
1997	89.6	0	89.6	0	1.5	0	0	1.5	0.0
1996	83.8	0	83.8	50	0	0	0	50	59.7
1995	78	0	78	78	0	0	0	78	100.0

7. 유장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50,763.0	0.0	50,763.0	39,201.6	320.3	0.0	60.5	39,582.4	77.2
2002	47,292	0	47,292	35,606.3	146.8	0	1.0	35,754.1	75.3
2001	43,822	0	43,822	38,444.1	147.5	0	5.8	38,597.4	87.7
2000	40,351	0	40,351	38,752.2	85.9	0	2.0	38,840.1	96.0
1999	36,881	0	36,881	30,644.5	40.0	0	35.0	30,719.6	83.1
1998	33,411	0	33,411	23,642.1	0	0	0	23,642.1	70.8
1997	29,941	0	29,941	22,010.7	11.4	0	1,713.2	23,735.4	73.5
1996	26,470	0	26,470	22,973	0	0	0	22,973	86.8
1995	23,000	0	23,000	22,250	0	0	0	22,250	96.7

8. 버터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401.1		401.1	401.1	724.5	0.0	170.7	1,296.3	100.0
2002	382.2	0	382.2	382.2	486.2	0	177.5	1,045.9	100.0
2001	363.3	0	363.3	363.3	536.9	0	154.0	1054.3	100.0
2000	344.5	0	344.5	344.5	447.6	0	155.7	947.9	100.0
1999	325.6	0	325.6	325.6	443.1	0	127.1	895.9	100.0
1998	306.7	0	306.7	306.7	130.8	0	61.4	498.9	100.0
1997	287.8	0	287.8	287.8	861.6	0	2.4	1,151.8	100.0
1996	268.9	0	268.9	268	0	0	0	268	99.7
1995	250	0	250	250	0	0	0	250	100.0

9. 조란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18,648.5	0.0	18,648.5	0.0	0.0	0.0	0.0	0.0	0.0
2002	17,781.1		17,781.1	0	0	0	0	0	0.0
2001	16,913.7	0	16,913.7	0	0	0	0	0	0.0
2000	16,046.4	0	16,046.4	0	0.4	0	0	0.4	0.0
1999	15,179.0	0	15,179.0	0	0	0	0	0	0.0
1998	14,311.6	0	14,311.6	0	0	0	0	0	0.0
1997	13,444.2	0	13,444.2	0	0	0	0	0	0.0
1996	12,576.9	0	12,576.9	1	0	0	0	1	0.0
1995	11,709.5	0	11,709.5	0	0	0	0	0	0.0

10. 천연꿀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401.1	0.0	401.1	401.0	252.4	0.0	2.1	655.5	100.0
2002	382.2	0	382.2	378.6	121.4	0	0	500.0	99.1
2001	363.3	0	363.3	340.8	40.0	0	20.1	400.9	93.8
2000	344.5	0	344.5	267.7	63.9	0	0	331.6	77.7
1999	325.6	0	325.6	315.5	110.5	0	1.1	427.1	96.9
1998	306.7	0	306.7	306.7	93.2	0	0	399.9	100.0
1997	287.8	0	287.8	286.9	9.0	0	0	295.9	99.7
1996	268.9	0	268.9	264	0	0	0	264	98.2
1995	250.0	0	250.0	250	0	0	0	250	100.0

11. 골분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446.8	0	446.8	0.0	34.9	0.0	0.7	35.6	0.0
2002	426.0	0	426.0	0	39.5	0	1.1	40.6	0.0
2001	405.2	0	405.2	404.3	8.5	0	0	412.8	99.8
2000	384.5	0	384.5	369.1	23.0	0	0	392.1	96.0
1999	363.7	0	363.7	304.0	75.4	0.1	0	379.5	83.6
1998	342.9	600.1	943.0	432.9	17.4	0.2	0	450.5	126.2
1997	322.1	1,999.9	2,322.0	549.0	0	0	20.0	569.0	170.4
1996	301.3	0	301.3	301.3	0	0	0	301.3	100.0
1995	280.5	0	280.5	167	0	0	0	167	59.5

12. 잠종(천상자)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9.1	0	9.1	0	0	0	0	0	0.0
2002	8.6	0	8.6	0		0	0	0	0.0
2001	8.2	0	8.2	0	0	0	0	0	0.0
2000	7.8	0	7.8	0	0	0	0	0	0.0
1999	7.4	0	7.4	0	0	0	0	0	0.0
1998	7.0	0	7.0	0	0	0	0.1톤	0.1	0.0
1997	6.5	0	6.5	0	0	0	0	0	0.0
1996	6.1	0	6.1	0	0	0	0	0	0.0
1995	5.7	0	5.7	0	0	0	0	0	0.0

13. 사과, 배, 복숭아 등(천주)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133.8	0	133.8	0.2톤	0.8톤	0	0	1톤	-
2002	132.3	0	132.3	0	0.1톤	0	0.6톤	0.7톤	0.0
2001	125.9	0	125.9	0	0.6톤	0	0	0.6톤	0.0
2000	119.4	0	119.4	0	0.5톤	0	0.1톤	0.6톤	0.0
1999	112.9	0	112.9	0.1톤	0	0	0.1톤	0.1톤	-
1998	106.5	0	106.5	0	0	0	0	0	0.0
1997	100.0	0	100.0	3700톤	2,328톤	0	2,430톤	8,458톤	-
1996	93.6	0	93.6	6.8톤	0.0	0.0	0.0	6.8톤	-
1995	87.1	0	87.1	0	0	0	0	0	0.0

14. 뽕나무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1,340.3	0	1,340.3	0.0	22.9	0.0	5.0	27.9	0.0
2002	1,278.0	0	1,278.0	0	0.1톤	0	0	0.1톤	0.0
2001	1,215.6	0	1,215.6	0	0	0	0	0	0.0
2000	1,153.3	0	1,153.3	0	0	0	0	0	0.0
1999	1,091.0	0	1,091.0	0	0	0	0	0	0.0
1998	1,028.6	0	1,028.6	0	0	0	0	0	0.0
1997	966.3	0	966.3	0	0	0	0	0	0.0
1996	903.9	0	903.9	0	0	0	0	0	0.0
1995	841.6	0	841.6	0	0	0	0	0	0.0

15. 감자(종자)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1,813.5	0	1,813.5	0	0	0	0	0	0.0
2002	1,729.1	0	1,729.1	172.0	0	0	0	172.0	9.9
2001	1,644.6	0	1,644.6	70	0	0	0	70	4.3
2000	1,560.2	0	1,560.2	127	0	0	0	127	8.1
1999	1,475.8	0	1,475.8	161	0	0	0	161	10.9
1998	1,391.3	0	1,391.3	0	0	0	0	0	0.0
1997	1,306.9	0	1,306.9	219.9	0	0	0	220	16.8
1996	1,222.4	0	1,222.4	188	0	0	0	188	15.4
1995	1,138.0	0	1,138.0	99	0	0	0	99	8.7

16. 감자(기타)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17,974.0	0	17,974.0	18,090.1	12.3	0.0	1.4	18,103.8	100.6
2002	17,138	0	17,138	11,251.4	0	0	10.1	11,261.5	65.7
2001	16,302	0	16,302	8,037.4	0	0	13.7	8,051.1	49.3
2000	15,466	0	15,466	9,359.4	0	0	0	9,359.4	60.5
1999	14,630	0	14,630	14,623.1	1,252.9	0	0	15,876.0	100.0
1998	13,794	0	13,794	5,411.5	0	0	0	5,411.5	39.2
1997	12,958	0	12,958	4,853.1	16.0	0	0	4,869.1	37.5
1996	12,122	0	12,122	667	0	0	0	667	5.5
1995	11,286	0	11,286	0	0	0	0	0	0.0

17. 양파(신선기준)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19,726	0	19,726	21,609.1	67,579.3	0.0	0.0	89,188.4	109.5
2002	18,805.9	0	18,805.9	5,556	6,810.8	0	0	12,366.8	29.5
2001	17,886.4	0	17,886.4	3,220	7,776.3	0	0	10,996.3	18.0
2000	16,966.8	0	16,966.8	9,710	10,395.5	0	0	20,105.5	57.2
1999	16,047.2	0	16,047.2	16,005.3	6,613.8	0	0	22,619.1	99.7
1998	15,127.7	0	15,127.7	7,001	4,760	0	0	11,761	46.3
1997	14,208.1	0	14,208.1	13,730	15,256	0	0	28,986	96.6
1996	13,289	38,000	51,289	40,514	0	0	0	40,514	304.9
1995	12,369	0	12,369	12,369	0	0	0	12,369	100.0

18. 마늘(신선기준)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13,824	0	13,824	9,924.0	884.0	0.0	0.0	10,808.0	71.8
2002	13,181	0	13,181	13,180	252	0	0	13,432	100.0
2001	12,538	0	12,538	12,618	131	0	0	12,749	100.6
2000	11,895	0	11,895	11,892	2,860.4	0	0	14,752.4	100.0
1999	11,252	0	11,252	4,100	12,620.3	0	0	16,720.3	36.4
1998	10,609	0	10,609	10,609	17,021	0	0	27,630	100.0
1997	9,966	0	9,966	9,966	3,028	0	0	12,993	100.0
1996	9,328	0	9,328	7,600	0	0	0	7,600	81.5
1995	8,680	0	8,680	6,674	0	0	0	6,674	76.9

19. 고추류(건고추 기준)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6,865.6	0.0	6,865.6	4,576.3	8,467.8	0.0	16.5	13,060.6	66.7
2002	6,546.3	0	6,546.3	1,999.6	6,085.3	0	114	8,198.9	30.5
2001	6,227	0	6,227	3,613.7	5,625.3	0	43.8	9,282.8	58.0
2000	5,907.7	0	5,907.7	3,014.5	3,697.8	0	7.5	6,719.8	51.0
1999	5,588.3	0	5,588.3	5,376.3	1,504.4	0	1.0	6,881.7	96.2
1998	5,269	0	5,269	5,212.7	231.1	0	0	5,443.8	98.9
1997	4,949.7	0	4,949.7	3,769.5	278.2	0	243.7	4,291.4	76.2
1996	4,630.3	0	4,630.3	4,490	0	0	0	4,490	97.0
1995	4,311	0	4,311	4,281	0	0	0	4,281	99.3

20. 녹두, 팥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14,147.6	4,202.4	18,350.0	15,390.9	1.1	16,935.5	0.0	32,327.5	108.8
2002	13,601.2	5,398.8	19,000.0	13,789.3	533.0	14,415.5	0	28,737.8	101.4
2001	13,054.8	5,945.2	19,000.0	18,819.9	632.9	12,291.9	0	31,744.7	144.2
2000	12,508.4	6,491.6	19,000.0	18,867.9	333.3	12,119.5	0	31,320.7	150.8
1999	11,961.9	6,038.1	18,000.0	17,878.2	27.7	8,473.1	0	26,379.0	149.5
1998	11,415.5	6,584.5	18,000.0	17,946.0	718.0	1,619.0	0	20,283.0	157.2
1997	10,869.1	7,130.9	18,000.0	17,939.7	1,722.0	1,107.6	0	20,769.3	165.1
1996	10,322.7	5,677.3	16,000.0	16,003	0	0	0	16,003	155.0
1995	9,776.3	11,415.7	21,192.0	20,679	0	0	0	20,679	211.5

21. 매니옥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50,000		50,000	176,048.2	16.9	0.0	0.0	176,065.1	352.1
2002	50,000	0	50,000	50,000.0	0	0	64,817.2	114,817.2	100.0
2001	50,000	250,000	300,000	250,657.5	0	0	0	250,657.5	501.3
2000	50,000	250,000	300,000	277,438.6	0	0	0	277,438.6	554.9
1999	50,000	210,000	260,000	212,464	0	0	0	212,464	424.9
1998	50,000	210,000	260,000	245,998	0	0	0	245,998	492.0
1997	50,000	165,000	215,000	208,482	0	0	0	208,482	417.0
1996	50,000	124,200	174,200	200,975	0	0	0	200,975	402.0
1995	50,000	140,000	190,000	148,325	0	0	0	148,325	296.7

22. 매니옥펠리트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1,000,000		1,000,000	71,418.7	0.0	0.0	0.0	71,418.7	7.1
2002	1,000,000	0	1,000,000	41,952.7	0	0	0	41,952.7	4.2
2001	1,000,000	0	1,000,000	192,901.7	0	0	0	192,901.7	19.3
2000	1,000,000	0	1,000,000	15,829.5	0	0	0	15,829.5	1.6
1999	1,000,000	0	1,000,000	0	0	0	0	0	0.0
1998	1,000,000	0	1,000,000	217,302	0	0	0	217,302	21.7
1997	1,000,000	0	1,000,000	383,693	0	0	0	383,693	38.4
1996	1,000,000	0	1,000,000	427,163	0	0	0	427,163	42.7
1995	1,000,000	0	1,000,000	0	0	0	0	0	0.0

23. 고구마(신선기준)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17,711.2	0.0	17,711.2	0.0	0.2	0.0	0.0	0.2	0.0
2002	16,887.5	0	16,887.5	0	0	0	0	0	0.0
2001	16,063.7	0	16,063.7	0	0	0	0	0	0.0
2000	15,239.9	0	15,239.9	0	0	0	0	0	0.0
1999	14,416.1	0	14,416.1	0	0	0	0	0	0.0
1998	13,592.3	0	13,592.3	0	0	0	0	0	0.0
1997	12,768.6	0	12,768.6	3,226	0	0	0	3,226	25.3
1996	11,944.8	0	11,944.8	1,497	0	0	0	1,497	12.5
1995	11,121	0	11,121	8,803	0	0	0	8,803	79.2

24. 기타서류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326.7	0.0	326.7	315.3	146.1	0.0	43.9	505.3	96.5
2002	326.7	0	326.7	326.6	240.4	0	27.4	594.4	100.0
2001	326.7	0	326.7	326.7	17.9	0	1.2	345.8	100.0
2000	326.7	0	326.7	326.6	23.5	0	10.3	360.4	100.0
1999	326.7	0	326.7	263.0	2.4	0	5.0	270.4	80.5
1998	326.7	0	326.7	63.0	0.9	0	0	64	19.3
1997	326.7	0	326.7	209.8	28.2	0	163.4	401.4	64.2
1996	326.7	0	326.7	78	0	0	0	78	23.9
1995	326.7	0	326.7	170	0	0	0	170	52.0

25. 밤(미탈각기준)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2,073.5	0	2,073.5	588.8	312.0	0.0	0.0	900.8	28.4
2002	1,997.1	0	1,997.1	311.9	173.7	0	0	485.6	15.6
2001	1,880.6	0	1,880.6	204.3	67.3	0	0	227.2	10.9
2000	1,784.2	0	1,784.2	95.0	12.9	0	0	94.1	5.3
1999	1,687.8	0	1,687.8	116.5	0	0	0	116.5	6.9
1998	1,591.3	0	1,591.3	200.0	0.2	0	0	200.2	12.6
1997	1,494.9	0	1,494.9	121.5	25.0	0	0	146.5	8.1
1996	1,398.4	0	1,398.4	74	0	0	0	74	5.3
1995	1,302.0	0	1,302.0	300	0	0	0	300	23.0

26. 잣(미탈각기준)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50.6	0	50.6	48.2	0.0	0.0	1.9	50.1	95.3
2002	48.2	0	48.2	46.1	112.9	0	0	159.0	95.6
2001	45.9	0	45.9	45.9	0	0	4.6	50.5	100.0
2000	43.5	0	43.5	43.6	3.6	0	0	47.2	100.2
1999	41.1	0	41.1	41.1	0	0	0	41.1	100.0
1998	38.8	0	38.8	38.8	0	0	0	38.8	100.0
1997	36.4	0	36.4	36.4	0	0	0	36.4	100.0
1996	34.1	0	34.1	34.1	0	0	0	34.1	100.0
1995	31.7	0	31.7	31.7	0	0	0	31.7	100.0

27. 오렌지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50,682	0	50,682	50,497	94,150.6	0.0	233.1	144,880.7	99.6
2002	45,051.0	0	45,051.0	44,058.6	58,404.0	0	191.1	102,653.7	97.8
2001	40,045	0	40,045	31,993.2	58,806.9	0	179.4	90,979.4	79.9
2000	38,343	0	38,343	31,215.3	67,504.4	0	297.2	99,016.9	81.4
1999	33,674	0	33,674	22,268.8	6,781.9	0	1,773.0	30,823.8	66.1
1998	29,006	0	29,006	27,271.0	9,417.3	0	93.7	36,782.0	94.0
1997	24,337	0	24,337	24,153.0	13,671.4	0	1.6	37,826.0	99.2
1996	19,669	0	19,669	19,669	0	0	0	19,669	100.0
1995	15,000	0	15,000	14,986	0	0	0	14,986	99.9

28. 감귤류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2,003.8	0.0	2,003.8	0	0	0	0	0	0.0
2002	1,910.0	0	1,910.0	58.6	0	0	0	58.6	3.1
2001	1,817.3	0	1,817.3	17.6	6.0	0	27.1	50.8	1.0
2000	1,724.1	0	1,724.1	467.8	26.8	0	48.1	542.8	27.1
1999	1,630.9	0	1,630.9	0	0	0	101.6	101.6	0.0
1998	1,537.7	0	1,537.7	1,441.4	0	0	130.1	1,571.5	93.7
1997	1,444.4	0	1,444.4	1,444.4	21.0	0	0	1,465.4	100.0
1996	1,351.2	0	1,351.2	1,329	0	0	0	1,329	98.4
1995	1,258.0	0	1,258.0	1,247	0	0	0	1,247	99.1

29. 대추(건조기준)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247.9	0	247.9	242.1	14.7	0.0	0.0	256.8	97.7
2002	236.4	0	236.4	236.0	1.0	0	0	237.0	99.8
2001	224.9	0	224.9	217	0	0	7.9	224.9	96.5
2000	213.4	0	213	213.1	2.6	0	0	215.7	99.9
1999	201.8	0	201.8	201.8	0	0	0	201.8	100.0
1998	190.3	0	190.3	190.3	0	0	0	190.3	100.0
1997	178.8	0	178.8	105.9	0	0	0	105.9	59.2
1996	167.2	0	167.2	167.0	0	0	0	167.0	99.9
1995	155.7	0	155.7	152.7	0	0	0	152.7	98.1

30. 녹차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7.4	0	7.4	7.4	117.0	0	0	124.4	100.0
2002	7.1	0	7.1	4.8	53.6	0	0.3	58.7	67.6
2001	6.7	0	6.7	6.7	21.1	0	0.9	28.7	100.0
2000	6.4	0	6.4	6.4	70.8	0	0.3	77.4	100.0
1999	6.1	0	6.1	6.1	31.2	0	0	37.3	100.0
1998	5.7	0	5.7	5.0	4.3	0	0.7	10.0	87.7
1997	5.4	0	5.4	4.4	1.6	0	7.0	13.0	81.5
1996	5.0	0	5.0	5.0	0	0	0	5.0	100.0
1995	4.7	0	4.7	4.7	0	0	0	4.7	100.0

31. 생강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1,777.4	0	1,777.4	936.4	10,470.1	0	24.0	11,430.5	52.7
2002	1,694.7	0	1,694.7	1,494.2	13,284.1	0	0	14,778.3	88.2
2001	1,612.0	0	1,612.0	1,592.0	17,415.8	0	5.2	19,013.0	98.8
2000	1,529.4	0	1,529.4	1,098.4	5,812.9	0	6.3	6,917.6	71.8
1999	1,446.7	0	1,446.7	0	998.6	0	4.1	1,002.7	0.0
1998	1,364.0	0	1,364.0	1,222.7	1,353.2	0	1.8	2,577.7	89.6
1997	1,281.3	0	1,281.3	1,281.3	4,386.1	0	0.4	5,667.8	100.0
1996	1,198.7	0	1,198.7	428	0	1	0	429	35.7
1995	1,116.0	0	1,116.0	1,017	0	0	0	1,017	91.1

32. 호밀(종자) (0세율 적용, 추천불필요)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1,327.3	0	1,327.3	0	6,538.9	0	0	6,538.9	0.0
2002	1,327.3	0	1,327.3	5,920.3	0	0	0	5,920.3	446.0
2001	1,327.3	0	1,327.3	6,117.3	0	0	0	6,117.3	460.9
2000	1,327.3	0	1,327.3	2,811.4	0	0	0	2,811.4	211.8
1999	1,327.3	0	1,327.3	3,176.6	0	0	0	3,176.6	239.3
1998	1,327.3	0	1,327.3	4,161.6	0	0	0	4,161.6	313.5
1997	1,327.3	0	1,327.3	2,445.8	0	0	0	2,445.8	184.3
1996	1,327.3	0	1,327.3	1,327.3	0	0	0	1,327.3	100.0
1995	1,327.3	0	1,327.3	1,982	0	0	0	1,982	149.3

33. 맥주맥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30,000	0	30,000	54,478	0	0	0	54,478	181.6
2002	30,000	-	30,000	30,000	0	0	54,950.7	84,950.7	100.0
2001	30,000	62,000	92,000	87,378.2	0	0	0	87,378.2	291.3
2000	30,000	26,000	56,000	56,000	0	0	7,944.9	63,944.9	186.7
1999	30,000	59,000	89,000	76,010.3	0	0	0	76,010.3	253.4
1998	30,000	12,600	42,600	36,903.7	0	0	0	36,903.7	123.0
1997	30,000	0	30,000	29,397.6	0	0	0	29,397.6	98.0
1996	30,000	48,389	78,389	64,329	0	0	0	64,329	214.4
1995	30,000	39,670	69,670	69,699	0	0	0	69,699	232.3

34. 보리(걸보리)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22,534	0	22,534	26,404.5	0	0	0	26,404.5	117.2
2002	21,486	28,514	50,000	0	420.0	0	0	420.0	0.0
2001	20,438	29,562	50,000	22,843.2	400.0	0	0	23,243.1	111.8
2000	19,390	30,610	50,000	21,108.6	512.4	0	0	21,621.0	108.9
1999	18,342	31,658	50,000	20,884.5	0	0	0	20,884.5	113.9
1998	17,294	32,706	50,000	43,880.1	0	0	0	43,880.1	253.7
1997	16,246	33,754	50,000	24,176.0	0	0	0	24,176.0	148.8
1996	15,198	34,802	50,000	43,542	0	0	0	43,542	286.5
1995	14,150	0	14,150	14,095	0	0	0	14,095	99.6

35. 귀리(종자) (0세율 적용, 추천불필요)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597.3	0	597.3	0	549.8	0	0	549.8	0.0
2002	597.3	0	597.3	546.1	0	0	0	546.1	91.4
2001	597.3	0	597.3	425.5	0	0	0	425.5	71.2
2000	597.3	0	597.3	557.3	0	0	0	557.3	93.3
1999	597.3	0	597.3	524.6	0	0	0	524.6	87.8
1998	597.3	0	597.3	784.7	0	0	0	784.7	131.4
1997	597.3	0	597.3	575.9	0	0	0	575.9	96.4
1996	597.3	0	597.3	599.0	0	0	0	599.0	100.3
1995	597.3	0	597.3	600.0	0	0	0	600.0	100.5

36. 옥수수종자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247	103	350	309	0	0	0.1	309.1	125.1
2002	247.0	135	382	282.3	0	0	4.2	286.5	114.3
2001	247	130	377	243.0	35.0	0	4.2	282.2	98.4
2000	247	153	400	296.9	0	0	0	296.9	120.2
1999	247	303	550	440.4	0.1	0	0	440.5	178.3
1998	247	253	500	406.7	0	0	0	406.7	164.7
1997	247	203	450	350.5	0	0	2	352.5	141.9
1996	247	283	530	475	0	0	0	475	192.3
1995	247	217	464	434	0	0	0	434	175.7

37. 옥수수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 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6,102,100	4,444,978	10,547,078	8,803,100.6	21,934.8	0	0	8,825,035.4	144.3
2002	6,102,100	4,239,728	10,341,828	9,150,918	20,271.3	0	0	9,171,189.3	150.0
2001	6,102,100	3,805,928	9,908,028	8,481,632	15,196.7	0	24,243.8	8,521,074.5	139.0
2000	6,102,100	4,057,434	10,159,534	8,722,459.1	2,284.5	0	58.5	8,724,802.1	142.9
1999	6,102,100	4,076,513	10,178,613	8,115,793.7	140.2	0	0	8,115,933.9	133.0
1998	6,102,100	4,167,711	10,269,811	7,121,199	0.2	0	0	7,121,200	116.7
1997	6,102,100	3,562,185	9,664,285	8,315,305	105.1	0	0	8,315,410	136.3
1996	6,102,100	4,394,099	10,496,199	8,664,228	0	0	0	8,664,228	142.0
1995	6,102,100	3,897,900	10,000,000	8,903,093	0	0	0	8,903,093	145.9

38. 쌀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179,575	0	179,575	143,154.2	0	0	24,523.2	167,677.4	79.7
2002	153,921	0	153,921	153,921	0	0	0	153,921	100.0
2001	128,268	0	128,268	128,268	0	0	0	128,268	100.0
2000	102,614	0	102,614	102,614	0	0	0	102,614	100.0
1999	102,614	0	102,614	102,612	0	0	0	102,612	100.0
1998	89,787	0	89,787	89,787	0	0	0	89,787	100.0
1997	76,961	0	76,961	76,961	0	0	0	76,961	100.0
1996	64,134	0	64,134	64,134	0	0	0	64,134	100.0
1995	51,307	0	51,307	51,307	0	0	0	51,307	100.0

39. 수수(종자) (0세율 적용, 추천불필요)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13.7	0.0	13.7	0	0	0	0	0	0.0
2002	13.7	0	13.7	0	0	0	0	0	0.0
2001	13.7	0	13.7	0	0	0	0	0	0.0
2000	13.7	0	13.7	15.6	0	0	0	15.6	113.9
1999	13.7	0	13.7	11.8	0	0	0	11.8	86.1
1998	13.7	0	13.7	19.5	0	0	0	19.5	142.3
1997	13.7	0	13.7	2.2	0	0	0	2.2	16.1
1996	13.7	0	13.7	13.7	0	0	0	13.7	100.0
1995	13.7	6.3	20.0	17.0	0	0	0	17.0	124.1

40. 매밀,기타곡물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1,257.9	0.0	1,257.9	1,257.9	53.9	1,211.8	0	2,523.6	100.0
2002	1,187.8	0	1,187.8	1,187.8	601.4	1,913.0	0	3,702.2	100.0
2001	1,117.7	0	1,117.7	717.7	651.6	2,023.1	0	3,392.4	64.2
2000	1,047.7	0	1,047.7	1,044.5	141.0	2,256.3	0	3,441.9	99.7
1999	977.6	0	977.6	977.6	159.9	560.5	0	1,698.0	100.0
1998	907.5	0	907.5	907.5	96.0	160.0	0	1,163.5	100.0
1997	837.4	0	837.4	837.4	118.0	206.0	0	1,161.4	100.0
1996	767.4	0	767.4	760	0	0	0	760	99.0
1995	697.3	99.7	797.0	798	0	0	0	798	114.4

41. 조(종자)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0.4	0.0	0.4	0	0	0	0	0	0.0
2002	0.4	0	0.4	0	0	0	0	0	0.0
2001	0.3	0	0.3	0	0	0	0	0	0.0
2000	0.3	0	0.3	0	0	0	0	0	0.0
1999	0.3	0	0.3	0	0	0	0	0	0.0
1998	0.3	0	0.3	0	0	0	0	0	0.0
1997	0.2	0	0.2	0	0	0	0	0	0.0
1996	0.2	0	0.2	0	0	0	0	0	0.0
1995	0.2	0	0.2	0	0	0	0	0	0.0

42. 기타가공곡물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14.7	0	14.7	14.7	384.5	0	0	399.2	100.0
2002	14.7	0	14.7	14.7	135.8	0	0.8	151.3	100.0
2001	14.7	0	14.7	14.7	32.0	509.7	1	557.6	100.0
2000	14.7	0	14.7	12.3	18.0	218.3	2.7	246.6	83.7
1999	14.7	0	14.7	14.7	7.5	0	0	22.2	100.0
1998	14.7	0	14.7	14.0	0.2	0	0	14.2	95.2
1997	14.7	0	14.7	14.7	0	0	0	14.7	100.0
1996	14.7	0	14.7	15.0	0	0	0	15.0	102.0
1995	14.7	0	14.7	14.7	0	0	0	14.7	100.0

43. 감자분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10	50	60	60	13.9	0	11.8	85.7	600.0
2002	10.0	50	60.0	60.0	0.2	0	31.4	91.6	600.0
2001	10	50	60	60.0	0	0	16.8	76.8	600.0
2000	10	50	60	60	3.5	0	24.1	87.6	600.0
1999	10	50	60	60	2.0	0	16.6	78.6	600.0
1998	10	50	60	60	4.3	0	19.1	83.4	600.0
1997	10	50	60	60	8.5	0	0	68.5	600.0
1996	10	50	60	60	0	0	0	60	600.0
1995	10	50	60	60	0	0	0	60	600.0

44. 맥아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40,000	0	40,000	113,768.1	258.6	0.0	3.0	114,029.7	284.4
2002	40,000	0	40,000	40,000	270.0	0	80,088.1	120,358.1	100.0
2001	40,000	50,580	90,580	89,333.9	468.4	0	0	89,802.3	223.3
2000	40,000	28,080	68,080	67,809.5	297.2	0	0	68,106.7	169.5
1999	40,000	28,000	68,000	57,836.5	41.0	0	0	57,877.5	144.6
1998	40,000	42,500	82,500	56,724.4	22.1	0	0	56,746.5	141.8
1997	40,000	49,500	89,500	75,435.2	83.0	0	0	75,518.2	188.6
1996	40,000	25,500	65,500	51,582	0	0	0	51,582	129.0
1995	40,000	70,330	110,330	106,270	0	0	0	106,270	265.7

45. 밀전분, 기타전분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227.4	1,072.6	1,300	1,177.6	45.3	931.5	7.0	2,161.4	517.9
2002	227.4	772.6	1,000.0	958.6	91.4	931.7	74.6	2,056.3	421.5
2001	227.4	0	227.4	186.4	127.6	749.7	296.2	1,359.9	82.0
2000	227.4	0	227.4	161.1	108.1	139.8	10.4	419.5	70.8
1999	227.4	0	227.4	227.1	18.3	78.0	8.0	331.4	99.9
1998	227.4	0	227.4	226.8	0	49.0	0	275.8	99.7
1997	227.4	0	227.4	227.4	0.1	125.2	0	352.7	100.0
1996	227.4	0	227.4	227	0	0	0	227	99.8
1995	227.4	0	227.4	33	0	0	0	33	14.5

46. 감자, 변성전분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44,945.3	43,404.7	88,350.0	86,773.4	4,645.5	0.0	246.2	91,665.1	193.1
2002	44,198.7	40,021.3	84,220.0	80,993.5	1,099.4	0	130.0	82,222.9	183.2
2001	43,452.0	40,768.0	84,220.0	80,163.0	933.4	0	525.2	81,621.5	184.5
2000	42,705.3	33,864.7	76,570.0	73,790.2	860.2	0	312.0	74,962.4	172.8
1999	41,958.6	34,611.4	76,570.0	66,369.5	883.9	0	446.9	67,700.3	158.2
1998	41,211.9	35,358.1	76,570.0	65,040.5	722.9	0	0	65,763.4	157.8
1997	40,465.3	29,141.7	69,607.0	68,368.5	695.7	0	440.1	69,504.3	169.0
1996	39,718.6	29,888.4	69,607.0	61,425	0	0	0	61,425	154.7
1995	38,971.9	54,435.1	93,407.0	66,149	0	0	0	66,149	169.7

47. 매니옥전분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2,400	5,100	7,500	6,802.0	752.3	0.0	0.0	7,554.3	283.4
2002	2,400	6,100	8,500	7,658.8	1,392.6	0	0	9,051.4	319.1
2001	2,400	2,900	5,300	2,943	740.8	0	0	3,683.3	122.6
2000	2,400	2,050	4,450	3,100	930	0	0	4,030	129.2
1999	2,400	0	2,400	1,130	542.1	0	0	1,672.1	47.1
1998	2,400	0	2,400	2,419	325	0	0	2,744	100.8
1997	2,400	1,376	3,776	2,430	681	0	0	3,111	101.3
1996	2,400	1,376	3,776	3,424	0	0	0	3,424	142.7
1995	2,400	2,116	4,516	2,873	0	0	0	2,873	119.7

48. 고구마전분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4,376	17,124	21,500	20,381.0	0.4	37.0	0.0	20,418.4	465.7
2002	4,376	15,124	19,500	19,291.3	0	0	0	19,291.3	440.8
2001	4,376	14,124	18,500	18,512.5	1.4	133	0	18,646.9	423.0
2000	4,376	11,624	16,000	15,994.0	86.5	619.9	0	16,700.4	365.5
1999	4,376	9,624	14,000	13,776.4	50.2	660.1	0	14,486.7	314.8
1998	4,376	9,624	14,000	13,793.9	263.2	842.4	0	14,899.5	315.2
1997	4,376	4,897	9,273	9,272.8	387.0	9,405.1	0	19,064.9	211.9
1996	4,376	3,711	8,087	8,667	0	0	0	8,667	198.1
1995	4,376	3,911	8,287	7,514	0	0	0	7,514	171.7

49. 대두(사료용)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846,365	0	846,365	1,196,810.1	0	0	0	1,196,810.1	141.4
2002	846,365	0	846,365	846,365	89.0	0	340,853.7	1,187,307.7	100.0
2001	846,365	603,635	1,450,000	1,087,352.4	0	0	0	1,087,352.4	128.5
2000	846,365	593,635	1,440,000	1,111,832.8	40.0	0	0	1,111,872.8	131.4
1999	846,365	553,635	1,400,000	1,132,589.7	268.5	0	0	1,132,858.2	133.8
1998	846,365	683,635	1,530,000	1,123,835.2	54.0	0	0	1,123,889.2	132.8
1997	846,365	421,635	1,268,000	1,225,208	1,744.3	0	0	1,226,952.3	144.8
1996	846,365	373,635	1,220,000						0.0
1995	846,365	373,635	1,220,000						0.0

50. 대두(가공용)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185,787	88,213	274,000	258,475.2	32,549.8	20,497.4	0.0	311,522.4	139.1
2002	185,787	108,213	294,000	230,952.9	42,489.2	13,270.2	0	286,712.3	124.3
2001	185,787	128,713	314,500	218,825.8	42,026.1	5,005.1	1,000.0	266,857.0	117.8
2000	185,787	128,713	314,500	292,128.3	40,743.4	7,879.5	2,400	343,151.2	157.2
1999	185,787	128,713	314,500	255,955.2	40,851.3	0	10,200	307,006.5	137.8
1998	185,787	128,722	314,509	308,165	15,993	0	0	324,157.5	165.9
1997	185,787	128,722	314,509	328,597	3,732	0	40	332,367.8	176.9
1996	185,787	108,113	293,900						0.0
1995	185,787	108,116	293,903						0.0

51. 낙화생(탈각기준)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4,907.3	0.0	4,907.3	4,314.0	25,814.7	2,925.8	7.9	33,062.4	87.9
2002	4,907.3	0	4,907.3	3,186.9	26,289.4	790.0	15.6	30,281.9	64.9
2001	4,907.3	0	4,907.3	4,898.0	21,774.4	743.2	7.2	27,422.8	99.8
2000	4,907.3	0	4,907.3	4,703.5	22,753.7	370.3	1,500.0	27,812.6	95.8
1999	4,907.3	0	4,907.3	2,062.9	24,533.5	211.4	27.8	26,835.5	42.0
1998	4,907.3	0	4,907.3	4,826.3	11,614.1	126.8	0	16,567.2	98.3
1997	4,907.3	0	4,907.3	4,667.3	15,188.2	741.9	48.5	20,645.9	95.1
1996	4,907.3	0	4,907.3	4,855	0	0	0	4,855	98.9
1995	4,907.3	1,549.7	6,457.0	5,968	0	0	0	5,968	121.6

52. 참깨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6,731	75,169	81,900	81,150.2	114.0	0.0	18.0	81,282.2	1205.6
2002	6,731	69,269	76,000	62,555.9	428.1	0	107.4	63,091.4	929.4
2001	6,731	72,869	79,600	77,074.2	287.4	0	6.1	77,367.7	1145.1
2000	6,731	63,269	70,000	69,838.1	118.5	0	163.0	70,119.6	1037.6
1999	6,731	54,269	61,000	59,748.1	23.1	0	1,196.3	60,967.5	887.7
1998	6,731	54,269	61,000	54,002.4	40.3	0	0.3	54,043.0	802.3
1997	6,731	58,469	65,200	65,011.5	80.0	0	100.0	65,191.5	965.9
1996	6,731	62,769	69,500	68,477	0	0	0	68,477	1017.3
1995	6,731	35,191	41,922	41,909	0	0	0	41,909	622.6

53. 인삼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54.3	0.0	54.3	15.0	0.6	3.7	0.2	19.5	27.6
2002	51.7	0	51.7	51.7	0.1	0	3.3	55.1	100.0
2001	49.2	0	49.2	58.1	0.9	0	1.5	60.4	118.1
2000	46.7	0	46.7	21.5	0.3	6.0	1.9	29.7	46.0
1999	44.2	0	44.2	18.3	0.7	0	0.5	19.6	41.4
1998	41.7	0	41.7	17.9	0	0.6	0	18.5	42.9
1997	39.1	0	39.1	39.1	0.5	0	0	39.6	100.0
1996	36.6	0	36.6	0.3	0	0	0	0.3	0.8
1995	34.1	0	34.1	34.1	0	0	0	34.1	100.0

54. 사료용근채류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30,705.1	464,294.9	495,000.0	424,893.1	581.7	0	0.1	425,474.9	1383.8
2002	29,277	490,223	519,500	411,136.9	315.8	0	0	411,452.7	1404.3
2001	27,848.8	399,951.2	427,800	422,146.3	1,040.9	0	159.8	423,383.0	1515.9
2000	26,420.7	397,279.3	423,700	385,419.5	4,912.1	0	543.0	390,874.6	1458.8
1999	24,992.6	125,007.4	150,000	147,452.5	5,093.0	0	220.0	152,765.5	590.0
1998	23,564.4	176,435.6	200,000	79,429.8	1,776.6	0	1,049.2	82,255.6	337.1
1997	22,136.3	77,863.7	100,000	97,184.6	2,034.0	0	886.7	100,105.3	439.0
1996	20,708.1	84,999.9	105,708	61,012.0	0	0	0	61,012.0	294.6
1995	19,280	0	19,280	17,789.0	0	0	0	17,789.0	92.3

55. 참기름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638.4	0.0	638.4	484.9	4.1	0.0	1.1	490.1	76.0
2002	608.7	0	608.7	553.2	1.5	0	3.7	558.4	90.9
2001	579.0	0	579.0	562.9	1.4	0	4.7	569.0	97.2
2000	549.4	0	549.4	545.7	2.2	0	6.2	554.1	99.3
1999	519.7	0	519.7	517.3	0	0	12.1	529.4	99.5
1998	490.0	0	490.0	187.8	8.2	0	0	196.0	38.3
1997	460.3	0	460.3	459.1	1.0	0	0.5	460.6	99.7
1996	430.7	0	430.7	430	0	0	0	430	99.8
1995	401.0	0	401.0	401	0	0	0	401	100.0

56. 유당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8,982.4	8,017.6	17,000	15,648.8	8.6	0.0	114.6	15,772.0	174.2
2002	8,564.5	8,435.5	17,000	14,916.4	9.5	0	211.0	15,136.9	174.2
2001	8,146.7	9,453.3	17,600	14,464.2	374.3	0	226.9	15,065.4	177.5
2000	7,728.9	8,471.1	16,200	15,192.3	68.3	0	304.6	15,565.2	196.6
1999	7,311.1	4,688.9	12,000	11,650.5	135.8	0	247.6	12,033.9	159.4
1998	6,893.3	5,106.7	12,000	10,640.6	99.7	0	0	10,740.3	154.4
1997	6,475.6	7,524.4	14,000	11,567.8	6.8	0	424.5	11,999.1	178.6
1996	6,057.8	7,942.2	14,000	11,194	0	0	0	11,194.0	184.8
1995	5,640.0	9,360.0	15,000	9,918	0	0	0	9,918.0	175.9

57. 인조꼴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6	0	6	0	0.3	0.0	0.1	0.4	0.0
2002	6	0	6	0	0.2	0	0.7	0.9	0.0
2001	6	0	6	0	0	0	0	0.6	0.0
2000	6	0	6	0	0	0	1.0	1.0	0.0
1999	6	0	6	0	0	0	0.2	0.2	0.0
1998	6	0	6	0	0	0	0	0	0.0
1997	6	0	6	0	0	0	0	0	0.0
1996	6	0	6	0	0	0	0	0	0.0
1995	6	0	6	0	0	0	0	0	0.0

58. 에틸알콜(kl)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9,874.5	0.0	9,874.5	7,828.7	0.0	0.0	1,957.5	9,786.2	79.3
2002	9,415.3	0	9,415.3	9,387	0	0	0	9,387	99.7
2001	8,956.0	0	8,956.0	8,922	0	0	0	8,922	99.6
2000	8,496.7	0	8,496.7	8,401	0	0	0	8,401	98.9
1999	8,037.4	0	8,037.4	8,018	0	0	0	8,018	99.8
1998	7,578.1	0	7,578.1	7,466	0	0	0	7,466	98.5
1997	7,118.9	0	7,118.9	7,110	0	0	0	7,110	99.9
1996	6,659.6	0	6,659.6	6,534	0	0	0	6,534	98.1
1995	6,200.3	0	6,200.3	6,173	0	0	0	6,173	99.6

59. 육분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3,210	0	3,210	1,477.9	67.6	453.8	0.0	1,999.3	46.0
2002	3,210	0	3,210	695.8	123.7	19.5	0	839.0	21.7
2001	3,210	0	3,210	1,881.2	82.3	0	0	1,963.5	58.6
2000	3,210	590	3,800	1,603.4	431.4	0	0	2,034.8	50.0
1999	3,210	0	3,210	3,210.0	562.8	0	0	3,772.8	100.0
1998	3,210	1,790	5,000	3,330.3	121.9	0	0	3,452.2	103.7
1997	3,210	0	3,210	3,210.0	1,617.2	0	0	4,827.2	100.0
1996	3,210	0	3,210	3,206.3	0	0	0	3,206.3	99.9
1995	3,210	0	3,210	3,203.0	0	0	0	3,203.0	99.8

60. 참깨유박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202.5	0.0	202.5	0	21.0	0	17.5	38.5	0.0
2002	193.1	0	193.1	0	55.3	0	0	55.3	0.0
2001	183.6	0	183.6	0	19.0	0	0	19.0	0.0
2000	174.2	0	174.2	0	0	0	0	0	0.0
1999	164.8	0	164.8	0	0	0	0	0	0.0
1998	155.3	0	155.3	0	0	0	0	0	0.0
1997	145.9	0	145.9	0	0	0	0	0	0.0
1996	136.4	0	136.4	0	0	0	0	0	0.0
1995	127.0	0	127.0	0	0	0	0	0	0.0

61. 배합사료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599.1	0	599.1	609.2	0.0	0.0	0.0	609.2	101.7
2002	571.2	0	571.2	528.4	0	0	0	528.4	92.5
2001	543	0	543	543.0	0	0	0	543.0	99.9
2000	516	0	516	424.5	0	0	18	442.5	82.3
1999	488	0	488	487.6	0	0	0	487.6	100.0
1998	460	0	460	456.2	0	0	0	456.2	99.2
1997	432	0	432	400.0	0	0	0	400.0	92.6
1996	404	0	404	381	0	0	0	380.9	94.3
1995	376	0	376	373	0	0	0	373.0	99.2

62. 보조사료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3,986.3	26,014	30,000	19,609	231.4	0.0	106.6	19,947.0	491.9
2002	3,800.6	24,199.4	28,000	18,680.2	514.5	0	410.3	19,605.0	491.5
2001	3,615.2	26,384.8	30,000	17,259.2	187.0	0	489.6	17,935.7	477.4
2000	3,429.8	19,570.2	23,000	17,803.9	2,245.9	0	1,384.6	21,434.4	519.1
1999	3,244.4	16,755.6	20,000	17,630.2	480.7	0	199.9	18,310.8	543.4
1998	3,059.0	16,941.0	20,000	12,243.0	68.9	0	70.0	12,381.9	400.2
1997	2,873.6	12,126.4	15,000	14,912.0	339.2	0	28.2	15,279.4	518.9
1996	2,688.2	12,312.0	15,000	10,831	0	0	0	10,831.0	402.9
1995	2,503.0	7,497.0	10,000	8,926	0	0	0	8,926.0	356.6

63. 누에고치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1,143	0	1,143	0	0	0	0	0	0.0
2002	1,143	0	1,143	10.3	0	0	0	10.3	0.9
2001	1,143	0	1,143	11.5	0	0	3.5	15.0	1.0
2000	1,143	0	1,143	36.7	0	0	0	36.7	3.2
1999	1,143	0	1,143	71.4	0	0	0	71.4	6.2
1998	1,143	0	1,143	158.3	0	0	0	158.3	13.8
1997	1,143	0	1,143	186.0	0	0	0	186.0	16.3
1996	1,143	0	1,143	389.0	0	0	0	389.0	34.0
1995	1,143	0	1,143	685.0	0	0	0	685.0	59.9

64. 생사

연도	시장접근물량			세율별 수입현황					TRQ 이행률
	C/S	증량	계	저율	고율	SSG	기타	계	
2003	2,254	0	2,254	1,330.3	180.1	0.0	1.2	1,511.6	59.0
2002	2,254	0	2,254	1,469.2	224.8	0	3.7	1,697.7	65.2
2001	2,254	0	2,254	1,259.5	0	170	2	1,431.4	55.9
2000	2,254	0	2,254	1,427.1	233.1	0	0.6	1,660.8	63.3
1999	2,254	0	2,254	1,778.6	243.1	0	0	2,021.7	78.9
1998	2,254	946	3,200	1,097.4	126.6	0	0.6	1,224.6	48.7
1997	2,254	700	2,954	2,185.1	243.6	0	0	2,428.7	96.9
1996	2,254	600	2,854	2,808	0	0	0	2,808.0	124.6
1995	2,254	500	2,754	2,444	0	0	0	2,444.0	108.4

주 의

1. 이 보고서는 농림부에서 시행한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연구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농림부에서 시행한 농림기술개발사업의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